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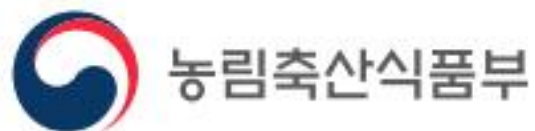
연구보고 R41 / 2021. 12

발 간 등 록 번 호
-------------

11-1543000-004070-01
----------------------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 (사)환경농업연구원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기관 : (사)환경농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정 호 ( 원 장)  
연구참여자 : 이 준 원 ( 연구위원)  
박 문 호 ( 연구위원)  
전 창 곤 (위촉연구위원)  
이 경 해 ( 연구 원)

## 연구 담당

김정호	원장	연구 총괄, 보고서 집필
이준원	연구위원	정책 분석
박문호	연구위원	실태조사, 정책 분석
전창곤	위촉연구위원	실태조사 분석
이경해	연구원	자료 정리

## 머 리 말

---

이 연구보고서는 환경농업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받아 수행한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연구기간: 2021.7.23~2021.12.19)의 최종보고서이다.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 분야의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당면한 농정과제와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연구과제를 몇 차례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의 소득 증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융자사업을 확충해 왔으며, 그동안 보조사업의 일부를 용자로 전환하였으나 현재도 보조금이 재정적 지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 확산되면서 농정 분야에서도 상향식 자율농정이 추진되어 지역의 다양성이 발휘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사업의 집행관리 분야에서 비효율이나 부적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경영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비효율 발생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식품보조금의 효율적 사용과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차단 및 보조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그리고 유관기관·학계의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농식품보조사업 정책의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1. 12.

(사)환경농업연구원 이사장 **강 정 일**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 시각과 범위 ..... 3
- 3. 연구 내용과 방법 ..... 6
- 4. 보고서 구성 ..... 8

### 제2장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 개요

- 1.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유형 ..... 11
- 2.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 17
- 3. 외국의 국고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사점 ..... 26

### 제3장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최근 지적사항 검토

- 1.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현황 ..... 35
- 2.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검토 ..... 44
- 3. 선행연구의 지적사항 검토 ..... 53

### 제4장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의견조사

- 1.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 ..... 59
- 2. 농업경영체 의견조사 결과 ..... 87
-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 102
- 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관리인력 및 업무현황 조사결과 ..... 118
- 5. 농정연구자 의견조사 결과 ..... 127

6.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 .....	138
-----------------------	-----

## 제5장 주요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사례분석

1.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사례의 주요내용 .....	143
2.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 .....	183

## 제6장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기본방향 .....	189
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192
3.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단계별 관리전략과 실천방안 .....	204

## 부록

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안 관련 참고자료 .....	215
2. 농식품보조사업에 관한 의견조사표 .....	272

참고문헌 .....	301
------------	-----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보조금법」 제2조 보조금 정의 .....	12
<표 2-2> 국고보조금 유형 분류 .....	14
<표 2-3> 보조사업의 행위주체 .....	16
<표 2-4> 보조금 부정수급의 주요사례 .....	20
<표 2-5> e나라도움 상의 부정수급 유형화 .....	21
<표 2-6>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주요내용 .....	25

### 제3장

<표 3-1> 2021년 농식품보조금 예산 현황 .....	36
<표 3-2>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조 목적 .....	40
<표 3-3> 최근 농식품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2015~2020년) .....	43
<표 3-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	44
<표 3-4> 2018년도 농식품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46
<표 3-5> 2019년도 농식품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46
<표 3-6> 2020년도 농식품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47
<표 3-7> 농식품보조금 부적정 집행관리 유형과 주요내용 .....	52

### 제4장

<표 4-1> 응답자의 경영형태 분포 .....	60
<표 4-2> 응답자의 주사업분야 분포 .....	60
<표 4-3> 응답자의 영농경력 분포 .....	61
<표 4-4>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	61
<표 4-5>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금액에 대한 만족도 .....	61

<표 4-6>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만족도 .....	62
<표 4-7> 농식품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유 .....	62
<표 4-8>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의견	64
<표 4-9>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과성 있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의견	64
<표 4-10>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	64
<표 4-11>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	64
<표 4-12>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	65
<표 4-13>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투입시 직접효과 발휘 수준에 대한 의견	65
<표 4-14>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비효율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	67
<표 4-15>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69
<표 4-16>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발생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 ·	72
<표 4-17>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교부시 부정수급 발생 수준에 대한 의견	72
<표 4-1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 또는 근절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	73
<표 4-19>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	74
<표 4-20>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발생 원인별 심각성에 대한 의견	77
<표 4-21>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78
<표 4-2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가 5년 전과 비교하여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	81
<표 4-23>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81
<표 4-24>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82
<표 4-25> 농식품보조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83
<표 4-26> 응답자의 직종 분포 .....	88
<표 4-27> 응답자의 주사업 분포 .....	88
<표 4-28> 응답자의 경력 분포 .....	88

<표 4-29>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	89
<표 4-30>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금액에 대한 만족도 .....	89
<표 4-3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만족도 .....	89
<표 4-32>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의견	90
<표 4-33>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과성 있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의견	91
<표 4-34>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	91
<표 4-35>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	91
<표 4-36>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	91
<표 4-37>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비효율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92
<표 4-38>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94
<표 4-39>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 또는 근절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	94
<표 4-40>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95
<표 4-41>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인별 심각성에 대한 의견	96
<표 4-4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가 5년 전과 비교하여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	98
<표 4-43>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99
<표 4-44>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100
<표 4-45> 응답자의 도별·시군별 분포 .....	103
<표 4-46>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의견 .....	104
<표 4-47>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의견 .....	104
<표 4-48>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104
<표 4-49> 농식품보조사업 지원시설·농기자재의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한 의견	104
<표 4-50>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동의 여부	105
<표 4-51>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105

<표 4-52>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106
<표 4-53>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	107
<표 4-54>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107
<표 4-55>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투입시 직접효과 발휘 수준에 대한 의견	108
<표 4-56>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비효율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109
<표 4-57>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 저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	110
<표 4-58>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교부시 부정수급 발생 수준에 대한 의견	112
<표 4-59>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113
<표 4-60>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	114
<표 4-61> 시군 농정담당 인력 및 업무 현황(10개 시군 평균)	120
<표 4-62> 시군 농정담당 인력의 처우 및 역량개발 현황(10개 시군 평균)	121
<표 4-63> 시군 농식품보조사업 담당 인력 및 업무에 관한 의견	122
<표 4-64> 지자체의 보조사업 비효율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24
<표 4-65> 지자체의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	126
<표 4-66> 응답자의 직종 분포	128
<표 4-67>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의견	128
<표 4-68>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 적정하게 집행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 비중에 대한 의견	128
<표 4-69> 농식품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감독권에 대한 의견	129
<표 4-70> 농식품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에 대한 의견	129
<표 4-71> 농식품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 비중에 대한 의견	130
<표 4-7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131
<표 4-73>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의견	131
<표 4-74>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131
<표 4-75> 농식품보조사업 지원시설·농기자재의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한 의견	132
<표 4-76> 농식품보조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농업경영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	132

<표 4-77>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134
<표 4-7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 또는 근절대책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지에 대한 의견	134
<표 4-79>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135
<표 4-80>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136

## 제5장

<표 5-1> 조사대상 보조사업의 개요	145
<표 5-2>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48
<표 5-3>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51
<표 5-4>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54
<표 5-5>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57
<표 5-6>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60
<표 5-7>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63
<표 5-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66
<표 5-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70
<표 5-1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73
<표 5-11>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76
<표 5-12>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79
<표 5-13>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단계별 일정	180
<표 5-14>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182

## 제6장

<표 6-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단계별 비효율성 요인과 고려사항	194
<표 6-2>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197
<표 6-3>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의 영역과 관리 전략	204
<표 6-4> 보조사업 설계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항목	205
<표 6-5>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207

<표 6-6> 보조사업 집행관리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	209
<표 6-7> 보조사업 정산처리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	211
<표 6-8>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	212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연구의 접근 시각 .....	4
---------------------------------------	---

### 제2장

<그림 2-1>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체계 .....	16
<그림 2-2>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19
<그림 2-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체계 .....	24

### 제3장

<그림 3-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	37
<그림 3-2>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단계별 업무 내용 .....	38
<그림 3-3>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 현황 .....	39

### 제6장

<그림 6-1> 농식품보조금 집행관리 정책 체계도 .....	191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의 소득 증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융자사업을 확충해 왔으며,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재도 국고보조금이 재정적 지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농식품 분야의 보조금 지원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여기서 경상보조는 사업비 지원의 성격으로 소득보전, 직불금 등이 해당되며, 자본보조는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로서 농업관련 시설물 설치, 자산 취득 등이 해당됨.
  - 농업경영체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됨. 따라서 중앙정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함.
  - 2021년 농식품보조금 규모는 8조 604억 원이며, 농식품부 전체 예산(16조 2856억 원) 가운데 49.5%를 차지함. 그 중에서 경상보조가 5조 2059억 원(민간 1조 9079억 원, 자치단체 3조 2980억 원)이고, 자본보조가 2조 8545억 원(민간 1조 1167억 원, 자치단체 1조 7378억 원)임.

-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 확산되면서 농정 분야에서도 상향식 자율농정 방식이 채택되어 투융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리 분야에서 부정수급이나 이불용 발생 등 부적정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들어 농식품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난 2015~2019년 5년간 총 746건이 적발되어 부정수금액 125억 원으로 파악되었고, 그 중 115억 원(92%)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되었음.
  - 금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에 따른 부패신고 포상제도에 따라 농업보조금 2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했음.(국민권익위 보도자료, 2021.6.3.)
  
- 정부는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2018.1)을 마련했으며, 2019년에 정부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2019.10)을 수립하여 부처별로 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를 추진중임.
  - 2018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으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함.
  -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관리강화 대책’(2021.3)에서는 수의계약 관리 강화, 중요재산 관리 강화, 부정수급과 평가의 연계 강화, 부정수급 예방 사전컨설팅 확대, 현장점검 강화, 수행배제 통합관리 등을 제시함.
  - 농식품부는 재정사업의 효율적·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에 의거한 집행관리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시행중임.
  
- 농식품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 과정에서 감축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차년도 예산 확보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보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각 부처마다 3년 주기로 전체

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를 평가받게 되는 것임.

- 지자체 보조의 경우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실정임. 특히 농기계, 농자재, 시설장비 등의 자본보조사업은 단가 상승, 수급 편중, 사후관리 미흡 등에 따른 집행관리 문제가 지적됨.
  -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감소, 이불용 및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제약이 노출되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경영체에 지원되는 자본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누수 등 비정상적인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식품보조금의 효율적 사용, 보조금 부적정 집행 차단 및 보조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식품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집행관리 전반의 비효율성 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중요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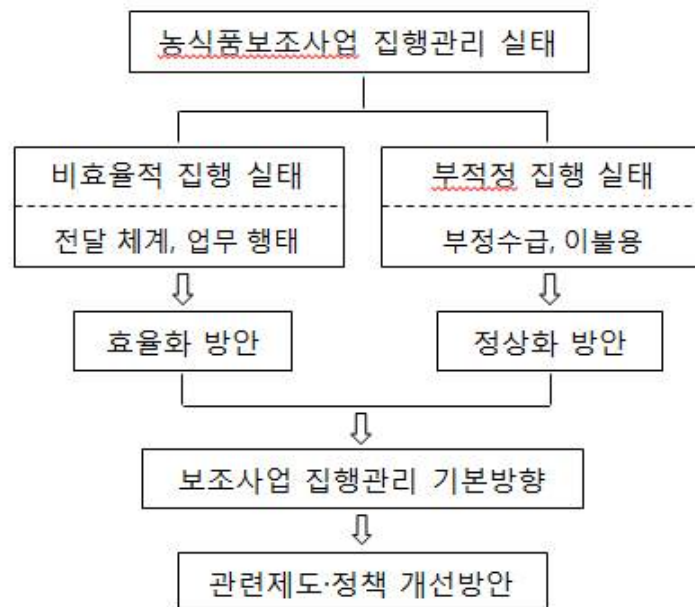
## 2. 연구 시각과 범위

### 2.1. 연구의 접근 시각

- 이 연구의 주된 관점은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과정에서 비효율성이나 부정수급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해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 효율성(效率性)이란 양적 개념인 능률성(efficiency)과 질적 개념인 효과성(effectivenes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 즉, 행정의 투입에 대한

- 산출의 비율인 능률성과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목표의 성취도만 따진 효과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임.
- 적정성(適正性, adequacy)이란 정상적 상태 또는 기준에 접근하는 개념으로 이해함. 예컨대, 정책의 적정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전체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보조사업 관련주체의 활동에 대하여 단계를 나누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순차적(중요도+실천성)으로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적용함.
- 현행 농식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 및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관련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그림 1-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연구의 접근 시각



## 2.2. 연구의 범위

-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로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따라서 연구 범위는 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식품보조사업의 형태 범위, ② 집행관리의 영역 및 사업추진 체계, ③ 관련제도 개선 사항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형태 범위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이며,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이라는 일반명사로 사용함. 아울러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그리고 보조사업의 시행주체로는 지자체를 통해 민간에게 교부되는 간접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금, 지원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시설건축이나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보조금에 한정함.
- 둘째, 집행관리의 영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6장 집행관리’와 동일한 범주이며, 다만, 동훈령에 정한 자금집행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활동인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포함함. 사업수행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 보조사업은 ‘농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민간보조사업자(농업경영체, 기타)’의 단계로 시행되므로, 중앙관서의 예산편성이나 자체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 셋째, 이 연구의 최종 결론으로 제시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할 업무에 한정함. 따라서 농식품부가 시행중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중심으로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보조사업의 관리·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제안함. 또한 제도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단에 대하여 우선 순위와 실천 방안을 검토함.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1. 연구 내용

- 국고보조금과 농식품보조사업의 현황 검토
  - 국고보조사업의 개념과 형태
  - 농식품보조사업의 추진경과 및 현황
  - 주요국의 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사점
  
- 농식품보조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발생 경로와 원인 분석
  -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자금 집행, 사업완료시 정산,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단가 상승 : 농기자재, 시설 등의 단가 상승 여부 및 관련 요인
  - 관련 제도 : 농업경영체 등록, 회계관리 등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적정 집행에 대한 양상과 원인 분석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예방조치, 부정수급 점검, 부정수급자 후속조치 등 적정 여부, 부정수급 근절 애로사항 등
  - 이불용 발생 : 보조금 교부, 집행 진도 점검 등 실집행을 향상을 위한 관리, 예산잔액 반납 등의 추진 내용
  
- 지자체의 농식품보조사업 추진단계별 집행관리의 종합 점검
  - 사업자 선정 단계 : 사업 공모·신청, 사업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
  - 보조금 집행 단계 : 보조금 교부, 사업비 집행, 보조금 정산 등
  - 사후관리 단계 : 보조시설·재산 등록, 유지 보수 등
  
- 농식품보조사업 운영과 집행관리의 사례 조사 및 애로사항 검토

- 보조사업 유형별로 사업추진주체(농업경영체, 지자체 등)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집행관리 점검
  -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사항 검토
- 농식품보조사업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안 제시
    - 보조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 보조사업의 비효율적 및 부적정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 보조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 3.2.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및 관련자료 조사
  - 농식품보조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 최근 3~5년간 농식품보조사업에 관한 각종 평가나 외부지적사항, 빈발 민원, 부정수급 사례 등 관련자료
  - 외국사례 : 미국, 영국, 일본의 국고보조금 및 부정수급 관리 제도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농업경영체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조사
  - 조사 대상 : 농업인 191명, 농업경영체(농업법인) 307명, 농촌융복합산업인 50명, 시·군 담당자 143명
    - ※ 농업경영체는 농식품보조사업 수혜자를 포함한 표본 추출, 농업인은 시·군에서 추천받은 자.
  - 조사 방법 : 우편조사, 온라인 병행
  - 농업인 조사내용 : 보조사업 만족도, 보조금 비효율 및 부정수급 체감 정도, 발생 원인별 심각한 정도, 개선 필요사항
  - 농업경영체 조사내용 : 보조사업 인지·신청, 사업계획 확정, 자금집행·회계관리, 사후관리 등의 실태와 애로사항, 제도개선 의견
  - 지자체 조사내용 : 보조사업 공모, 사업자 선정, 자금 교부, 사후관리 등의

실태와 애로사항, 보조사업 담당 인력·업무 현황, 제도개선 의견

- 주요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조사
  - 대상사업 : 주요 국고보조사업 12개 분야의 사례 선정
  - 조사 내용 : 농업시설·기계장비 등 주요 자본보조사업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사 방법 : 주요사업별 시행주체에 대한 면담조사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협의회 개최
  - 전문가 의견 수렴 : 대학교수 및 연구자 50명 의견조사, 간담회 개최
  - 정책협의회 : 농식품부(혁신행정),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

#### 4. 보고서 구성

-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며, 제2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 개요를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최근 지적사항을 검토하며, 제4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각계 의견을 조사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현장사례를 조사 분석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 개요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유형, 현행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외국의 국고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사점 등의 순으로 검토함.



- 제3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최근의 지적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현황,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검토, 선행연구의 지적사항 검토 등으로 구성함.
- 제4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으로,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의견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농정연구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결과의 시사점 등으로 검토함.
- 제5장에서는 주요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사례분석으로, 농업·농촌 현장에서 비중이 큰 농식품보조사업 12개를 대상으로 추진주체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및 시사점을 정리함.
- 제6장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으로서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기본방향,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제도 개선방안,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단계별 관리전략과 실천방안 등으로 제안함.
- 부록으로,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안 관련 참고자료, 그리고 의견조사표 등을 게재함.



## 제 2 장

###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의 개요

#### 1.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유형<sup>1</sup>

##### 1.1. 국고보조금의 개념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에 용도를 지정하여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자금임.
  -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지급하는 자금을 말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에 명시된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보조금의 지급 주체는 ‘국가’이며, 지급 대상은 ‘국

<sup>1</sup> 이 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s://www.gosims.go.kr/>)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고, 보조금의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한정되며, '반대급부가 없을 것'을 특징으로 함.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표 2-1> 「보조금법」 제2조 보조금 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교부금, 부담금, 장려적 보조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음.
- 교부금(交付金)이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함.
- 부담금(負擔金)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국고 지출금을 말함.
- 장려적 보조금(補助金)이란 국가가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교부하는 지출금, 즉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1.2. 국고보조금의 목적과 의의

-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집행됨.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예: 복지 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예; 도로, 항만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 실시(예: 재해 복구사업)
  - 신규사업의 보급·장려(예: 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예: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무위탁(예: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예: 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
  
- 정부 간 재정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①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②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 운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존재 이유임.
  
-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이 이루어지

는 정부 간 재정 관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가 존재함.

- 지방교부세 제도는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

### 1.3. 국고보조금의 유형

- 보조금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보조금 사용 용도의 제한성 유무, ② 보조금 지출의 지방비 부담(Matching Fund) 방식 차이, ③ 보조금 규모의 제한성 여부, ④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⑤ 보조율의 차등 여부, ⑥ 보조금의 교부조건, ⑦ 보조금 시행주체, ⑧ 보조금의 신청 여부, 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표 2-2> 국고보조금 유형 분류

구분	종 류	특 성
사용 용도	특정보조금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에 해당
	일반보조금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
교부 조건	특정보조금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이 있는 보조금(지방비 부담의무, 사용목적 제한, 보조대상 행정수준 등)
	포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를 요구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
지방비 부담	정액보조금	보조대상 사무의 사업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한 금액 교부, 매년 일정액 교부
	정률보조금	지출경비의 일정률 보조(기준보조, 차등보조)하는 형태로,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 형태
보조 비율	일률보조금	동일한 보조율 적용
	차등보조금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 상이한 보조율 적용
지원 규모 제한	개방형보조	중앙정부가 부담할 비중만을 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
	폐쇄형보조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경비 부담	교부금	국가사무를 지자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전액 교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실시의무 부과하며, 전액 또는 일부 부담

법령근거	협의 보조금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 또는 지자체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
시행주체	직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 자치단체 보조금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이나 타기관에 재교부
지원대상	지자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민간보조금	개인이나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을 지원
사전신청	신청보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사전신청에 의해 교부
	무신청보조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대상
지원내용	경상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
	자본보조금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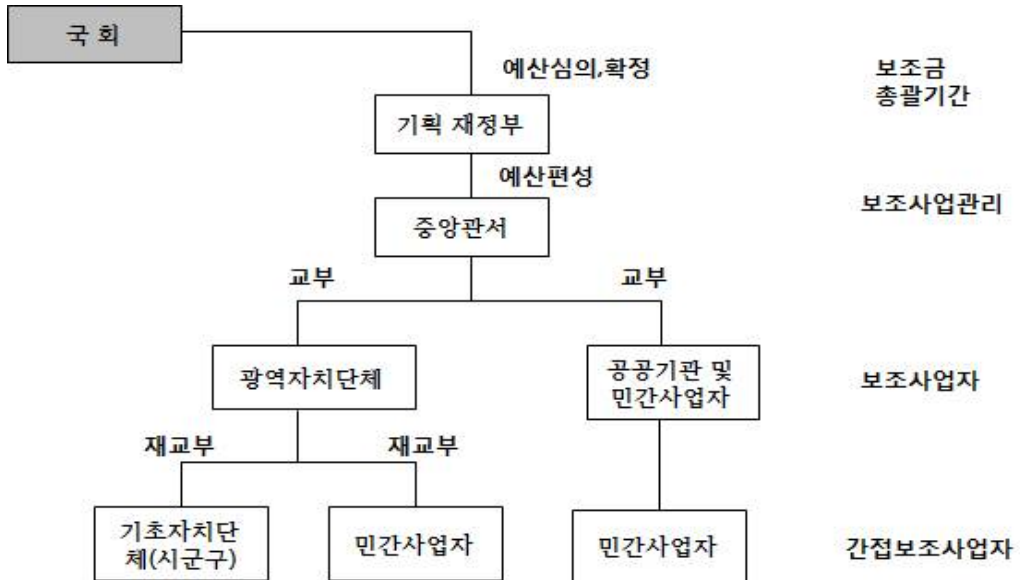
자료 : 오윤섭 외(2015)에서 정리 작성.

#### 1.4.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체계

-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체계는 보조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중앙관서, 때로는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지만 때로는 재교부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민간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보조사업자(민간보조사업자)로 구성됨.
- 보조사업은 사업의 수행주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공공기관 포함)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체계가 달라짐.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추진체계로 시행되며, 중앙관서가 교부자로서 보조사업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관리·감독함.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중앙관서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으며, 따라서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 -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민간보조사업자’의 추진체계로 시행됨. 즉,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재교부하고 간접보조사업자인 민간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게 됨.

<그림 2-1>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 오윤섭 외(2015)에서 정리 작성.

<표 2-3> 보조사업의 행위주체

종류	내용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주체	보조금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교부하는 주체	중양관서	지방자치단체(시·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시·도) 공공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기관 민간인·민간단체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민간인·민간단체	-
보조금 수령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수혜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민간인·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기관 민간인·민간단체

주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교부 또는 부담하는 금전인 반면, ② 간접보조사업자가 받는 간접보조금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국가 외의 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재교부하는 금전을 의미함

자료: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한국법제연구원, 2018)에서 정리.



## 2.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sup>2</sup>

### 2.1. 국고보조사업 관리통제의 필요성

- 국고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사업을 권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용도를 지정하여 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사업계획 - 사업집행 - 사업관리’ 등의 과정에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1)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통제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참여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
  - 정보 불균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집행을 소홀히 하고, 중앙 - 지방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보다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됨.
- 기관 간 정보불균형은 사업기획과 예산편성 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편성된 예산을 교부하고, 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재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함.
  -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전체 보조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시에 역선택하게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

<sup>2</sup> 이 절의 내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류민정,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평가 연구』(감사연구원, 2018)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성함에 있어서 중앙부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정수급·부실집행·횡령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 극대화

-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의거하여 운영되므로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외에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가 보조사업 예산을 극대화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 자치단체는 보조금 확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보조사업을 계획·집행·관리하게 됨.
-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확대는 결국 지방비 부담금액을 증가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통제를 약화시키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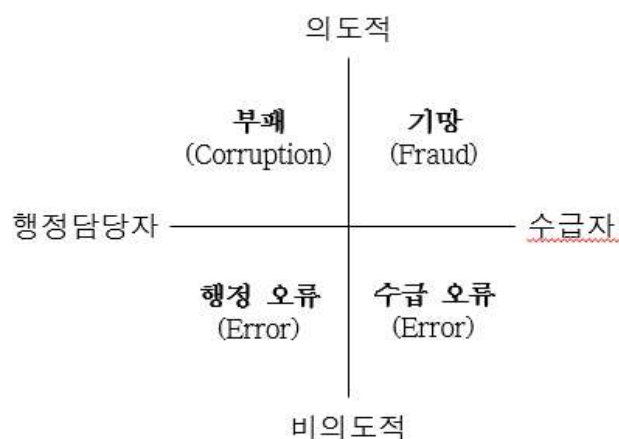
## (3) 보조사업의 불공정한 수혜 문제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통제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하고, 보조사업 수혜자는 공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사업절차에 따라야 함. 그러나 사업자 선정절차(공고, 평가 등)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부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 특히, 급여형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자격기준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게 됨.

## 2.2. 보조사업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 국고보조사업은 다수의 행위자(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등)가 참여하는 전달체계로 인하여 공급자 측의 부적정 지출이나 수요자 측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부적정 지출의 원인과 형태는 단순 과오(error), 낭비(waste), 남용(abuse), 부정(fraud)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기망(fraud), 과오/오류(error), 부패(corrup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3</sup>
  - 낭비/남용 :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
  - 부정/기망 : 공급자가 거짓으로 위장하여 청구하거나 수급자가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지급받는 것
  - 오류 : 공급자 또는 수급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발생하는 것
  - 부패 :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보조사업을 악용하는 것

<그림 2-2>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자료 : 권오성 외(2020)에서 재작성

<sup>3</sup> 부정수급의 개념과 정의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연구는 대표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권오성 외(2020) 연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수급’이란 동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 협의 부정수급 : 보조사업자 등이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예: 고의적 허위신청, 중복수령 및 기준미달 단체선정 등)
  - 광의 부정수급 : 보조사업자 등의 인식 부족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단순한 행정상 실수 등 비의도적 부적정 지급도 포함(예 : 교육 부재, 프로그램 오류, 제도적 한계로 인한 부적정 지급 등)

<표 2-4> 보조금 부정수급의 주요사례

1.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2.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3. 사업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4.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5.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6.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8.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10.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1. 생산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생산지원사업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12. 2000만 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사전에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13. 채권추심 등 간접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14. 청년 인턴 채용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급여지원금 명

목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경우  
 15. 산학협력단장이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

<표 2-5> e나라도움 상의 부정수급 유형화

대분류 (4개)	중분류 (8개)	소분류 (30개)
기망 / 부패	가족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등록·채용</li> <li>• 가족간 거래</li> </ul>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공모</li> <li>• 외부공모</li> </ul>
	임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담보</li> <li>• 무단양도</li> <li>• 무단임대</li> <li>• 무단인출</li> <li>• 무단사용</li> </ul>
	허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금 대납</li> <li>• 가격 부풀리기</li> <li>• 허위처리</li> </ul>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증빙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 미비</li> <li>• 카드영수증 미비</li> <li>• 기타 증빙 미비</li> </ul>
	중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 등록</li> <li>• 중복 신청</li> <li>• 중복 증빙</li> </ul>
	업무착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미숙</li> <li>• 절차 미숙</li> <li>• 사용 미숙</li> <li>• 거래처 착오</li> </ul>
	관리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관리 미흡</li> <li>• 평가관리 미흡</li> <li>• 신청관리 미흡</li> <li>• 타당성 미검토</li> <li>• 과다 집행</li> <li>• 집행 오류</li> <li>• 정산 오류</li> <li>• 분리 계약</li> </ul>

자료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 2.3. 보조사업 관리통제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법규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집행·관리를 점검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간접보조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각 기관의 세부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각 정부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감사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실태를 합규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있음.
  - 합규성(合規性) 관점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지급업무, 정산검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권고함.
  - 경제성(효율성) 관점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함에 따른 예산 낭비(과다지급 등) 문제를 지적함.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획재정부는 2014년 12월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①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IT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체계화 및 교육 강화
  - ②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 3년 주기의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

- ③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 벌칙 강화
  - ④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및 보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투명성·효율성 강화,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32호)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
-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보조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적격성심사 기준,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지침, 보조사업 평가지침, 회계감사 세부기준,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통합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함.
- 2019년 10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3대 분야 10개 과제를 확정함.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 ①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 도입, ②특별사업 경찰 도입확대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 ③신고인센티브 및 신고자보호 강화
  -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 ④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⑤부정수급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⑥행정제재 대폭 강화, ⑦부정수급액 엄정 환수 추진
  -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 ⑧시스템을 통한 사전자격 검증 강화, ⑨보조사업 계약절차 강화, ⑩사정컨설팅 및 부정수급관리 인센티브 활성화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2021년 보조금법 개정(시행 2021.12.16.)에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부정수급자 관리 등의 규정을 보완함.
  -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부정수급에 관여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업체도 5년 내 수행 배제함.

<그림 2-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체계



자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gosims.go.kr/>)에서 캡처.



&lt;표 2-6&gt;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법령 및 규정명	법체계	주요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li> <li>•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li> </ul>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li>•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li> </ul>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li> <li>•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 사후관리</li> </ul>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li> <li>•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불인정기준, 보조사업비의 변경, 수익금 관리 및 반환기준,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li> </ul>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li> <li>• 검증기관의 의무 및 선정원칙, 검증업무의 범위 및 기한,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등</li> </ul>
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li>• 감사인 자격, 선임, 해임, 지정, 회계감사기준, 감사조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li> </ul>
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li>• 정보공시 적용범위, 공시사항, 기한,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제재조치 등</li> </ul>

자료: 기획재정부.

### 3. 외국의 국고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사점<sup>4</sup>

#### 3.1. 미국

##### 3.1.1. 연방정부보조금 관리

- 미국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는 CFDA(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에 의하면, 연방정부보조금은 대략 15개 유형으로 구분됨.
  - 보조금은 법 또는 행정 규제에 의거한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 장학금, 연구사업비 등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보조금(projects for Specified Use), 연금 등과 같이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용도제한 없는 직접보조(Direct payments with Unrestricted Use), 직접융자(Direct Loans), 융자보증(Guaranteed/Insured Loans), 보험(Insurance), 재산이나 재화의 판매 교환 기부(Sale, Exchange, or Donation of Property and Goods), 건물·설비·장비 사용(Use of Property, Facilities, and Equipment), 전문서비스 제공(Provision of Specialized Services), 자문서비스 및 상담(Advisory Services and Counseling), 기술정보확산(Dissemin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교육 훈련(Training), 고소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 of Complaints), 연방고용(Federal Employment) 등이 해당됨.
- 미국의 연방정부 보조금은 예산관리처(OMB)의 지침과 연방기관의 시행령에 의하여 관리되며, 연방보조금에 관한 OMB의 지침은 크게 ‘지방정부 보조금에 관한 지침’(Circular A-102)과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한 지침’(OMB Circular A-110)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앙부처 등은 ‘지방정부 보조금지침’(OMB Circular A-102)에 의거하여 보

<sup>4</sup> 외국사례에 대해서는 최순영,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한국행정연구원, 2014) 및 원종학 외, 『보조금(정부지출사업) 부정수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조사업자인 지방정부로부터 상세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운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민간단체 보조금지침’(OMB Circular A-110)은 민간보조업자 선정기준과 지급규정, 성과보고서의 내용 등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평가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 3.1.2. 부정수급 대응

- 미국은 예산관리처(OMB)과 회계감사원(GAO), 그리고 각 부처에서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OMB 주도의 집권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관리 체계는 기본적으로 부정수급 방지가 아닌 부적절한 보조금의 지급위험 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보조금 지급을 하는 이상 부적절한 지급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조금 관리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수급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보조금 관리는 크게 종합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와 정보의 투명한 수집·공개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사후적인 부정수급 적발 및 방지가 아닌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개념의 위험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시행하고 있음.
- 부적절한 지급위험(Improper payment risk)에는 사기, 오남용, 과대지급, 과소지급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위험관리가 보조금 관리제도의 핵심임.
  - 예산관리처(OMB)에서는 각 사업별로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성 평가 결과에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사업은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을 추정함.

- 예산관리처(OMB)는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추정액을 바탕으로 우선 관리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우선 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면 개선방안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고 있음.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의 현황 보고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발생의 근본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
  - 과다지급 보조금의 회수 감사(Payment Recapture Audits)
  - 감사원(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의 감사 등

## 3.2. 영국

### 3.2.1. 정부보조금 관리

- 영국의 정부보조금은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정률보조금(Formula Grants), 포괄보조금(Grant-in-Aid) 등으로 구분됨.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외부의 기관에 동의된 항목이나 기능에 대한 지출의 대가로 지불하는 보조금임.
  - 정률보조금(Formula Grants)은 수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함. 보조금 지급 수식(formula)은 법에 의해 결정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구 크기에 비례하여 주는 방식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지방단체/지방공기업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이 포함됨.
  - 포괄보조금(Grant-in-Aid)은 주무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불되는 보조금이 포함됨.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합의된 일련의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됨.
- 영국은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각 부처별 보조금의 집행을 총괄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보조금 관리국(Grant Management Function)에서 보조금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함.

- ‘일반보조금에 대한 정부 역할 기준’의 10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선임 책임관(Senior Responsible Owner; SRO) 임명 : 모든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 기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임책임관을 임명해야 함.
  - ② 지배구조, 승인, 데이터 수집 : 정부는 100k파운드 이상 보조금 지출에 대해 엄정한 승인절차를 가져야 하며, 현재 보조금 분야와 지급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고보조금 정보시스템(Government Grants Information System; GGIS)에서 수집해야 함.
  - ③ 신규보조금 자문단(New Grants Advice Panel) : 고위험이거나 논쟁여지가 많은 신규 보조금 및 범위와 재원 마련에 변화를 겪는 기존 보조금은 신규보조금자문단의 분야별 전문가에게서 조사와 자문을 받아야 함.
  - ④ 사업 사례 개발(Business Case Development) : 모든 정부 보조금에 대해 지출 수준과 위험에 따라 확실한 사업 사례를 개발해야 함. 보조금 승인 과정에서 이 사업 모델에 대해 단계별 조사와 승인을 받음.
  - ⑤ 보조금 수급 경쟁(Competition for Funding) : 정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필요로 하며, 경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 여부 또는 직접 수여 결정에 대해 상세한 근거가 제공되어야 함.
  - ⑥ 보조금 동의(Grant Agreements) : 모든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의 가치에 따라 엄격한 보조금 동의를 거쳐 지급됨.
  - ⑦ 보조금의 성실한 집행과 부정수급 위험(Due Diligence and Fraud Risk) : 정부 보조금은 적절한 시점에 성실집행과 부정수급 위험평가를 받게 됨.
  - ⑧ 성과와 모니터링(Performance and Monitoring) : 모든 정부 보조금은 동의된 결과물과 장기적 결과가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정기적인 검토와 조정을 포함한 활발한 성과관리가 이행되어야 함.
  - ⑨ 연례 검토와 조정(Annual Review and Reconciliation) : 모든 정부 보조금은 재정적 조정에 초점을 둔 검토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급의 지속·중단·조정을 결정해야 함.
  - ⑩ 훈련(Training) : 보조금 지급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보조금 관리 우수사례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수강해야 함.

### 3.2.2. 부정수급 대응

- 영국 정부는 2006년에 ‘부적절 지출방지법’(Fraud Act 2006)을 제정하고, 2010년에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을 승인하면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음.
  - 영국은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서 각 부처별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Functional Standards for Counter Fraud)을 수립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전문가그룹(Government Counter Fraud Profession)을 설치하였음.
- 2013년에 부처의 부정행위 담당업무 역량에 대한 최초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부처에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함.
  - 국가 부정수급 방지시스템(National Fraud Initiative; NFI)의 데이터매칭 서비스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파악 및 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NFI의 데이터매칭 서비스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파악 및 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NFI 데이터 매칭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NFI 데이터매칭 서비스는 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국제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2월 국무조정실은 ‘국제 공공부문 부정행위 포럼’(International Public Sector Fraud Forum)을 설립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과 정기적으로 정보의 교류를 진행중임.
  - 2019년 2월 런던에서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석하는 ‘부정행위 대응 워크숍 2019’를 개최하였음.

### 3.3. 일본

#### 3.3.1. 국고보조금 관리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특정의 사무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교부되는 것을 총칭하여 ‘국고지출금’이라 칭하고, 현(縣)에서 시정촌(市町村) 등에 교부되는 경우에는 현지출금이라 칭함.
  - 국고지출금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무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 구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고부담금, 국가가 원조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의 위탁 업무에서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위탁금의 3종류로 구분됨.
  - 국고부담금의 주요 형태는 보육원 운영비 부담금, 생활보호비 부담금 등이 있으며, 국고보조금에는 도시기반 하천개수 사업비 보조금,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금 등이 있고, 국고위탁금에는 기초연금 등 사무비 교부금, 외국인 등록 사무 위탁금 등이 있음.
- 국고보조금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에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보조금 적정화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됨.
  - 보조금적정화법 제3조에서는 각 부처의 장이 보조금의 집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조금 수혜자도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집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고지출금을 국고부담금(보통국고부담금, 건설사업비 국고부담금, 재해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장려적·재정원조적 보조금), 국고위탁금(지방비 부담이 없음)으로 분류하고 국가의 의무와 보조금 규모 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이란 원칙적으로 ①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② 상대방이 이익을 받으며 ③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3가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성격을 가진 교부금은 「보조금적정화법」 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령으로 지정되어야 함

### 3.3.2. 부정수급 대응

-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부담금 등은 교부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절하지 않게 사용할 유인은 제도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1955년 제정된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초가 되었음.
  - 보조금적정화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된 것이며,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법률의 의의가 있음.
-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은 ‘회계검사원’이 담당하고 있음.
  - 회계검사원은 매년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사용 및 지급을 조사하고 있음.
  - 보조금 등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에 대해 신청과정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점검하는 체계임.
- 일본에서는 보조금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조금 등의 부적절한 사용 및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단계에서 지방공무원의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의 심사역할 강화는 그 자체로 지방공무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도덕적 기준’에 의한 것임.



### 3.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의하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식을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예방 중심으로 운영할 것과,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부정수급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음.

#### (1)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의 강화

- 보조사업을 기획·집행하는 행정담당자가 보조금에 대한 엄정한 인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관리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의 경우에 보조금 신청단계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엄격한 심사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보완

- 우리나라는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검토에 대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세부사업별 검토 내용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 과정 단위로 부정수급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영국에서는 보조사업별로 데이터매칭을 통한 부정행위 탐지와 대책 마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3) 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적정 규모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적절한 지급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혹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사례에서도 부정수급의 위험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고위험 분야를 선별·공표함으로써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고위험 분야의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수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4)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 보조금 수혜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조금 위험관리 결과, 집중관리 분야에 대한 관리 스케줄 및 실적 등 부정수급에 관한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또는 별도의 웹 기반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보조금 위험관리시스템은 종합적 위험관리(ERM)와 정보 수집·공개라는 두 축이 조화를 이루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 (5) 보조금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확충

- 보조금 집행관리의 비효율성 및 부적성성의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의 인식 및 역량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집행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며, 따라서 공직자 윤리의식을 비롯하여 관련법률과 사업지침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함.
- 특히 보조사업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의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적발시 불이익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제 3 장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최근 지적사항 검토

#### 1.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현황

##### 1.1. 농식품보조사업 추진 현황

- 정부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융자사업을 확충해 왔으며,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융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재도 국고보조금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사사업의 통폐합, 자치단체 보조사업 확대, 보조율 축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농림축산식품 보조사업은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으로 세분화되며, 2021년도 사업 수는 단위사업 71개, 세부사업 164개, 내역사업 505개로 나뉘어짐.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는 내역사업 기준으로 이루어짐.
- 2021년 농식품보조금 규모는 8조 604억 원이며, 농식품부 전체 예산(16조 2856억 원) 가운데 49.5%를 차지함.

- 농식품보조금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경상보조가 5조 2059억 원(민간 1조 9079억 원, 자치단체 3조 2980억 원)이고, 자본보조가 2조 8545억 원(민간 1조 1167억 원, 자치단체 1조 7378억 원)임.

<표 3-1> 2021년 농식품보조금 예산 현황

구분		성격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대상	민간	1조 9,079억 원 (23.7%)	1조 1,167억 원 (13.8%)	3조 246억 원 (37.5%)
	자치체	3조 2,980억 원 (40.9%)	1조 7,378억 원 (21.6%)	5조 358억 원 (62.5%)
계		5조 2,059억 원 (64.6%)	2조 8,545억 원 (35.4%)	8조 604억 원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1.2. 농식품보조사업 추진체계

- 농식품보조사업은 관련 주체는 ‘총괄부서 - 사업부서 - 사업시행기관 - 사업대상자’ 등으로 나뉘어짐.
  - 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함.
  - 사업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사업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해당됨.
  - 사업대상자 :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농식품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농업경영체, 임업인, 생산자단체, 공동조직, 농협, 기타 사업관계자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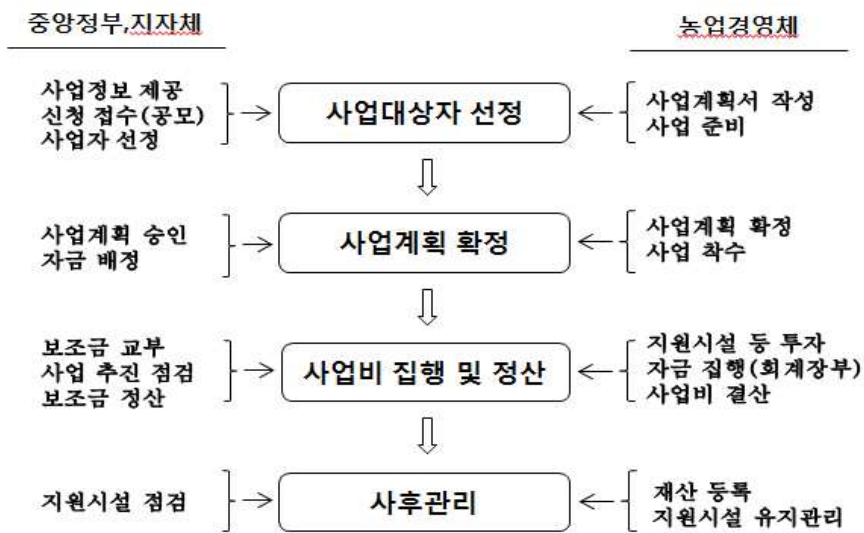
&lt;그림 3-1&gt;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프로세서	대 상	시 기	주 요 내 용	e나라도움
<b>[ 기초 및 계획단계 ]</b>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2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자치단체	N-1 1-4월	■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다음해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요구	농식품부	N-1 5월	■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내역사업 확정	기재부 농식품부	N-1 9월	■신규사업 통합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가 내 시	농식품부	N-1 9월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 계획 통보	■가내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N-1 12월	■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 편성(e-호조)	
확정내시	농식품부	N-1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확정내시
사업등록 접 수	농식품부 자치단체	N-1 12월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공모결과등록 등록접수 확정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 1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b>[ 추진단계 ]</b>				
자금배정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예산배정 사업배정
자금신청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출 등
사업시행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이행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집행모니터링 결과등록
사업 실적보고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b>[ 관리단계 ] OFF-LINE</b>				
성과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식품부	N+1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식품부	N+1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에서 캡처.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단계는 ①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② 사업계획 확정 단계, ③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단계, ④ 사후관리 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공급자인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와 수요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sup>5</sup>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사업이 당초 계획된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적확하게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교감하면서 단계별로 시의적절한 집행관리를 담당함.
  - 보조사업을 수혜한 농업경영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목적 사업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의무가 주어짐.

<그림 3-2>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단계별 업무 내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기초로 저자 작성.

5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체계는 부록 2에 세부내용을 게재하였음.

- 참고로,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국가보조금·용자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애그릭스; AgriX)’를 운영하고 있음.
- 애그릭스(AgriX)는 농림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이 관련 사업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신청에서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임.

<그림 3-3>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 현황

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에서 캡처.

### 1.3.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는 농림축산식품 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52호, 2020.2.27.,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본 훈령은 농식품재정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8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룸.

<표 3-2>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조 목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업무단계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농식품사업의 공고 및 홍보(훈령 제32조)
    -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자금지원계획,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 (2) 사업 신청(훈령 제34조)
    - 농식품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농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해야 함.
  - (3) 사업신청서 검토(훈령 제35조)
    - 신청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함.



- 검토사항 : 농업법인은 경영체 등록 여부, 지원신청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중복·편중 방지, 유사사업 신청자는 최대 3회까지 제한 등,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함.

(4) 사업신청서 심사(훈령 제38조)

- 자치단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따른 자금지원계획, 농업경영체 발전유형별 지원방향, 자치단체의 주요 육성품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함.
-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재해보험 가입자, 생산자단체 가입자 등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함.

(5)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훈령 제39조)

- 사업신청서 심사에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경영장부 기록, 경영교육 이수, 농림통계 표본농가, 한국농수산대 졸업 또는 마이스터대학 수료, 농업경영체 성실 등록, 각종 정책에 부합하는 자 등을 우선 선발함.

(6) 보조금 교부결정(훈령 제55조)

- 사업시행기관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연례적 이월이나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함.

(7) 사업의 계약(훈령 제57조)

- 사업시행기관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8) 사업자금 집행(훈령 제58조)

-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시에는 이를 등록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연간 사업비 중에서 규정에 따라(예: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금액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장은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함.

(9)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훈령 제59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함.

(10) 중요재산의 등록(훈령 제60조)

- 민간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부기등기를 해야 함.

(11) 사업의 관리책임(훈령 제72조)

- 자치단체장은 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 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시설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자치단체장은 정부자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

(12) 경영장부 기록(훈령 제73조)

- 자치단체장은 국고와 지방비 합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해야 함.

(13)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훈령 제74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 운영해야 함.

(14)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훈령 제77조)

-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15) 보조금의 부정수급(훈령 제78조)

-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 1.4.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 확산되면서 농정 분야에서도 상향식 자율농정 방식이 채택되어 투융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리 분야에서 부정수급이나 이불용 발생 등 부적정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농식품부는 2017년에 국무총리 지시(2017.6.15.)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시책으로 예방점검, 특정감사 실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농식품부는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환수실적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최근의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5년 431건(80억 원)에서 2019년 38건(6억 87백만 원), 2020년 11건(64백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농식품보조금 환수실적은 2015년 414건 69억 원 수준에서 2019년 35건(5억 69백만 원), 2020년 11건(64백만 원)이 환수 조치되었음.

<표 3-3> 최근 농식품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2015~2020년)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적발 실적	건 수	431	170	64	43	38	11
	부정수금액	8,025	2,575	924	251	687	64
환수 실적	건 수	414	170	63	38	35	11
	환수금액	6,860	2,884	919	237	569	64

주: 부정수금액에 이자·가산금을 합하여 환수하거나 재산 부족 또는 환수절차 진행 등 사유로 부정수금액과 환수액이 불일치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2.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검토

### 2.1.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표 3-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 ●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배점)	평가요소
1-1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4)	①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과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정도를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	①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명확한지를 고려
	②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	①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②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③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5)	①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고려
	③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④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1-5 재정 지원 규모 적정성 (10)	소규모 사업 ①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업 ②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 ③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지를 고려
	대규모 사업 ④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 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

평가항목(배점)	평가요소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	①통합관리지침 제14조 공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	①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①보조사업 실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	①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	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②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관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8~2020년 3년간 평가보고서에는 농식품보조사업 전체를 망라하여 총 144개 사업을 수록하고 있음.
  - 2018년 평가대상사업은 2018년 말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이며, 2015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과 2016년에 신설되어 2018년 존속기한이 도래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2019년 평가대상사업은 2019년 말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이며, 2016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2017년에 신설된 사업임.
  - 2020년 평가대상사업은 2020년 말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이며, 2017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2018년에 신설된 사업임.
- 2018년도 농식품부 평가대상 4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 추진 18개 (40.9%), 사업방식 변경 14개(31.8%), 감축 11개(25.0%), 단계적 폐지 1개 (2.3%) 등으로 평가됨.

- 농식품부 소관사업은 29개로, 정상 추진 7개(24.1%), 사업방식 변경 11개(37.9%), 감축 10개(34.3%), 단계적 폐지 1개(3.4%) 등으로 평가됨.

<표 3-4> 2018년도 농식품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합계			1	2.3%			11	25.0%	14	31.8%	18	40.9%	44
농식품부			1	3.4%			10	34.3%	11	37.9%	7	24.1%	29
농진청									1	100%			1
삼림청							1	7.1%	2	14.3%	11	78.8%	14

자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 발췌 작성.

- 2019년 농식품부 평가대상 75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 추진 21개(28.0%), 사업방식 변경 26개(34.6%), 감축 26개(34.7%), 통폐합 1개(1.3%), 단계적 폐지 1개(1.3%) 등으로 평가됨.
- 농식품부 소관사업은 55개로, 정상 추진 11개(20.0%), 사업방식 변경 21개(38.2%), 감축 21개(38.2%), 통폐합 1개(1.8%), 단계적 폐지 1개(1.8%) 등으로 평가됨.

<표 3-5> 2019년도 농식품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합계			1	1.3%	1	1.3%	26	34.7%	26	34.6%	21	28.0%	75
농식품부			1	1.8%	1	1.8%	21	38.2%	21	38.2%	11	20.0%	55
농진청							1	12.5%	1	12.5%	6	75.0%	8
삼림청							4	33.3%	4	33.3%	4	33.3%	12

자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 발췌 작성.

- 2020년 농식품부 평가대상 25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 추진 1개(4.0%), 사업방식 변경 13개(52.0%), 감축 10개(40.0%) 등으로 평가됨.
- 농식품부 소관사업은 19개로, 정상 추진 1개(5.3%), 사업방식 변경 9개(47.4%), 감축 9개(47.4%) 등으로 평가됨.

&lt;표 3-6&gt; 2020년도 농식품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구 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합계							10	40.0%	13	52.0%	1	4.0%	25
농식품부							9	47.4%	9	47.4%	1	5.3%	19
농진청									3	100%			3
삼림청							1	33.3%	1	33.3%	1	33.3%	3

자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 발췌 작성.

## 2.2.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 감사원은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보조금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이하에서 최근의 농식품사업 관련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함.
- 2019년에는 특정감사로서,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19. 3)에서 농기계 지원사업 및 비료 지원사업의 감사를 실시하였음.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자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비축 지원자금과 농기계수리 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을 배정·용자받은 업체들이 용자액보다 적게 부품 등을 구입하는 등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미수행.
  -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농협의 계통단가 자료, 농업인 농기계 구입 관련 대출내역, 정부 조달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용자지원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

- 2019년에는 특정감사로서, 농산촌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2019. 12)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조성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하였음.
  - 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시설물 사후관리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 농식품부는 지역개발사업시설물 운영 및 보조금 지원 소득시설물의 소유권 보전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군별로 사후조치사항을 보고받아 관리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소홀함.
    - 이번 감사 시 함평군 등 4개 시·군의 55개 시설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해당 시·군이 부실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조치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30개 시설물이 여전히 부실 운영되고 있는 등 농식품부는 조치결과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 시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 또한 김제시 등 11개 시·군의 48개 소득시설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김제시 등 2개 시·군에서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2개 시설물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②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 국고보조금 편성 등 부적정 : 농식품부와 충남도는 청양군(A농공단지)에 그리고 충북도는 괴산군(B농공단지)에 각각 국고보조금 38억 3천만 원과 70억 원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부적절한 문제가 지적됨.
    - 농식품부와 충청남도는 청양군이 A농공단지 조성 관련 2016~2018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위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청양군은 회계연도 2년을 초과하고서도 미집행한 국고보조금 15억 3천만 원을 미반환.
    - 괴산군은 위 B농공단지 조성 면적이 보조금 교부 당시보다 8,682㎡ 축소되었는데도 충청북도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면적축소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1억 8천만 원 미정산.
  - ③ 농촌테마공원 운영 부실지구 현황보고 및 관리 부적정 :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매년 4~5개 시·군 지역을 선정하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지원하여 2019년 7월 말 현재 총 4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는데, 시·도는 이를 관



- 리하면서 부실지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 강원도 고성군 및 화순군이 관리하는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고성군의 “C농촌테마공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전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화순군의 “D농촌테마공원”도 전체 시설 운영이 중단된 채로 공원 내 정자 등 시설을 특정인이 무단 점유.
- 2020년에는 성과감사로서,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2020. 7)에서 전통식품산업 등 국내성장·지원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였음.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 사업의 성과를 위한 실태조사는 소비자 성향 및 시장 특성을 파악하도록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주류산업실태조사’ 등 3개 조사의 조사주기·품목·모집단 선정 등을 매년 다르게 실시하여 분석·활용이 곤란.
  - 식품기업 자금 지원 : 국산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우대금리 제도는 비우대금리보다 유리하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가 기존에 지원하던 금리보다 높아 우대금리를 통한 유인효과 미확보.
- 2020년 2월에는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I (보조금 분야)’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지적되었음.
- 정읍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부당 처리 : 2016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거나,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조치.
  - 함평군의 보조사업자 추천 및 보조사업 정산업무 부당 처리 : 2015년에 농식품부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추천하였고, 농식품부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관련 보조금 회수 : 김해시(2011~15년에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창원시(2011~16년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합천군(2010~14년에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영양군(2008년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 임산물생산단지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부당지급), 보성군(2012~13년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등의 보조금 부당지급).
- 2021년에는 기관정기감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보고서(2021. 1)에서 위법·부당사항 13건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식품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불금 지급 및 국공유지 관리 부적정 : 최근 2년(2018~19년)간 국공유지 직불금 지급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에 447백만 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국공유지 관리기관은 이에 대해 변상금(586백만 원)을 미부과.
  - 비목적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시·군·구가 부동산 매매 등 비목적사업을 영위한 35개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 해산청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었고, 하동군 등 3개 시·군은 6개 농업법인이 관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영농의사도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취득농지를 자경하겠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는데도 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미조치.
  -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폐업지원시스템에 재배작물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시·군 폐업지원업무 담당자는 폐업작물을 다시 재배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 8개 시·군 13개 농가가 포도 폐업지원금 합계 382백만 원을 받고 포도를 다시 재배하고 있는데도 지원금이 미환수.

- 2021년 8월에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 감사의 목적은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부실한 농업법인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이었으며, 특히 농식품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포천시가 2015~2019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4개 농업회사법인을 부적정하게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 처리했음을 지적함.
  - 부적격 사업자 선정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 조사료 사업대상지가 적법하게 확보되지 않은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보조금 부당 지급 : 농업법인은 부당한 표본계근을 이용하고 허위로 발급된 계량증명서 등으로 보조금을 청구했고, 행정담당자는 생산현장에 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조사료 사일리지를 확인했다는 허위 출장복명서를 이용하여 고의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부당 정산 : 농업법인은 자부담금(총 사업비 10%) 증빙서류를 유사 사업 세금계산서로 중복 제출했고,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식당 계약금, 차입금 상환, 액비저장조 구매 등)했으며, 허위 계량증명서와 자부담 증빙만으로 사업비를 정산.
  -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과정에서 제출된 허위 서류 등에 대한 검토를 태만했으며, 허위 출장복명서를 스스로 작성한 뒤 팀장·과장을 속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고의로 부당하게 처리.
- 최근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농식품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선정 단계의 부적정 사유에는 ①기준 미흡, ②선정 오류 등이, 집행관리 단계의 부적정 사유에는 ③자금 횡령, ④자금 편취, ⑤부실 집행, ⑥비효율적 운영, ⑦정산관리 부적정 등이, 사후관리 단계의 부적정 사유에는 ⑧재산관리 미흡, ⑨보조금 미환수 등이 지적됨.

&lt;표 3-7&gt; 농식품보조금 부적정 집행관리 유형과 주요내용

단계	유형	주요내용	집행사례
선정	①기준 미흡	•지원기준 미비 •자격기준 미흡	○○사업에 표준사업비 및 보조금 상한 등의 합리적 기준 미흡
	②선정 오류	•선정기준 조작 •허위서류 제출 •중복 지원 •자격검증 소홀	○○시에서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원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사업으로 신청
집행관리	③자금 횡령	•지정용도 외 사용 •사적목적 유용 •보조금 무단인출	○○군에서 농업인이 보조금 일부를 개인사업으로 무단 사용
	④자금 편취	•가격 조작 •명의 대여 •자부담 회피 •내부 동조	○○농업법인이 설비업자와 공모하여 자부담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편취
	⑤부실 집행	•사업비 혼용 •보조금계좌 미구분 •기간 후 사용	○○군에서 농식품부보조사업과 환경부 보조사업을 혼용하여 집행
	⑥비효율적 운영	•사업계획 임의변경 •계약 부적정 •성과검증 소홀 •사업관리기준 미비 •성과관리 불철저	○○시에서 현장실사를 태만히 하여 농업인의 구두설명만 듣고 사업 진행 결과를 보고
	⑦정산관리 부적정	•증빙서류 미비 •정산보고서 작성 부실 •정산보고서 검증 부실 •정산 지연	○○농업법인은 실제 지출한 사업비와 다른 회계 서류를 작성하여 정산보고서로 제출
사후관리	⑧재산관리 미흡	•재산관리 미흡 •시설관리 미흡	○○농업법인은 보조금 지원시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⑨보조금 미환수	•보조금 미환수 •이자 미회수	○○시는 지난 5년 동안 부실 보조사업에 대한 자금 회수에 소홀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2019~2021년) 사례에서 정리.

### 3. 선행연구의 지적사항 검토

#### 3.1. 농식품보조사업 관련 연구

- 농업 분야의 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는 UR 협상이 타결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투융자사업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업실적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의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음.
- 정부는 시장개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융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1단계(1992~1998년)는 UR 타결에 따른 지원으로 42조 원, 제2단계(1999~2003년)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45조 원, 제3단계(2004~2013년)는 FTA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119조 원이 투입됨.
  - 투융자사업의 주요 성과로,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생산, 영농기술과 품질의 향상으로 사계절 신선채소 공급 및 농산물 수출 증대, 농어촌의 도로, 상하수도, 의료 등 복지서비스 수준의 확충 등이 평가됨.
  - 반면에, 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 사업자 선정이나 추진 방식 및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 사업비 누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농림부는 2000년에 농업·농촌투융자사업의 부실·비효율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추진실적을 평가해 3년 연속 부실한 시·군과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농림사업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음.
- 2000년대 들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농업투융자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병률 외(2009)의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보조금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투융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음.
  - 박성재 외(2011)는 농업보조금이 농업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 정책수단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늘어남으로써 농업 부문이 점점 보조금에 의존하여 자발적으로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약화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음.
- 박준기 외(2013)의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 집행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사업도 사업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유형화하여 보조금사업의 신청-집행-관리의 전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박준기 외(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정상화방안 연구, 2015)의 연구에서는 농식품 분야 정부보조금사업의 비정상 운영 사례에 대하여 ① 사업대상자 선정, ② 사업추진 검토, ③ 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④ 보조시설 사후관리 등 주요 네 가지 분야에서 검토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상자 선정 : 농업경영체 DB와 애그릭스(AgriX) 시스템을 연계·통합함으로써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경영체별 경영정보, 지원이력 조회 등으로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보조금 집행 효율화 : 지자체의 관리대상 보조재산 건수 과다로 정상적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자산 중 소모성 기자재 등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 방식도 오프라인 형태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방식을 전환하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리로 개편이 필요함. 한편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부기등기’함으로써 매매, 담보제공 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금융기관이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하여 국고지원시설의 임의 사용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성과 평가 의무화 :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정사업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집행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보조사업 및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환류 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의 사업성과를 차년도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보조금 부당 사용의 책임 강화 : 보조금 부당사용이 반복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토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지원이력관리 등에 대한 누수방지를 위해 애그릭스(AgriX)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함.
-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농업부문 보조금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민선 외(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2014)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을 사업목적과 집행방식에 따라 투입재정사업과 투입조세사업, 혁신재정사업과 혁신조세사업, 소득재정사업과 소득조세사업 등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별 성과분석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특히 농업보조금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명확화, 정책목적의 구체화, 정책집행의 투명화와 효율화, 정책수단의 연계화와 통합화, 농업정책의 지방분권화, 농업보조금의 영역 확대, 소프트웨어형 사업으로 전환, 성과평가 제도개선, WTO 기준과 일치성 제고 등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음.
  - 조윤희(농업보조사업 평가, 2015) 연구에서는 정부가 농업생산 장려 및 농업종사자 소득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구체적으로, 기본방향에 농업의 혁신 및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과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사업과 조세감면을 통한 농업생산비 지원의 통합 운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농식품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사례로서, 서대석 외(2016)은 첨단온실사업에 대하여, 우병준 외(2016)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김정호 외(2017)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서대석 외(2016)는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수익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사업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

- 하고 정책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우병준 외(2016)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참여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영농후계자를 보유한 농가일수록, 기존의 축사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은 농가일수록, 젊고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사업 참여의사가 높으므로,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김정호 외(2017)는 지자체 보조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에 지역재단이 농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농식품사업 정보제공 개선 설문조사 보고서』(2021.8)에서 농업인들의 농식품보조사업 정보획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식품 보조사업 정보획득 현황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른다’가 전체 응답자의 54.9%(전혀 모름 15.1%, 잘 모름 39.8%)로 높게 나타남.
  - 사업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5.6%(매우 자주 7.2%, 자주(2~3회) 49.0%, 한번 19.4%)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정보를 알았으나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0.1%(자주 4.6%), 2~3번 41.8%, 1번 23.7%)로 높게 나타남.
  -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경로는 ‘이장이나 마을방송’이 2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시·군청에서 보내주는 휴대폰 문자’가 23.2%, ‘소속단체의 카톡방이나 네이버 밴드’가 20.3%, ‘사업안내 책자 등 자료’가 15.0% 순서임.
  - 보조사업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업안내책자’가



- 38.5%이며, 다음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앱’이 21.7%, ‘보조사업 안내 전문인력 지원’이 20.1% 순으로 나타남.
-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서류작성 시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하다(80.3%), 매우 필요하다(35.5%), 필요하다(44.7%) 등으로 높게 나타남.
  - 개선방안으로 ①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농식품 보조사업 정보 제공, ②농식품 보조사업 정보전달 주체에 대한 교육 운영, ③농식품 보조사업 안내 책자 제작 및 농가 개별 발송, ④모바일 앱을 활용한 정보 제공, ⑤농식품 보조사업 정보 제공 및 신청도움 전문인력 지원 등을 제언하였음.

### 3.2.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련 연구

- 2014년에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검토되고, 특히 2019년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속속 수행되고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외(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2019)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sup>6</sup>
  -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은 일반 국민의 신고 및 제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갈수록 부정수급 행위가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신고 및 제보 위주의 사후 적발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의하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방식을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방식에서 전환하여 사전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예방 중심으로 운영할 것과, 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부정수급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

<sup>6</sup> 자세한 내용은 앞의 제3장 3절 참조.

방법을 알 수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외(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연구, 2020)의 연구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위험성을 유형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음.
  - ① 공지 및 교육 :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본인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도를 공지하고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② 집행 점검 : 보조사업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 보조금관리법 제25조 2항과 제32조에 따른 집행점검에 대해 위험성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③ 결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부정수급 발생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고위험사업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발생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위험 및 저위험사업에 대해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발생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④ 감사 : 매년 정기적 감사 사항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면서, 고위험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비율을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중위험 및 저위험사업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정도로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의견조사

#### 1.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sup>7</sup>

##### 1.1. 조사 대상 및 방법

###### ○ 조사 목적

- 농식품보조사업의 수요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보조사업의 효과, 비효율이나 부정수급 원인,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애로점과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시·군 농정과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 중에서 이메일 주소 정보가 확보된 191명
- 조사 기간 : 2021. 12. 8 ~ 12. 14.
- 조사 방법 : 조사 협조공문과 조사표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메일 또는 우편으로 회신을 받음.

<sup>7</sup> 이 절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담당: 박유천 사무관, 김문석 주무관)에서 조사·분석·정리한 결과를 연구책임자가 편집·수정 보완하였음.

## ○ 조사 내용 : 부록 의견조사표 참조

- 농식품보조사업 만족도, 보조사업 운영 상황 및 효과성
- 보조금 비효율 및 부정수급의 발생원인, 분야별 개선 필요성
- 보조사업 관련 현장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

## 1.2. 조사 결과

## 1.2.1. 응답자 분포

## ○ 농업인 응답자는 총 60명이며, 이들의 경영체 형태, 사업 분야, 영농경력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경영체 형태는 농업인(개인경영) 80.0%, 영농조합법인 13.3%, 농업회사법인 5.0%, 기타 1.7% 등임.
- 응답자의 주된 사업분야는 원예작물 40%, 식량작물 26.7%, 농산물 가공·판매 11.7%, 농촌관광 3.3%, 기타 18.3% 등임.
- 응답자의 영농경력은 20년 이상 48.3%, 10~14년 20.0%, 15~19년 15.0%, 5~9년 11.7%, 5년 미만 5.0% 등임

&lt;표 4-1&gt; 응답자의 경영형태 분포

단위: 명, %

구분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전체
빈도	48	8	3	1	60
백분율(%)	80.0	13.3	5.0	1.7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lt;표 4-2&gt; 응답자의 주사업분야 분포

단위: 명, %

구분	식량작물	원예작물	농산물가공판매	농촌관광	기타	전체
빈도	16	24	7	2	11	60
백분율(%)	26.7	40.0	11.7	3.3	18.3	100.0

&lt;표 4-3&gt; 응답자의 영농경력 분포

단위: 명, %

구분	5년 미만	5~9년	10~14	15~19	20년 이상	전체
빈도	3	7	12	9	29	60
백분율(%)	5.0	11.7	20.0	15.0	<b>48.3</b>	100.0

### 1.2.2. 농식품보조사업 지원 실적과 만족도

- 농식품보조사업의 지원 실적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60명 중 34명 (56.7%)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항목별 응답 내용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음.
  -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 내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만족(41.2%), 매우 만족(32.4%)으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은 20.6%, 불만족 합계는 5.8%로 나타남.
  - 보조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금액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29.42%), 매우만족(17.6%)으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은 35.3%, 불만족 합계는 17.6%로 나타남.
  -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절차(자금 교부, 정산 등)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44.1%), 매우 만족(23.5%)으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은 23.5%, 불만족 합계는 8.8%로 나타남.

&lt;표 4-4&gt;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수혜 농업인	1 (2.9)	1 (2.9)	7 (20.6)	14 (41.2)	11 <b>(32.4)</b>	34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lt;표 4-5&gt;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금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	-------	-----	----	----	-------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수혜 농업인	1 (2.9)	5 (14.7)	12 <b>(35.3)</b>	10 (29.4)	6 (17.6)	34 (100.0)

&lt;표 4-6&gt;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수혜 농업인	0 (0.0)	3 (8.8)	8 (23.5)	15 <b>(44.1)</b>	8 (23.5)	34 (100.0)

- 농식품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농업인은 26명(43.3%)이며, 그 중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22명이 응답함.
- 보조사업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은 신청하지 않아서(40.9%), 사업정보를 알지 못해서(27.3%), 선정에서 탈락(27.3%) 등으로 응답하였음.

&lt;표 4-7&gt; 농식품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유

단위: 명, (%)

구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아서	선정에서 탈락	구비서류 복잡해서	계
미수혜 농업인	6 (27.3)	9 <b>(40.9)</b>	6 (27.3)	1 (4.5)	22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 1.2.3.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 시·군에서 수행하는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을 확보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38.3%), 그렇다(30.0%), 그렇지 않다(20.0%)로 응답하였음.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보통(41.2%), 그렇다

(32.4%), 그렇지 않다(14.8%) 등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통(34.6%), 그렇지 않다(26.9%), 그렇다(26.9%), 전혀 그렇지 않다(7.7%) 등으로 나타남.

-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집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38.3%, 보통(33.3%), 그렇지 않다(20.0%) 등으로 응답하였음.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50.0%) 보통(32.4%), 그렇지 않다(8.8%), 그렇다(8.8%) 등으로 분포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34.6%) 보통(34.6%), 그렇다(23.1%) 등임

- 시·군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40.0%), 보통(36.7%), 그렇지 않다(11.7%) 등으로 응답하였음.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47.1%) 보통(35.3%), 매우 그렇다(14.7%) 등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통 38.5%, 그렇다 30.8%, 그렇지 않다 23.1%로 나타남.

-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50.0%), 보통(25.0%)으로 많이 응답하였음.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67.6%) 매우 그렇다(20.6%) 등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통 46.2%, 그렇다 26.9%, 그렇지 않다 11.5% 등으로 나타남.

-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나 농기자재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41.7%, 그렇다 36.7%이고, 부정 응답(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은 10.0%로 응답하였음.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44.1%) 보통 38.2% 등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통 46.2%, 그렇다 26.9%, 그렇지 않다 11.5% 등으로 나타남.

<표 4-8>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2 (3.3)	12 (20.0)	23 <b>(38.3)</b>	18 (30.0)	5 (8.3)	60 (100.0)
수혜 농업인	0 (0.0)	5 (14.7)	14 <b>(41.2)</b>	11 (32.4)	4 (11.8)	34 (100.0)
미수혜 농업인	2 (7.7)	7 (26.9)	9 <b>(34.6)</b>	7 (26.9)	1 (3.8)	26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9>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과성 있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1 (1.7)	12 (20.0)	20 (33.3)	23 <b>(38.3)</b>	4 (6.7)	60 (100.0)
수혜 농업인	0 (0.0)	3 (8.8)	11 (32.4)	17 <b>(50.0)</b>	3 (8.8)	34 (100.0)
미수혜 농업인	1 (3.8)	9 <b>(34.6)</b>	9 <b>(34.6)</b>	6 (23.1)	1 (3.8)	26 (100.0)

<표 4-10>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0 (0.0)	7 (11.7)	22 (36.7)	24 <b>(40.0)</b>	7 (11.7)	60 (100.0)
수혜 농업인	0 (0.0)	1 (2.9)	12 (35.3)	16 <b>(47.1)</b>	5 (14.7)	34 (100.0)
미수혜 농업인	0 (0.0)	6 (23.1)	10 <b>(38.5)</b>	8 (30.8)	2 (7.7)	26 (100.0)

<표 4-11>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2 (3.3)	4 (6.7)	15 (25.0)	30 <b>(50.0)</b>	9 (15.0)	60 (100.0)
수혜 농업인	0 (0.0)	1 (2.9)	3 (8.8)	23 <b>(67.6)</b>	7 (20.6)	34 (100.0)
미수혜 농업인	2 (7.7)	3 (11.5)	12 <b>(46.2)</b>	7 (26.9)	2 (7.7)	26 (100.0)



<표 4-12>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2 (3.3)	4 (6.7)	25 ( <b>41.7</b> )	22 (36.7)	7 (11.7)	60 (100.0)
수혜 농업인	0 (0.0)	1 (2.9)	13 (38.2)	15 ( <b>44.1</b> )	5 (14.7)	34 (100.0)
미수혜 농업인	2 (7.7)	3 (11.5)	12 ( <b>46.2</b> )	7 (26.9)	2 (7.7)	26 (100.0)

#### 1.2.4.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 농업인 대상으로 농식품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100으로 볼 때,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80% 미만(28.3%), 80~85%(23.3%), 95% 이상(21.7%) 등으로 응답하였음.
  - 최근 5년내 보조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95% 이상에 29.4%, 80~85%에 23.5%, 90~95%에 20.6%로 응답하였고, 보조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85% 미만에 53.8%, 80~85%에 23.1%로 응답함.

<표 4-13>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투입시 직접효과 발휘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95% 이상	90% 이상 ~ 95% 미만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80% 미만	합계
농업인 전체	13 (21.7)	9 (15.0)	7 (11.7)	14 (23.3)	17 ( <b>28.3</b> )	60 (100.0)
수혜 농업인	10 ( <b>29.4</b> )	7 (20.6)	6 (17.6)	8 (23.5)	3 (8.8)	34 (100.0)
미수혜 농업인	3 (11.5)	2 (7.7)	1 (3.8)	6 (23.1)	14 ( <b>53.8</b> )	26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원인 중 어떤 원인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인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를 보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다수이고

원인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영향이 심각한 편이라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효과 저하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6.9%로 매우 높음(매우 심각 25.9%, 심각한 편 31.0%).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5.9%로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보통이 40.6%, 심각하다는 응답이 50.0%(심각한 편 28.1%, 매우 심각 21.9%)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65.4%(심각한 편 34.6%, 매우 심각 3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②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 저하(획일적 기준, 융통성 부족)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남(심각한 편 41.4%, 매우 심각 13.8%).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3.1%(심각한 편 40.6%, 매우 심각 12.5%),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57.7%(심각한 편 42.3%, 매우 심각 15.4%)로 높게 나타남.

③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하여 보조금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41.3%(심각한 편 31.0%, 매우 심각 10.3%)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0.7%(심각한 편 34.4%, 매우 심각 6.3%)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2.3%(심각한 편 26.9%, 매우 심각 15.4%)로 나타남.

④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보조금의 효과 저하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36.2%(심각한 편 31.0%, 매우 심각 5.2%)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31.2%(심각한편 28.1%, 매우 심각 3.1%)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

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42.3%(심각한 편 34.6%, 매우 심각 7.7%)로 높게 나타남.

- ⑤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 대행 또는 중개 등의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하게 되어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34.5% (심각한 편 22.4%, 매우 심각 12.1%)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31.3%(심각한 편 18.8%, 매우 심각 12.5%)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38.4%(심각한 편 26.9%, 매우 심각 11.5%)로 높게 나타남.

- ⑥ 그 밖에 보조금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영향이 심각한 정도는 부적합한 사업자 선정이 15.5%(심각한 편 12.1%, 매우 심각 3.4%),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 저하가 12.0%(심각한 편 8.6%, 매우 심각 3.4%)로 나타남.

<표 4-14>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비효율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매우 심각	심각 한편	보통	영향 적음	영향 없음	계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 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 효과가 저하	농업인 전체	15 (25.9)	18 (31.0)	21 <b>(36.2)</b>	2 (3.4)	2 (3.4)	58 (100)
	수혜 농업인	7 (21.9)	9 (28.1)	13 <b>(40.6)</b>	2 (6.3)	1 (3.1)	32 (100)
	미수혜 농업인	8 (30.8)	9 <b>(34.6)</b>	8 (30.8)	0 (0.0)	1 (3.8)	26 (100)
	농업인 전체	8 (13.8)	24 <b>(41.4)</b>	20 (34.5)	3 (5.2)	3 (5.2)	58 (100)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 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 해 농가가 필요하거나 원 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 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 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 저하 (확실적 기준, 융통성 부족)	수혜 농업인	4 (12.5)	13 <b>(40.6)</b>	11 (34.4)	2 (6.3)	2 (6.3)	32 (100)
	미수혜 농업인	4 (15.4)	11 <b>(42.3)</b>	9 (34.6)	1 (3.8)	1 (3.8)	26 (100)
	농업인 전체	6 (10.3)	18 (31.0)	24 <b>(41.4)</b>	7 (12.1)	3 (5.2)	58 (100)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농업인 전체	6 (10.3)	18 (31.0)	24 <b>(41.4)</b>	7 (12.1)	3 (5.2)	58 (100)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 미흡	수혜 농업인	2 (6.3)	11 (34.4)	12 (37.5)	5 (15.6)	2 (6.3)	32 (100)
	미수혜 농업인	4 (15.4)	7 (26.9)	12 (46.2)	2 (7.7)	1 (3.8)	26 (100)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 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 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농업인 전체	3 (5.2)	18 (31.0)	23 (39.7)	10 (17.2)	4 (6.9)	58 (100)
	수혜 농업인	1 (3.1)	9 (28.1)	14 (43.8)	6 (18.8)	2 (6.3)	32 (100)
	미수혜 농업인	2 (7.7)	9 (34.6)	9 (34.6)	4 (15.4)	2 (7.7)	26 (100)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대행 또는 중개 등의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함	농업인 전체	7 (12.1)	13 (22.4)	22 (37.9)	12 (20.7)	4 (6.9)	58 (100)
	수혜 농업인	4 (12.5)	6 (18.8)	11 (34.4)	9 (28.1)	2 (6.3)	32 (100)
	미수혜 농업인	3 (11.5)	7 (26.9)	11 (42.3)	3 (11.5)	2 (7.7)	26 (100)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자 선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농업인 전체	2 (3.4)	7 (12.1)	32 (55.2)	12 (20.7)	5 (8.6)	58 (100)
	수혜 농업인	2 (6.3)	2 (6.3)	17 (53.1)	8 (25.0)	3 (9.4)	32 (100)
	미수혜 농업인	0 (0.0)	5 (19.2)	15 (57.7)	4 (15.4)	2 (7.7)	26 (100)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	농업인 전체	2 (3.4)	5 (8.6)	22 (37.9)	19 (32.8)	10 (17.2)	58 (100)
	수혜 농업인	0 (0.0)	1 (3.1)	11 (34.4)	13 (40.6)	7 (21.9)	32 (100)
	미수혜 농업인	2 (7.7)	4 (15.4)	11 (42.3)	6 (23.1)	3 (11.5)	26 (1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표 4-15>에서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선정 절차, 중간 위탁, 집행관리 감독 주체, 컨설팅 및 사후관리, 기타 등으로 정리하였음.

<표 4-15>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항목	개선방안 의견
지원내용 (지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집행 공정을 기하기 위한 규제(사업내용 제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꼭 필요한 지출을 못하는</li> </ul>

지원량 등)	<p>경우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공무원과 사업집행 농민의 합의 하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변경, 침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내용에서 부수적인 부분은 선택사항을 다양하게 두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li> <li>• 좋은 제품이어도 회사의 규모가 작아 인증을 못받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고르려고 하니 너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li> <li>• 보조금 사업실행에 증빙 서류 충족 가능한 사업체 물품 구매는 일정 사업체에 편중되어 있음.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와 서로 상생 가능한 보조사업이 되었으면 함(필요 구매단가도 낮은 편)</li> <li>• 무조건적으로 퇴비 보조 같은 것은 하지 말고 <b>농사에 필요한 것 본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 방법으로 정산 필요</b></li> <li>• 사업 집행 공정을 위한 규제(사업내용 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으로 불필요한 지출발생. 꼭 필요한 지출이 제한됨</li> <li>* 보조사업 저온저장고 용량이 적어 큰 것으로 하려 해도 자부담 부분이 보조사업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하여 설치비가 증가해서 손해임</li> <li>• 보조사업에 제한되어 있는 상품이 문제임.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비싼 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보조사업자로 선정 되면 업자들이 먼저 와서 금액에 맞추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음</li> </ul>
지원기준 (지원단가, 지원한도, 보조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은 보조받는 장비·시설 기준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시행하는 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적당한 가격인지 알 수 없음.</li> <li>* 농기계는 농식품부나 하위 행정에서 가격적정성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작업 필요</li> <li>• 농기계, 농자재 가격의 적정성, 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것들 없애서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함. 특히 지역별로 한 대리점이 장악하고 있어서 대리점 횡포가 심함</li> <li>* 보조사업의 기준이 적정하지 않아 건축물 같은 경우 사업비를 받으나 자부담으로 하나 별반 차이가 없음</li> <li>• 보조사업 시 실제 구입 단가에 비하여 비효율적으로 보조사업 단가가 높아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가 실정에 맞지 않는 규격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어 농가의 부담이 됨. 국가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li> <li>• 지역 여건에 맞는 보조사업 필요하며 보조사업이라 일반 개인이 구매하는 것 보다 비싸다.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이 되면 지역에서 개인이 구매하고 투명한 정산처리가 필요</li> <li>• 과거 보조사업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보조를 받아도 비용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li> <li>• 물가상승으로 농기계 가격은 50% 이상 다 올랐는데 보조금이 그대로이니 다시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것이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대수도 줄어들고 있음</li> <li>•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는 게 업자에게 알려지면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견적이 들어옴. 그로 인해 자재비 및 장비 단가가 올라 오로지 보</li> </ul>

	<p>조금을 농민이 알차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b>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따른 상대적 보조금의 범위나 규모가 너무 다름. 같은 보조금이라도 A라는 지역에선 80%가 나온다면 B라는 지역에선 50%가 나옴. 같은 대한민국에서 30%라는 지급율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함</li> <li>• 맞춤형 보조사업 및 보조비율의 조정</li> <li>• <b>정액 지원 검토 필요.</b> 현금으로 사면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보조사업에 책정되면 가격이 오름</li> <li>* 구입하고 납품서나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 고려 필요</li> <li>• <b>보조사업으로 인한 가격이 높고 책정되어 일반 매입보다 높아 사업 효용성이 떨어짐.</b> 또한 부가세 환급이 안되고 수수료가 높아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b>농가부담이 가중됨</b></li> </ul>
<p>선정 (선정기준,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같은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조의 집행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b></li> <li>•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b>서류만의 농업인을 구분해내는 역량이 필요</b>하다고 여겨짐</li> <li>• 열심히 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선정 보조사업이 너무 적음</li> <li>• 청년 일자리에 집중되는 관심을 <b>50~60대에게도 관심 필요</b></li> <li>•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사업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하므로, 사업주체의 능력과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가를 하는데, 사업자 선정시 더욱 더 철저한 검증(사업아이템이 확실한지, 사업자의 사업능력이 있는지)을 거쳐서 선정 필요</li> <li>• 대농들과 일부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의 모두가 될 수 없음. <b>신규 진입 농업인, 청년 농업인, 소규모 농업인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배당되는 정책이 필요</b>함</li> </ul>
<p>중간 위탁, 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농업시설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부가세, 경비 이윤들이 지출되어 농가에 부담이 됨. 농업시설 사업에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은 직영처리함으로써 경비 절감으로 경쟁력 도모</li> <li>•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위탁을 줘야 하므로 시설 사업비가 상승. 개인이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자체비만 지원하면 개인이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li> <li>• <b>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은 입찰원칙으로 비싼 조달청 물품 단가 및 인건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일반 시중 공사비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보조금이 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보조금 혜택이 상당폭 줄어듬(많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b></li> <li>•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b>사업자에게 위탁을 줘야 하므로 시설사업비가 상승함.</b> 개인이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자체비만 지원하면 개인이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li> <li>• 보조사업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혜택을 받아야 할 농업인이지만, 농업 관련 농자재, 유통, 컨설팅 등 <b>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횡포와 이득 챙기기에 바쁜 실정임</b></li> </ul>

집행 관리 감독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수시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사업의 효율성, 비용, 시간 등의 낭비를 가져오게 됨. 보조사업 관련 담당자는 되도록 유경험자를 꼭 배치했으면 함</li> <li>• 기술원이나 센터사업인 경우는 직원들과 회장이나 농업인단체장 등 친분 관계에 의한 유착이 심하다고 봄</li> </ul>
컨설팅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창업의 경우 작물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진행하고 컨설팅을 받으며 사업 이후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li> <li>• 분야별 조건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농장을 선정해 지속적인 추가 지원으로 성공 유도</li> <li>• 농식품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성공까지 가기 어려움. 실정에 맞게 사업예산을 늘려 성과가 개선되기를 기대</li> <li>•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한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전문가 집단이 파견되어 지역민과 함께 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함</li> <li>*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 또는 사욕을 탐하는 자들에게 국가보조금이 개인의 치부에 활용되고 국고 손실이 물새뚝 낭비되고 있는 현실임</li> <li>• 사업보조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 감독이 필요함</li> </ul>
현장소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공모자 중 현실에 실현 가능하고 비전이 있는 사업내용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li> <li>• 철저하게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의 실정에 맞는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음</li> <li>• 정보의 부재 및 큰 자부담은 보조사업의 좋은 뜻에 저해되는 요인임</li> </ul>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1.2.5.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에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58.3%(그렇지 않다 48.3%, 전혀 그렇지 않다 10.0%) 발생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20.0%(그렇다 16.7%, 매우 그렇다 3.3%)임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66.7%(그렇지 않다 61.8%, 전혀 그렇지 않다 5.9%),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17.6%(그렇다 14.7%, 매우 그렇다 2.9%)로 응답함.
  -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46.2%(그렇지 않다 30.8%, 전혀

그렇지 않다 15.4%),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23.0%(그렇다 19.2%, 매우 그렇다 3.8%)로 응답함

<표 4-16>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발생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6 (10.0)	29 <b>(48.3)</b>	13 (21.7)	10 (16.7)	2 (3.3)	60 (100.0)
수혜 농업인	2 (5.9)	21 <b>(61.8)</b>	5 (14.7)	5 (14.7)	1 (2.9)	34 (100.0)
미수혜 농업인	4 (15.4)	8 <b>(30.8)</b>	8 <b>(30.8)</b>	5 (19.2)	1 (3.8)	26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예산 100이 교부될 경우에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 이상 ~ 5%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30.0%로 가장 많았고, 5% 이상 ~ 10% 미만 26.7%, 1% 미만 26.7%로이고, 10~20% 11.7%, 20%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임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5%가 35.3%, 1%미만이 32.4%, 5~10%가 26.5%로 응답하였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5~10%가 2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15%가 23.1%, 1~5%가 23.1%로 응답함.

<표 4-17>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교부시 부정수급 발생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1% 미만	1% 이상 ~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합계
농업인 전체	16 (26.7)	18 <b>(30.0)</b>	16 (26.7)	7 (11.7)	3 (5.0)	60 (100.0)
수혜 농업인	11 (32.4)	12 <b>(35.3)</b>	9 (26.5)	1 (2.9)	1 (2.9)	34 (100.0)
미수혜 농업인	5 (19.2)	6 (23.1)	7 <b>(26.9)</b>	6 (23.1)	2 (7.7)	26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50.0%(그렇다 41.7%, 매우 그렇다 8.3%), 그렇지 않다 16.6%(그렇지 않다 13.3%, 전혀 그렇지 않다 3.3%) 등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58.8(그렇다 52.9%, 매우 그렇다 5.9%), 그렇지 않다 14.7%(그렇지 않다 14.7%)로 응답함.
  -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38.4%(그렇다 26.9%, 매우 그렇다 11.5%), 그렇지 않다 19.2%(그렇지 않다 11.5%, 전혀 그렇지 않다 7.7%)로 응답함.

<표 4-1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 또는 근절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2 (3.3)	8 (13.3)	20 (33.3)	25 (41.7)	5 (8.3)	60 (100.0)
수혜 농업인	0 (0.0)	5 (14.7)	9 (26.5)	18 (52.9)	2 (5.9)	34 (100.0)
미수혜 농업인	2 (7.7)	3 (11.5)	11 (42.3)	7 (26.9)	3 (11.5)	26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5단계로 평가하도록 제시한 결과를 보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요인으로는 허위 신청, 내외부 공모, 관리미흡 등이 대략 15% 이상 우려가 있다고 응답함
- ① 보조금을 허위(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처리)로 인한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응답한 사람이 25.4%(그렇다 16.9%, 매우 그렇다 8.5%)임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려된다가 21.3%(그렇다 15.2%, 매우 그렇다 6.1%)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려된다가 30.7%(그렇다 19.2%, 매우 그렇다 11.5%)로 나타남.

② 보조금을 공모하여 부정으로 수령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20.7%(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6.9%)임.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려된다가 21.9%(그렇다 15.6%, 매우 그렇다 6.3%)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려된다가 19.2%(그렇다 11.5%, 매우 그렇다 7.7%)로 나타남.

③ 보조금을 관리가 미흡하여 부정으로 수령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19.0%(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5.2%)임.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려된다가 12.2%(그렇다 6.1%, 매우 그렇다 6.1%)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려된다가 28.0%(그렇다 24.0%, 매우 그렇다 4.0%)로 나타남.

<표 4-19>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계	
부패	공모 :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 모	농업인 전체	4 (6.9)	8 (13.8)	22 <b>(37.9)</b>	19 (32.8)	5 (8.6)	58 (100)
		수혜 농업인	2 (6.3)	5 (15.6)	16 <b>(50.0)</b>	6 (18.8)	3 (9.4)	32 (100)
		미 수혜 농업인	2 (7.7)	3 (11.5)	6 (23.1)	13 <b>(50.0)</b>	2 (7.7)	26 (100)
	임의 처리 : 무단 사용, 무단 담보· 임대·인출	농업인 전체	2 (3.5)	3 (5.3)	17 (29.8)	27 <b>(47.4)</b>	8 (14.0)	57 (100)
		수혜 농업인	0 (0.0)	2 (6.5)	8 (25.8)	17 <b>(54.8)</b>	4 (12.9)	31 (100)
		미수혜 농업인	2 (7.7)	1 (3.8)	9 (34.6)	10 <b>(38.5)</b>	4 (15.4)	26 (100)
	허위 : 가격 부풀 리기, 자부담 대 납, 허위 처리	농업인 전체	5 (8.5)	10 (16.9)	13 (22.0)	24 <b>(40.7)</b>	7 (11.9)	59 (100)
		수혜 농업인	2 (6.1)	5 (15.2)	6 (18.2)	16 <b>(48.5)</b>	4 (12.1)	33 (100)
		미수혜 농업인	3 (11.5)	5 (19.2)	7 (26.9)	8 <b>(30.8)</b>	3 (11.5)	26 (100)
오류	증빙 미비 : 세금 계산서, 카드영수	농업인 전체	2 (3.4)	6 (10.2)	12 (20.3)	28 <b>(47.5)</b>	11 (18.6)	59 (100)

증 등	수혜 농업인	0 (0.0)	3 (9.1)	6 (18.2)	17 <b>(51.5)</b>	7 (21.2)	33 (100)
	미수혜 농업인	2 (7.7)	3 (11.5)	6 (23.1)	11 <b>(42.3)</b>	4 (15.4)	26 (100)
중복 처리 :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농업인 전체	1 (1.8)	5 (8.8)	10 (17.5)	26 <b>(45.6)</b>	15 (26.3)	57 (100)
	수혜 농업인	0 (0.0)	3 (9.4)	3 (9.4)	16 <b>(50.0)</b>	10 (31.3)	32 (100)
	미수혜 농업인	1 (4.0)	2 (8.0)	7 (28.0)	10 <b>(40.0)</b>	5 (20.0)	25 (100)
업무 착오 :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농업인 전체	1 (1.7)	4 (6.9)	23 <b>(39.7)</b>	22 (37.9)	8 (13.8)	58 (100)
	수혜 농업인	0 (0.0)	0 (0.0)	15 <b>(45.5)</b>	12 (36.4)	6 (18.2)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4.0)	4 (16.0)	8 (32.0)	10 <b>(40.0)</b>	2 (8.0)	25 (100)
관리 미흡 : 자격 · 신청 · 평가 관 리 미흡	농업인 전체	3 (5.2)	8 (13.8)	18 (31.0)	23 <b>(39.7)</b>	6 (10.3)	58 (100)
	수혜 농업인	2 (6.1)	2 (6.1)	9 (27.3)	17 <b>(51.5)</b>	3 (9.1)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4.0)	6 (24.0)	9 <b>(36.0)</b>	6 (24.0)	3 (12.0)	25 (100)
집행 오류 :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농업인 전체	1 (1.8)	5 (8.8)	19 (33.3)	22 <b>(38.6)</b>	10 (17.5)	57 (100)
	수혜 농업인	0 (0.0)	2 (6.3)	7 (21.9)	16 <b>(50.0)</b>	7 (21.9)	32 (100)
	미수혜 농업인	1 (4.0)	3 (12.0)	12 <b>(48.0)</b>	6 (24.0)	3 (12.0)	25 (1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정수급의 여러 유형 중에서 아래의 주요 유형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를 보면,
  - 부정수급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요인으로는 업체와 농업인의 공모, 업체가 주도하여 허위 신청하는 경우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속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특정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자 선정, 정산서류 확인 등을 부

- 정하게 하는 경우가 우려된다고 응답함.
- 부정수급의 발생원인에 대한 우려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10% 내지 15% 범위에서 우려된다고 응답함.
  - ① 보조사업을 관련 업체가 주도적으로 서류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가격, 수량을 부풀려 부정수급 우려가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15.3%(그렇다 11.9%, 매우 그렇다 3.4%)임.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려된다가 9.1%(그렇다 6.1%, 매우 그렇다 3.0%)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려된다가 23.0%(그렇다 19.2%, 매우 그렇다 3.8%)로 나타남.
  - ② 보조사업을 특정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선정, 허위 정산서류 인정하여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15.3%(그렇다 13.6%, 매우 그렇다 1.7%)임.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려된다가 9.1%(그렇다 9.1%, 매우 그렇다 0.0%)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려된다가 23.0%(그렇다 19.2%, 매우 그렇다 3.8%)로 나타남.
  - ③ 보조사업을 관련 업체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서류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가격, 수량을 부풀려 부정수급 우려가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13.6%(그렇다 10.2%, 매우 그렇다 3.4%)임.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려된다가 12.1%(그렇다 9.1%, 매우그렇다 3.0%)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려된다가 15.3%(그렇다 11.5%, 매우 그렇다 3.8%)로 나타남.
  - ④ 보조금을 신청자격 세부요건(경작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한데, 요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부정수령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8.5%(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3.4%)임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려된다가 9.1%(그렇다 6.1%, 매우 그렇다 3.0%)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려된다가 7.6%(그렇다 3.8%, 매우 그렇다 3.8%)로 나타남.

&lt;표 4-20&gt;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발생 원인별 심각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매우 심각	심각 한편	보통	영향 적음	영향 없음	계
농업인이 단독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	농업인 전체	1 (1.7)	3 (5.1)	21 (35.6)	22 <b>(37.3)</b>	12 (20.3)	59 (100)
	수혜 농업인	0 (0.0)	2 (6.1)	15 <b>(45.5)</b>	10 (30.3)	6 (18.2)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3.8)	1 (3.8)	6 (23.1)	12 <b>(46.2)</b>	6 (23.1)	26 (100)
보조사업 관련 업체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상호 배분	농업인 전체	2 (3.4)	6 (10.2)	9 (15.3)	29 <b>(49.2)</b>	13 (22.0)	59 (100)
	수혜 농업인	1 (3.0)	3 (9.1)	5 (15.2)	17 <b>(51.5)</b>	7 (21.2)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3.8)	3 (11.5)	4 (15.4)	12 <b>(46.2)</b>	6 (23.1)	26 (100)
보조사업 관련 업체가 단독으로 주도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업체가 챙김	농업인 전체	2 (3.4)	7 (11.9)	14 (23.7)	23 <b>(39.0)</b>	13 (22.0)	59 (100)
	수혜 농업인	1 (3.0)	2 (6.1)	9 (27.3)	13 <b>(39.4)</b>	8 (24.2)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3.8)	5 (19.2)	5 (19.2)	10 <b>(38.5)</b>	5 (19.2)	26 (100)
사업대상자 기본요건(농업경영체, 직접경작, 소득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요건 서류를 조작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농업인 전체	2 (3.4)	3 (5.1)	16 (27.1)	26 <b>(44.1)</b>	12 (20.3)	59 (100)
	수혜 농업인	1 (3.0)	2 (6.1)	10 (30.3)	13 <b>(39.4)</b>	7 (21.2)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3.8)	1 (3.8)	6 (23.1)	13 <b>(50.0)</b>	5 (19.2)	26 (100)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세부요건(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한데,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농업인 전체	2 (3.4)	3 (5.1)	13 (22.0)	29 <b>(49.2)</b>	12 (20.3)	59 (100)
	수혜 농업인	1 (3.0)	2 (6.1)	7 (21.2)	17 <b>(51.5)</b>	6 (18.2)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3.8)	1 (3.8)	6 (23.1)	12 <b>(46.2)</b>	6 (23.1)	26 (100)
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	농업인 전체	1 (1.7)	8 (13.6)	12 (20.3)	26 <b>(44.1)</b>	12 (20.3)	59 (100)
	수혜 농업인	0 (0.0)	3 (9.1)	8 (24.2)	13 <b>(39.4)</b>	9 (27.3)	33 (100)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외 사용한 경우	미수혜 농업인	1 (3.8)	5 (19.2)	4 (15.4)	13 <b>(50.0)</b>	3 (11.5)	26 (100)
구입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기자재를 허위 사진·서류 등으로 속여서 청구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농업인 전체	0 (0.0)	5 (8.5)	7 (11.9)	29 <b>(49.2)</b>	18 (30.5)	59 (100)
	수혜 농업인	0 (0.0)	2 (6.1)	3 (9.1)	17 <b>(51.5)</b>	11 (33.3)	33 (100)
	미수혜 농업인	0 (0.0)	3 (11.5)	4 (15.4)	12 <b>(46.2)</b>	7 (26.9)	26 (100)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 전체	1 (1.7)	2 (3.4)	14 (23.7)	26 <b>(44.1)</b>	16 (27.1)	59 (100)
	수혜 농업인	0 (0.0)	0 (0.0)	8 (24.2)	15 <b>(45.5)</b>	10 (30.3)	33 (100)
	미수혜 농업인	1 (3.8)	2 (7.7)	6 (23.1)	11 <b>(42.3)</b>	6 (23.1)	26 (1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표 4-21>에서 보조사업 정보제공, 자격 기준, 사업자 선정, 가격 속이기, 컨설팅 및 사업 지도, 점검 감독, 중요재산 부정사용 등으로 정리하였음.

<표 4-21>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분야	답변 내용
보조사업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부족으로 대부분 농업인은 공모사업을 모르고 있음</li> <li>• 이제껏 농식품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조비를 받는 사례가 많음</li> <li>• 보조비가 필요한 사업자는 참 많은데 보조비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보조비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b>보조비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하고 홍보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b></li> </ul>
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을 획득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 사업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음</li> <li>• 자격조건 완화</li> <li>• 적정 자격이 되는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 농지면적, 농업년수, 재배작물, 전작 가산점 부여</li> <li>• <b>대농보다는 중소농에 보조사업의 지원이 적고</b> 중소농이 자격요건이 강하다 보니 지원사업 신청의 길이 적음</li> <li>• 대농은 조건 충족이 쉽기에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대농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료의 경우 <b>법인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개별농가로 줘서</b> 업체를 선정하여 <b>경쟁력 고취</b></li> <li>• 법인 위주에서 대농, 중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혜택을 주어야 함</li> <li>• <b>법인의 경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에는 개인이 농기자재를 보관하고 개인이 가져감</b></li> </ul>
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를 사업자로 선정</li> <li>• 실무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가 필요함</li> <li>• 친분이 있는 사람을 출자금 내지도 않은 명목상 이사를 등록시켜 서류상 구비요건을 만들지만 하면 선정 가능한 것이 문제임</li> <li>• 조사료의 경우 법인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개별농가로 줘서 업체를 선정하여 경쟁력 고취 필요</li> <li>• <b>보조사업 받으면서 정당하게 선정하고 중간업자가 수수료를 취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은 없을 것 같음</b></li> <li>• 보조사업자 선발시 준비서류 심사 및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li> </ul>
가격 속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농자재 가격의 실제 구매단가 적용을 하면 부정수급은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음</li> <li>• 가격 산정 시 시장 가격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사업에 반영하고 업체의 가격부풀리기 철저히 조사</li> </ul>
인력 지원, 컨설팅, 사업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법률, 행정 등 농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농민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많다보니 대충 넘어가거나 의도치 않는 부정이 일어나기도 함</li> <li>• 지역에서 오랜 세월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은 서류 작성 및 증빙 서류 작성이 어려워 농식품 보조사업을 추진을 못함</li> <li>• 농업인의 정책을 위해서는 <b>사업실행은 농업인이 사업에 몰두하고 서류에 관련된 인력은 서류 작성 가능 인력을 보조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함</b></li> <li>• <b>농업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b></li> </ul>
점검,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기계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중고를 구입하고 새 기계 금액인 것처럼 일단 기계만 있으면 되니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행하는 기관에서 꼭 방문하여 점검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li> <li>• 문서에 의존하는 업무가 아니고 실제사항을 점검하는 것만이 개선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함. <b>현장방문을 꼭 해서 직접 사진 찍고 보고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함</b></li> <li>• 보조사업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음</li> <li>•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관리 감독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됨</li> <li>• 보조사업을 시행하면 기간 동안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보조사업을 받는 농업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li> <li>•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li> </ul>

중요재산 부정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집행 완료 후 보유기간 동안 (시설, 농기계 등) 관리감독 및 불시점검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도록 해야 함</li> <li>•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업용 장비여도 탄력적으로 공유 또는 임작업 가능하도록 허용하면 좋겠음</li> </ul>
--------------	---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1.2.6. 농식품보조사업 정책에 대한 의견

-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제도가 농촌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4.1%나 되었음.
- 보조사업 집행관리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51.7%(그렇다 43.1%, 매우 그렇다 8.6%), 개선되지 않았다는 24.1%(그렇지 않다 17.2%, 매우 그렇지 않다 6.9%)임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75.7%(그렇다 63.6%, 매우 그렇다 12.1%)이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9.1%(그렇지 않다 6.1%, 전혀 그렇지 않다 3.0%)로 나타남.
- \*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개선되지 않았다가 44.0%(그렇지 않다 32.0%, 전혀 그렇지 않다 12.0%)이고, 개선되었다는 20.0%(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4.0%)로 나타남.

<표 4-2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가 5년 전과 비교하여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인 전체	4 (6.9)	10 (17.2)	14 (24.1)	25 ( <b>43.1</b> )	5 (8.6)	58 (100.0)
수혜 농업인	1 (3.0)	2 (6.1)	5 (15.2)	21 ( <b>63.6</b> )	4 (12.1)	33 (100.0)
미수혜 농업인	3 (12.0)	8 (32.0)	9 ( <b>36.0</b> )	4 (16.0)	1 (4.0)	25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획 - 선정 - 운영 - 관리 모든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 중 가장 필요한 것(85% 이상)이 ①보조사업 정보제공(94.7%), ②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투명성 확보(92.7%), 신속한 행정처리(85.7%)임
-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75~85%)이 ① 사업계획 수립시 현장의견 반영(79.6%), ②보조금 사용실적 점검 철저(79.0%), ③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78.9%) ④ 보조금 시설 사후관리 철저(77.2%) ⑤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77.2%), ⑥ 보조금 교부조건 간소화(76.8%) 순으로 나타남.

<표 4-23>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업추진 단계 및 내용		필요한 정도			보통	불필요	전혀불필요	합계
		매우 필요	필요	계				
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31 (52.5)	16 (27.1)	47 <b>(79.6)</b>	12 (20.3)	0 (0.0)	0 (0.0)	59 (100)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6 (10.9)	24 (43.6)	30 <b>(54.5)</b>	18 (32.7)	3 (5.5)	4 (7.3)	55 (100)
선정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32 (56.1)	22 (38.6)	54 <b>(94.7)</b>	2 (3.5)	0 (0.0)	1 (1.8)	57 (100)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22 (38.6)	22 (38.6)	44 <b>(77.2)</b>	10 (17.5)	1 (1.8)	2 (3.5)	57 (100)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33 (60.0)	18 (32.7)	51 <b>(92.7)</b>	3 (5.5)	0 (0.0)	1 (1.8)	55 (100)
운영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해야	22 (39.3)	21 (37.5)	43 <b>(76.8)</b>	12 (21.4)	1 (1.8)	0 (0.0)	56 (100)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해야	27 (48.2)	21 (37.5)	48 <b>(85.7)</b>	7 (12.5)	0 (0.0)	1 (1.8)	56 (100)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20 (35.1)	25 (43.9)	45 <b>(79.0)</b>	11 (19.3)	0 (0.0)	1 (1.8)	57 (100)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16 (28.1)	23 (40.4)	39 <b>(68.5)</b>	17 (29.8)	0 (0.0)	1 (1.8)	57 (100)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	17 (29.8)	23 (40.4)	40 <b>(70.2)</b>	13 (22.8)	3 (5.3)	1 (1.8)	57 (100)
관리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22	22	44	12	1	0	57

		(38.6)	(38.6)	<b>(77.2)</b>	(21.1)	(1.8)	(0.0)	(100)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24 (42.1)	21 (36.8)	45 <b>(78.9)</b>	9 (15.8)	3 (5.3)	0 (0.0)	57 (1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보조사업 정보 제공이 높게 나타남.
- 1순위로는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36.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36.2%)이 많았음.
  - 2순위로는 ‘보조사업의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22.4%)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22.4%)로 많았음
  -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29.3%),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24.1%), ‘보조사업의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21.6%) 순으로 나타남

<표 4-24>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의 투명성	보조금 교부 조건 (담보 등)을 간소화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보조금 사용실적 점검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	합계
1순위	21 <b>(36.2)</b>	12 (20.7)	21 <b>(36.2)</b>	2 (3.4)	1 (1.7)	0 (0.0)	0 (0.0)	1 (1.7)	58 (100)
2순위	7 (12.1)	13 (22.4)	13 (22.4)	12 (20.7)	4 (6.9)	6 (10.3)	0 (0.0)	3 (5.2)	58 (100)
1순위 +2순위	28 (24.1)	25 (21.6)	34 <b>(29.3)</b>	14 (12.1)	5 (4.3)	6 (5.2)	0 (0.0)	4 (3.4)	116 (1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

항에 관한 의견은 <표 4-25>에서 정보 제공 및 사업 신청, 선정 기준 절차, 지원 기준, 집행관리, 컨설팅 및 사후관리, 현장 상황, 신규사업 제안 등으로 정리하였음.

<표 4-25> 농식품보조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항목	의견
정보 제공 및 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과 관련해 각군 시청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했으면 좋겠고, 보조사업을 누가 받았는지 잘 실행됐는지도 모두 게시 했으면 함</li> <li>•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란 것 자체가 일반 농민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li> <li>•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음</li> <li>• 행정기관과 이통장이 사업내용을 문서발송이나 문자발송으로 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보조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li> <li>• 보조사업은 투명하게 정보 공유하고 농업인의 저마다의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주길 바람</li> <li>• <b>보조사업 대상자의 투명성,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b>,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보조금 사용실적 점검</li> <li>• 농업경영체가 어려운 가운데 꼭 필요한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행정의 간소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보 제공이나 서류의 과도한 요구는 농촌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라고 생각됨. 서류의 간소화 필요함</li> </ul>
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많은 보조사업이 농협이나 청년농 등에 집중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 청년은 거의 없고,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40~50대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청년농 육성도 좋으나 <b>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40~50대가 가장 많다는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b></li> <li>• 보조사업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산 지원 필요</li> <li>• 다수의 농업인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기보다 추진사업 방향의 이해성이 높거나 관련된 농업인에게 편중되어 일부만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보이며, 농업인들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을 따라가기 버거워하기도 함</li> <li>• 평등하고 공명하며 공정해야 함</li> </ul>
선정 (기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정에서 투명한 선정자 순위 공개가 필요함</b></li> <li>• 농가가 보조사업에 정확한 정보와 이해력이 떨어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농가에 불이익이 없으면 함</li> <li>• 사업 계획서를 통한 실질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여 능력에 따른 지원 필요</li> <li>• <b>심의를 할 때 선도농가 참여</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 능력이 되지 않는 곳이나 지원 농가 선정 해당 여부 중요. 지원금만 받아먹는다는 말이 없게 해야 함</li> <li>•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선정 필요(보조사업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완전 공개)</li> <li>• 법인에서 독농가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li> </ul>
지원 기준 (지원단가, 한도, 보조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 품목은 왜 이리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지요? 개인 금액 구입보다 20%정도만 높게 책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것임</li> <li>• <b>보조사업으로 구매하게 되면 시중 가격보다 무조건 비싸게 됨.</b> 이런 것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함</li> </ul>
집행 관리 감독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을 위한 것이 보조사업이고 이를 정말 효율적인 곳에 사용하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그나마도 1순위로 삭감되는 농업예산이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쓰이길 바람</li> <li>• 시설 지원의 경우는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엄격한 검토(운영주체가 관리 능력이 있는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지원인지)가 이루어져야 함</li> <li>• 시설 지원의 경우는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회계 관리 및 회계 감사를 지역민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공적 영역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li> <li>•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b>일률적인 집행보다는 차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간소화에 걸맞게 신용과 정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이 집행되길 바람</b></li> <li>•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은 물론 인수인계가 보다 철저하게 되었으면 함</li> <li>• <b>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농업인에게 쓰여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함</b></li> <li>•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장 실무를 아는 공무원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li> </ul>
컨설팅 및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들은 농사일 하나만으로도 바쁜 실정이므로 행정기관과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농민들이 <b>보조사업을 정말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이 보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음</b></li> <li>• 각 농가나 단체의 그동안의 실적과 열정 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서 각종 사업의 실행 여부와 실행계획 등을 농가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음</li> <li>• <b>예산 집행 이후에 지원금을 받은 곳의 운영을 관리하여 운영이 되지 않은 곳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필요.</b></li> <li>• 시설 지원의 경우는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b>전문가의 컨설팅이 일정 기간 이루어져야 하고,</b>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 점검(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b>사업능력이 부족함이 있으면</b></li> </ul>

<p>현장 의견, 현장 상황, 실태 등 기타</p>	<p>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함)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현장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많음.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보조사업을 만들면 좋겠고 이를 위해 농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를 바람</li> <li>• 공무원들은 본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음</li> <li>• 농민들 중에 정말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시간이 갈수록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더 많아질 것임</li> <li>• 전국적으로 한 가지 사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필요</li> <li>• 보조금 회계정리는 농업인의 관점서류가 아니라 행정기관 관점의 서류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음</li> <li>• 시대의 흐름에 반영된 정책이긴 하나 농업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보조금 지급된 사업수행까지는 가능한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보임</li> <li>• 각 작목마다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음</li> <li>• 지역 여건에 맞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역의 자율성을 위해 지역으로 예산을 이관했으면 함.</li> <li>•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 바람</li> <li>• 현실에 맞는 사업 운영 지침 필요. 과도한 절차나 서류를 단순화. 꼭 필요한 지원사업 발굴</li> </ul>
<p>신규 사업, 제도 개선 등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 농촌에는 인력이 없는데 농식품부에서 각 지역마다 외국인농업지원학원을 만들어 농업현장실습과 대한민국 선진농업교육을 시켜 농촌 인력 해소와 우리나라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면 좋겠음</li> <li>• 농가 일손부족 등의 현실에 맞게 보조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길 바람</li> <li>• 사업신청 공모제를 도입하고 실현가능하고 발전성 있는 사업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 필요</li> <li>•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조사업 지원 바람</li> <li>• 현재 대농과 기관과 접촉하는 농민단체들이 큰 사업을 제안하여 받는 사업자체를 효율성을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중소농들이 영농에 어려운 부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자체가 형평성이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임</li> <li>• 꼭 필요한 보조사업이면 확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하며 예산을 한정을 두지 말아야 함</li> <li>• 생산비용 변동분과 농산물 물가를 반영한 보조금의 결정 실제 농가에 보탬이 될 만한 적정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li> <li>• 같은 항목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li> <li>• 농식품보조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국내산 농산물판로 확장에 노력하는 농식품업체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람</li> <li>• 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하지 않은 소규모 영농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제</li> </ul>

	<p>도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보다도 노후되는 농촌에 인재가 부족하므로 인력을 대신 할 수 있는 장비가 시급함.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은 장비임</li> <li>• 전국을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들으면 <b>지역적인 편차도 심하여</b> 강원도와 타지역은 보조사업 자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음 수혜자는 여러 루트를 통해 많은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음. 지역적인 공정한 수혜가 되었으면 좋겠음</li> <li>• 농촌 현실이 갈수록 <b>고령화, 인구가 감소되며 한계마을이 늘어나는데도 농업예산은 줄어들어 소멸위기임.</b> 현재 전체 예산 5% 정도는 농촌 예산으로 써야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 젊은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올 것임</li> <li>• <b>보조사업을 줄이고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해서 대형농기계 및 필요한 사업에 지원</b></li> <li>• 과거와 다르게 <b>기후변화, 소비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b> 이에 농업도 뒤처지지 않고 발맞춰갈 수 있도록 이러한 <b>설문 및 홍보 기타의견을 통하여 미래 신규사업을 발굴</b>하고 동시에 <b>과거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b>하여 농업인에게 꼭 도움되는 사업이 집행되도록 당부</li> </ul>
--	--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2. 농업경영체 의견조사 결과

### 2.1. 조사 대상 및 방법

#### ○ 조사 목적

- 농식품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인 농업경영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수혜 실적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애로점과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농업경영체 대표 307명, 농촌융복합산업인 50명
  - ※ 농업경영체는 2015년 설립하여 2020년말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
  - ※ 농촌융복합산업인은 농식품부가 선정한 ‘이 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총 72명 중에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 조사 기간 : 농업경영체는 2021. 10. 5 ~ 10. 31. 농촌융복합산업인은 2021. 11. 24 ~ 12. 3.
- 조사 방법 : 설문지 우편조사, 이메일 병행

#### ○ 조사 내용 : 부록 의견조사표 참조

- 농식품보조사업 수혜 상황과 만족도, 보조사업 운영 상황 및 효과성, 부정수급의 발생원인과 대책, 보조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의견

### 2.2. 조사 결과

#### 2.2.1. 응답자 분포

- 농업경영체 응답자는 27명(영농조합 7, 농업회사 20), 농촌융복합산업인 응답자는 25명(영농조합 7, 농업회사 15, 기타 3)으로 합계 52명임.

- 농업경영체 조사대상은 한국기업데이터 2020년 농업법인 명부를 활용하였는데, 주소 불명으로 조사표가 우편 반송된 곳이 37개나 될 정도로 현황 정보가 부실함.
- 농업경영체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농식품부가 선정한 농촌융복합산업인 50명을 추가로 조사하였는데, 농촌융복합산업인은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의견조사에 대해서도 응답률이 50%로 높은 편임.
- 응답한 농업경영체의 주된 사업분야는 농업생산 29.6%, 농산물가공판매 70.4% 등으로 가공판매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농촌융복합산업인의 주된 사업분야는 농업생산 8.0%, 농산물가공판매 76.0%, 기타 16.0% 등으로 가공판매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음.

&lt;표 4-26&gt; 응답자의 직종 분포

단위: 명,(%)

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	기타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7 (25.9)	20 (74.1)	0 (0.0)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7 (28.0)	15 (60.0)	3 (12.0)	25 (100.0)
합계	14 (26.9)	35 ( <b>67.3</b> )	3 (5.8)	52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lt;표 4-27&gt; 응답자의 주사업 분포

단위: 명, (%)

구분	농업생산	농산물가공판매	농촌관광, 기타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8 (29.6)	19 (70.4)	0 (0)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2 (8.0)	19 (76.0)	4 (16.0)	25 (100.0)
합계	10 (19.2)	38 ( <b>73.1</b> )	4 (7.7)	52 (100.0)

&lt;표 4-28&gt; 응답자의 경력 분포

단위: 명, (%)

구분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4 (14.8)	12 (44.4)	3 (11.1)	1 (3.7)	7 (25.9)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3 (12.0)	5 (20.0)	1 (4.0)	4 (16.0)	12 (48.0)	25 (100.0)
합계	7 (13.5)	17 ( <b>32.7</b> )	4 (7.7)	5 (9.6)	19 ( <b>36.5</b> )	52 (100.0)



## 2.2.2. 농식품보조사업 지원 실적과 만족도

- 농식품보조사업의 지원 실적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대표 13명과 농촌융복합산업인 18명이 응답하였으며, 항목별 응답 내용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 내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58.1%), 보통(22.6%)로 응답하였음..
  - 보조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금액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58.1%), 보통(29.0%)로 응답하였음.
  -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절차(자금 교부, 정산 등)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58.1%), 보통(22.6%)으로 응답하였음.

<표 4-29>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0 (0)	0 (0)	4 (30.8)	6 (46.2)	3 (23.1)	13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0 (0)	3 (16.7)	12 (66.7)	3 (16.7)	18 (100.0)
합계	0 (0)	0 (0)	7 (22.6)	18 (58.1)	6 (19.4)	31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30>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금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0 (0)	2 (15.4)	5 (38.5)	6 (46.2)	0 (0)	13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1 (5.6)	4 (22.2)	12 (66.7)	1 (5.6)	18 (100.0)
합계	0 (0)	3 (9.7)	9 (29.0)	18 (58.1)	1 (3.2)	31 (100.0)

<표 4-3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1 (7.7)	1 (7.7)	3 (23.1)	7 (53.8)	1 (7.7)	13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1 (5.6)	4 (22.2)	11 (61.1)	2 (11.1)	18 (10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합계	1 (3.2)	2 (6.5)	7 (22.6)	18 (58.1)	3 (9.7)	31 (100.0)

### 2.2.3.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 시·군에서 수행하는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을 확보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34.6%), 보통(32.7%)으로 응답하였음.
  -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집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40.4%), 그렇다(34.6%)으로 응답하였음.
  - 시·군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55.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57.7%)로 많이 응답하였음.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나 농기자재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44.2%), 보통(23.1%)으로 응답하였음.

<표 4-32>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1 (3.7)	7 (25.9)	10 (37.0)	9 (33.3)	0 (0)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8 (32.0)	7 (28.0)	9 (36.0)	1 (4.0)	25 (100.0)
합계	1 (1.9)	15 (28.8)	17 (32.7)	18 (34.6)	1 (1.9)	52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33>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과성 있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1 (3.7)	7 (25.9)	11 (40.7)	8 (29.6)	0 (0)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4 (16.0)	10 (40.0)	10 (40.0)	1 (4.0)	25 (100.0)
합계	1 (1.9)	11 (21.2)	21 ( <b>40.4</b> )	18 (34.6)	1 (1.9)	52 (100.0)

<표 4-34>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1 (3.7)	4 (14.8)	9 (33.3)	12 (44.4)	1 (3.7)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1 (4.0)	6 (24.0)	17 (68.0)	1 (4.0)	25 (100.0)
합계	1 (1.9)	5 (9.6)	15 (28.8)	29 ( <b>55.8</b> )	2 (3.8)	52 (100.0)

<표 4-35>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1 (3.7)	2 (7.4)	9 (33.3)	14 (51.9)	1 (3.7)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1 (4.0)	3 (12.0)	16 (64.0)	5 (20.0)	25 (100.0)
합계	1 (1.9)	3 (5.8)	12 (23.1)	30 ( <b>57.7</b> )	6 (11.5)	52 (100.0)

<표 4-36>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2 (7.4)	6 (22.2)	8 (29.6)	9 (33.3)	2 (7.4)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2 (8.0)	4 (16.0)	14 (56.0)	5 (20.0)	25 (100.0)
합계	2 (3.8)	8 (15.4)	12 (23.1)	23 ( <b>44.2</b> )	7 (13.5)	52 (100.0)

- 농촌융복합산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원인 중 어떤 원인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인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를 보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다수이고 원인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영향이 심각한 편이라는 사항으로,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효과 저하(32.0%),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32.0%),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32.0%) 등으로 나타남.
  - 영향이 보통이라는 응답은,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56.0%),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자 선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52.0%),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효과 저하(44.0%),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 감소(36.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영향이 적다는 사항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36.0%),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32.0%)으로 나타남.

<표 4-37>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비효율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보조금 비효율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한편	보통	영향적음	영향없음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 효과가 저하	4 (16.0)	8 (32.0)	9 (36.0)	3 (12.0)	1 (4.0)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대행 또는 중개 등의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함	2 (8.0)	6 (24.0)	9 (36.0)	5 (20.0)	3 (12.0)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1	7	11	3	3

농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 저하 (확실적 기준, 융통성 부족)	(4.0)	(28.0)	<b>(44.0)</b>	(12.0)	(12.0)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자 선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1 (4.0)	2 (8.0)	13 <b>(52.0)</b>	6 (24.0)	3 (12.0)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0 (0)	8 <b>(32.0)</b>	14 <b>(56.0)</b>	2 (8.0)	1 (4.0)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	1 (4.0)	8 <b>(32.0)</b>	7 (28.0)	8 <b>(32.0)</b>	1 (4.0)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	1 (4.0)	3 (12.0)	8 <b>(32.0)</b>	9 <b>(36.0)</b>	4 (16.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촌융복합산업인을 대상으로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확실적 사업방식 한계 : 행정에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음. 농산업의 성공은 차별성·희소성·전문성·연계성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방식은 관리 편리성과 사업자 이익을 추구함.
  - 조달청 품목 및 단가 제약 : 경영체 필요 품목 및 시설을 제작해야 할 경우에도 조달청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구입이 불가하며, 건축 및 기계의 입찰로 인한 단가 상승과 생산자가 원하는 맞춤형 기계의 제작이 어렵고, 보조 기준에 맞춰 구입해야 하므로 사업 효과성 저하의 원인이 됨.
  - 경상보조 끼워넣는 문제 :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자본보조에 일부 경상보조(컨설팅, 생산자지원 등)를 끼워넣고 있는데 의도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집행의 자율성 부여 :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후에 상황 변화 등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함.
  - 성장 경영체에 대한 후속지원 : 1차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단계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 2.2.4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의 발생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44.2%)로 나타났다.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40.4%)로 나타났다.

<표 4-38>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2 (7.4)	9 (33.3)	8 (29.6)	7 (25.9)	1 (3.7)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2 (8.0)	14 (56.0)	6 (24.0)	3 (12.0)	0 (0)	25 (100.0)
합계	4 (7.7)	23 (44.2)	14 (26.9)	10 (19.2)	1 (1.9)	52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39>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 또는 근절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1 (3.7)	5 (18.5)	11 (40.7)	8 (29.6)	2 (7.4)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0 (0)	1 (4.0)	8 (32.0)	13 (52.0)	3 (12.0)	25 (100.0)
합계	1 (1.9)	6 (11.5)	19 (36.5)	21 (40.4)	5 (9.6)	52 (100.0)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부패 항목과 오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모든 항목에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으며, 농촌융복합산업인들은 공모나 오류 등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부패에 대해서, 농업경영체 대표들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공모(44.4%), 임

- 의처리(37.0%), 허위(37.0%) 등이고, 농촌융복합산업인들은 공모에 그렇지 않다(40.0%), 임의처리에 보통(40.0%), 허위에 보통(40.0%)으로 나타남.
- 오류에 대해서, 농업경영체 대표들은 증빙미비에 보통(40.7%), 중복처리에 전혀 아니다(37.0%), 업무착오에 보통(37.0%), 관리미흡에 보통(40.7%), 집행오류에 보통(33.3%) 등이고, 농촌융복합산업인들은 증빙미비에 그렇지 않다(44.0%), 중복처리에 그렇지않다(37.0%), 업무착오에는 보통(32.0%), 관리미흡에 보통(40.0%), 집행오류에 보통(44.0%) 등으로 나타남.

<표 4-40>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부 패	공모: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모	3.7	18.5	<b>44.4</b>	14.8	18.5
		4.0	12.0	32.0	<b>40.0</b>	12.0
	임의처리: 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	7.4	11.1	<b>37.0</b>	33.3	11.1
		4.0	4.0	<b>40.0</b>	36.0	16.0
허위: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	7.4	22.2	<b>37.0</b>	14.8	18.5	
	8.0	8.0	<b>40.0</b>	32.0	12.0	
오 류	증빙미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0	11.1	<b>40.7</b>	22.2	25.9
		4.0	0.0	32.0	<b>44.0</b>	20.0
	중복처리: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0	3.7	33.3	25.9	<b>37.0</b>
		0.0	4.0	24.0	<b>48.0</b>	24.0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3.7	25.9	<b>37.0</b>	14.8	18.5
		4.0	20.0	<b>32.0</b>	28.0	16.0
	관리미흡: 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	3.7	14.8	<b>40.7</b>	18.5	22.2
4.0		12.0	<b>40.0</b>	28.0	16.0	
집행오류: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3.7	14.8	<b>33.3</b>	29.6	18.5	
	0.0	4.0	<b>44.0</b>	24.0	28.0	

주 : 응답 결과의 상단은 농업경영체 대표, 하단은 농촌융복합산업인의 수치.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촌융복합산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정수급의 여러 유형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영향이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영향이 없다는 사항으로는,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않은 농기자재를 허위로 속여서 청구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36.0%)임.
- 영향이 적다는 사항으로는, 농업인이 단독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40.0%), 보조사업 관련 업체가 단독으로 주도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보조금을 업체가 챙김(40.0%), 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외 사용한 경우(40.0%), 특정지위를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업부실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사업목적외 사용한 경우(40.0%)
- 영향이 보통이라는 사항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43.8%),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세부요건(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한데,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32.0%) 등임.

<표 4-41>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인별 심각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보조금 부정수급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한 편	보통	영향 적음	영향 없음
농업인이 단독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b>보조금을 과다 신청</b> 하여 수령	0 (0)	2 (8.0)	9 (36.0)	10 <b>(40.0)</b>	4 (16.0)
보조사업 관련 <b>업체와 농업인이 공모</b> 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b>보조금을 상호 배분</b>	0 (0)	4 (16.0)	8 (32.0)	10 <b>(40.0)</b>	3 (12.0)



보조사업 관련 <b>업체가 단독으로 주도</b> 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b>보조금을 업체가 챙김</b>	0 (0)	3 (12.0)	9 (36.0)	10 <b>(40.0)</b>	3 (12.0)
사업대상자 <b>기본요건</b> (농업경영체, 직접경작, 소득기준 등)을 <b>갖추지 못한 자가 요건 서류를 조작</b> 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0 (0)	3 (12.0)	6 (24.0)	9 <b>(36.0)</b>	7 (28.0)
사업대상자 <b>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세부요건</b> (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한데, <b>요건서류를 조작</b>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0 (0)	4 (16.0)	8 <b>(32.0)</b>	6 (24.0)	7 (28.0)
<b>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b> 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외 사용한 경우	0 (0)	6 (24.0)	4 (16.0)	10 <b>(40.0)</b>	5 (20.0)
구입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b>농기자재를 허위 사진·서류 등으로 속여서 청구</b> 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0 (0)	1 (4.0)	7 (28.0)	8 (32.0)	9 <b>(36.0)</b>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b>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b> 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0)	1 (4.0)	11 <b>(44.0)</b>	8 (32.0)	5 (2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촌융복합산업인을 대상으로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체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자격 심사 강화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자격여부 판단을 강화하고, 실사를 통해 허위 사진 서류 등을 판단해야 함. 특히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격 및 신청 평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함. 신청인이나 신청 업체를 객관적 지표(재무제표, 고용인원, 연간판매량)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행기관의 점검과 지도 : 부정수급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후로 계속된 관계기관의 점검과 지도로 개선될 수 있음.

### 2.2.5. 농식품보조사업 정책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제도가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촌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40.4%), 보통(38.5%)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가 5년 전과 비교하여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농업경영체대표	4 (14.8)	2 (7.4)	14 (51.9)	7 (25.9)	0 (0)	27 (100.0)
농촌융복합산업인	1 (4.0)	1(4.0)	6 (24.0)	14 (56.0)	3 (12.0)	25 (100.0)
합계	5 (9.6)	3 (5.8)	20 (38.5)	21 (40.4)	3 (5.8)	52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사업 단계별 중요도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매우필요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임. 항목별로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계획 단계에서는, 농업경영체 대표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매우 필요 63.0%),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보통 48.1%) 등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인은 각각 매우 필요(52%)와 필요(32%)로 응답함.
  - 선정 단계에서는, 농업경영체 대표들이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매우 필요 44.4%),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매우필요 63.0%),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매우필요 51.9%) 등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인은 각 항목마다 48% 비율로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집행 단계에서는, 농업경영체 대표들이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간소화해야(매우 필요 48.1%),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해야(매우 필요 51.9%),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필요 44.4%),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필요 48.1%),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필

- 요 44.4%) 등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인은 각 항목마다 40~48% 수준으로 비율 차이는 있으나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매우 필요 33.3%),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필요 44.4%) 등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인은 각 항목마다 40%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4-43>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

사업추진 단계 및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63.0	29.6	7.4	0.0	0.0
		52.0	36.0	8.0	0.0	4.0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18.5	25.9	48.1	7.4	0
선정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44.4	40.7	11.1	3.7	0.0
		48.0	40.0	8.0	0.0	4.0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63.0	29.6	7.4	0.0	0.0
집행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48.0	28.0	16.0	4.0	4.0
		51.9	29.6	18.5	0.0	0.0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해야	48.0	40.0	8.0	0.0	4.0
사후관리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해야	48.1	33.3	14.8	3.7	0.0
		44.0	20.0	32.0	0.0	4.0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51.9	29.6	18.5	0.0	0.0
		48.0	28.0	16.0	4.0	4.0
		29.6	44.4	25.9	0.0	0.0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40.0	32.0	20.0	4.0	4.0	
	25.9	48.1	25.9	0.0	0.0	
	40.0	24.0	28.0	4.0	4.0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	25.9	44.4	29.6	0.0	0.0	
	40.0	24.0	28.0	4.0	4.0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37.0	29.6	33.3	0.0	0.0
40.0		24.0	32.0	0.0	4.0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40.7	44.4	14.8	0.0	0.0	
	44.0	24.0	28.0	0.0	4.0	

주 : 응답 결과의 상단은 농업경영체 대표, 하단은 농촌융복합산업인의 수치.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1순위에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농업경영체 대표 33.3%, 농촌융복합산업인 32.0%)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는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농업경영체 대표 25.9%, 농촌융복합산업인 28.0%)로 나타났음.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가중합계한 결과에서는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가 28% 수준으로 높게 집계되었음.

<표 4-44>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

	1순위	2순위	가중합계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33.3	14.8	27.2
	32.0	8.0	24.0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29.6	25.9	28.4
	28.0	28.0	28.0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11.1	22.2	14.8
	20.0	16.0	18.7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	11.1	18.5	13.6
	16.0	28.0	20.0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11.1	11.1	11.1
	4.0	8.0	5.3
보조금 사용실적 점검	0.0	0.0	0.0
	0.0	0.0	0.0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00.0	3.7	1.2
	0.0	4.0	1.3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	3.7	3.7	3.7
	0.0	8.0	2.7

주 : 가중 합계는 2순위 백분율에 50% 가중치 적용

응답 결과의 상단은 농업경영체 대표, 하단은 농촌융복합산업인의 수치.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끝으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사업계획>

- 농촌현장 여건에 맞게 공정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 건물·시설투자비의 보조비율을 높여주면 좋겠음(현재 건물·시설투자비의 경우에 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 안내 및 선정>

-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지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이 필요함.
- 경영발전 단계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함. 초기 창업자에게는 소규모 지원이나 교육 지원이 선행되고, 자립적으로 일정부분 역량이 갖춰졌을 때 시설이나 제조장비 등의 지원해야 함.

#### <집행관리>

- 사업자 선정부터 엄격하게 선정하고 시설지원에 맞게 운영자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함.
- 보조사업을 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나라장터), 물품구매 또는 설치기간을 줄여 신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변경시 자치단체장, 광역, 농식품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많으므로, 더 좋은 설비나 시공업체가 있어도 변경하기 어려워 운영상 실효성이 떨어짐.
-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건물은 15년(기계 5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설정등기함으로써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제도적 강제성을 완화해야 함.

#### <정보지원시스템>

- 보조사업이 시행되기 전 해당업체들에게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e-메일)을 보내고 문의 확인하도록 하면 좋겠음.
- 농업보조사업에 관한 안내나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필요함.

###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 3.1.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목적

- 농식품보조사업의 일선 추진주체인 시·군 농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부터 사후관리까지 집행관리 전반에 대한 추진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시·군 농정담당자(팀장급) 총 143명
- 조사 기간 : 2021년 10월 5일 ~ 10월 31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우편조사, 이메일 병행

○ 조사 내용 : 부록 의견조사표 참조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상황 및 효과성,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의 발생원인과 대책, 보조사업 집행 실태와 애로사항,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 3.2. 조사 결과

##### 3.2.1. 응답자 분포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의견조사의 응답자는 총 65명으로 시청 26명, 군청 37명임.
- 도별로 보면, 경기 7명, 강원 5명, 충북 7명, 충남 10명, 전북 3명, 전남 12명, 경북 15명, 경남 4명, 제주 1명 등임.

&lt;표 4-45&gt; 응답자의 도별·시군별 분포

단위: 명 (%)

	대상자	응답자 (비율)	시청	군청
경기	25	8 (12.3)	7	1
강원	14	5 (7.7)	2	3
충북	11	7 (10.8)	1	6
충남	15	10 (15.4)	4	5
전북	14	3 (4.6)	3	0
전남	22	12 (18.5)	3	8
경북	21	15 (23.1)	5	10
경남	19	4 (6.2)	2	2
제주	2	1 (1.5)	1	0
합계	143	65 (100.0)	26	39

주 : ( ) 안은 응답자 백분율, 시군 분포 비율. 시군별로 각 1명씩 응답 응답한 지역이 3곳임.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3.2.2.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견

- 설문 응답자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농정계장이므로 대체로 긍정적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감안하고 조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시·군에서 수행하는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객관식 5단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역시 응답자가 담당하는 업무이기도하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관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나 미흡하다는 응답도 많았음.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56.9%), 매우 그렇다(26.2%)로 나타났음. 보통 16.9%임
  - 농식품보조사업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58.5%), 매우 그렇다(33.8%)로 나타났음. 보통 6.2%, 그렇지 않다 1.5%임
  -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64.6%), 매우 그렇다(24.6%)로 나타났음. 보통 7.7%, 그렇지않다 3.1%

- 농식품보조사업 지원시설·농기자재의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49.2%), 보통(26.2%)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7.7%임.

<표 4-46>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0	0	11	37	17	65
백분율(%)	0	0	16.9	<b>56.9</b>	26.2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47>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0	1	4	38	22	65
백분율(%)	0	1.5	6.2	<b>58.5</b>	33.8	100.0

<표 4-48>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0	2	5	42	16	65
백분율(%)	0	3.1	7.7	<b>64.6</b>	24.6	100.0

<표 4-49> 농식품보조사업 지원시설·농기자재의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0	5	17	32	11	65
백분율(%)	0	7.7	<b>26.2</b>	<b>49.2</b>	16.9	100.0

- 다음으로,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보수적인 응답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43.1%)에 이어 보통(35.4%)이라는 응답도 많았으나, 발생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도 13.8%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66.2%)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통 26.2%, 그렇지 않다 3.1%로 나타남.

<표 4-50>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동의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5	28	23	8	1	65
백분율(%)	7.7	<b>43.1</b>	<b>35.4</b>	12.3	1.5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51>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0	2	16	39	3	60
백분율(%)	0	3.1	26.2	<b>66.2</b>	4.6	100.0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부패 항목과 오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으로 나타났으나, ‘허위’ (가격부풀리기, 자부담대납, 허위처리)는 우려 된다는 응답이 2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패에 대해서는, 공모(내부 공모, 외부 공모)에 그렇지 않다(43.1%), 임의 처리(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에 그렇지 않다(49.2%), 허위(가격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에는 그렇다(29.2%) 등으로 나타났음.
- 오류에 대해서는,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에 그렇지 않다(43.8%), 중복처리(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에 매우 그렇지 않다(37.5%), 업무착오(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에 그렇지 않다(47.7%),

관리미흡(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에 그렇지 않다(45.3%), 집행오류(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에 그렇지 않다(45.3%) 등으로 나타났다.

<표 4-52>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부 패	공모: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모	0 (0)	8 (12.3)	12 (18.5)	28 <b>(43.1)</b>	17 (26.2)
	임의처리: 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	1 (1.5)	7 (10.8)	12 (18.5)	32 <b>(49.2)</b>	13 (20.0)
	허위: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	0 (0)	19 <b>(29.2)</b>	14 (21.5)	21 (32.3)	11 (16.9)
오 류	증빙미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0 (0)	2 (3.1)	12 (18.8)	28 <b>(43.8)</b>	22 (34.4)
	중복처리: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0 (0)	4 (6.3)	12 (18.8)	24 (37.5)	24 <b>(37.5)</b>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0 (0)	6 (9.2)	20 (30.8)	31 <b>(47.7)</b>	8 (12.3)
	관리미흡: 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	0 (0)	7 (10.9)	21 (32.8)	29 <b>(45.3)</b>	7 (10.9)
	집행오류: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0 (0)	3 (4.7)	13 (20.3)	29 <b>(45.3)</b>	19 (29.7)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크지 않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이 수긍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로 중앙부처의 관리지침이 애매하고 혼란스러움 41.5%(그렇다 32.3%, 매우그렇다 9.2%),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할당되어서 39.1%(그렇다 29.7%, 매우그렇다 9.4%) 등으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배정 시기가 불안정하므로 32.3%(그렇다 20.0%, 매우그렇다 12.3%), 재량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까봐 30.8%(그렇다 26.2%, 매우그렇다 4.6%) 등으로 나타남.
  - 그밖에 민원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 29.2%(그렇다 20.0%, 매우그렇다 9.2%)로 나타남.

&lt;표 4-53&gt;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불용액 발생 사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중앙부처의 관리지침이 애매하고 혼란스러움	6 (9.2)	21 <b>(32.3)</b>	19 (29.2)	17 (26.2)	2 (3.1)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할당되어서	6 (9.4)	19 <b>(29.7)</b>	14 (21.9)	15 (23.4)	10 (15.6)
중앙정부로부터 자금배정 시기가 불안정하므로	8 (12.3)	13 (20.0)	18 (27.7)	20 <b>(30.8)</b>	6 (9.2)
제량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까봐	3 (4.6)	17 (26.2)	21 <b>(32.3)</b>	19 (29.2)	5 (7.7)
민원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	6 (9.2)	13 (20.0)	22 <b>(33.8)</b>	22 <b>(33.8)</b>	2 (3.1)
국고보조금은 받았지만 도비가 적기에 배정되지 않아서	5 (7.7)	4 (6.2)	17 (26.2)	33 <b>(50.8)</b>	6 (9.2)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②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 ③ 보조사업 정보제공, ④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순서로 응답함.

&lt;표 4-54&gt;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합계(%)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39 <b>(60.9)</b>	10 (15.9)	<b>45.9</b>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	4 ( 6.3)	17 <b>(27.0)</b>	<b>13.2</b>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7 (10.9)	8 (12.7)	11.5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8 (12.5)	4 ( 6.3)	10.4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0 ( 0)	6 ( 9.5)	3.2
보조금 사용실적 점검	3 ( 5.1)	6 ( 9.5)	6.3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1 ( 1.6)	2 ( 3.1)	2.1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	2 ( 3.2)	10 (15.9)	7.4

주 : 가중 합계는 2순위 백분율을 50% 가중치 적용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3.2.3.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 먼저,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이 투입될 경우에 직접 효과<sup>8</sup>를 발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5% 이상이라는 응답이 52.3%로 나타났으며, 80~85%라고 응답한 비율은 24.6%이며, 80%미만이라는 응답도 23.1%로 나타남.

<표 4-55>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투입시 직접효과 발휘 수준에 대한 의견

구분	95% 이상	90%이상 ~ 95% 미만	85%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80% 미만	전체
빈도	5	9	20	16	15	65
백분율(%)	7.7	13.8	30.8	24.6	23.1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원인 중 어떤 원인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인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를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보면,
- ①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효과 저하 43.9%(심각 38.5%, 매우심각 15.4%),
  - ②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필요한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 저하 40.6%(심각 32.8%, 매우심각 7.8%),
  - ③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 32.4%(심각 26.2%, 매우심각 6.2%),
  - ④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29.2%(심각 20.0%, 매우심각 9.2%),

8 부정적 효과의 예로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상승, 농협, 조달청 등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과다 지급,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과잉 투자, 보조사업 수행능력 부족한 자 선정, 보조사업 추진시 기술지도 미흡, 보조사업 종료후 사후지도 미흡,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 활용도 저하 등을 예시함.

- ⑤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자 선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15.4%(심각 10.8%, 매우심각 4.6%),
- ⑥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 감소 13.9%(심각 10.8%, 매우심각 3.1%),
- ⑦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 4.7%(심각 3.1%, 매우심각 1.6%)으로 조사됨.

<표 4-56>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비효율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보조금 비효율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 한편	보통	영향 적음	영향 없음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 효과가 저하	10 (15.4)	25 <b>(38.5)</b>	23 <b>(35.4)</b>	6 (9.2)	1 (1.5)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 저하 (획일적 기준, 융통성 부족)	5 (7.8)	21 <b>(32.8)</b>	25 <b>(39.1)</b>	12 (18.8)	1 (1.6)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	4 (6.2)	17 (26.2)	28 <b>(43.1)</b>	16 (24.6)	0 (0)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6 (9.2)	13 (20.0)	29 <b>(44.6)</b>	17 (26.2)	0 (0)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자 선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3 (4.6)	7 (10.8)	28 <b>(43.1)</b>	22 (33.8)	5 (7.7)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대행 또는 중개 등의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함	2 (3.1)	7 (10.8)	36 <b>(55.4)</b>	14 (21.5)	6 (9.2)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	1 (1.6)	2 (3.1)	26 <b>(40.6)</b>	32 <b>(50.0)</b>	3 (4.7)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조사하였는데, 응답 결과에서 빈도가 많은 내용을 우선순위로 3개씩만 <표 4-13>과 같이 정리하였음.
- 전체적으로 개괄하면, 보조사업 기준이 획일적이므로 맞춤형 또는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며, 시·군의 관리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 확대 및 컨설팅 전담기관 육성을 제시하였음.

<표 4-57>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 저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

보조금 비효율 요인	발생 원인	예방(경감) 대책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 효과가 저하	①조달청 가격 단가가 높음(일괄적으로 물가정보지 준용) ②공급업체의 요구 가격에 맞춰 단가를 책정하는 경향 ③업체와 보조사업자가 공모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	①조달청 등록시 시장조사 실시, 실제 판매가격으로 책정 ②보조사업 시행시 한도액 상한 고시, 가격정찰제 적용 ③표준(기준)가격 지표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장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하게 되어 보조금 효과 저하(획일적 기준, 융통성 부족)	①획일적 기준, 필요 이상의 규격 기준, 맞춤형 지원 부족 ②과거 기준 또는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못함 ③사업자 공급기준이 수요자인 농가와 맞지 않음	①사업지침의 규격 및 기준을 최소화 ②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부여, 지자체별로 지침 반영 ③사업비 범위에서 농가가 자율 구입토록 지침에 반영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	①시군 농정에 전문인력 부족, 순환보직, 업무과중 등 ②지방에 농업관련 전문인력 부족 ③농촌지역 전반의 기술지원, 컨설팅 인프라 부족	①농식품분야에 전문인력 배치, 사업담당자 교육 확대 ②보조사업 전담가능한 민간컨설팅기관 육성 ③권역별 기술지원,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보조사업 추진 중이나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①사업관리 인력 부족, 사후관리 정보 및 책임 미흡 ②사업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관리 부실 ③보조사업비에 컨설팅비용 미포함	①기술지도 전문기관 육성, 단체 등에 위탁 관리제도 도입 ②정보제공, 기술지도 등 공신력 있는 지원체제 구축 ③대규모사업(10억 이상)에 컨설팅사업비 포함토록 조치
보조사업 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부적합자가 선정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①보조사업 선정시 부실 검증,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 ②농가의 보조사업 수행능력 부족 ③사업신청 부족시에 부적격자에게도 참여 권유	①명확한 선정 기준 정립, 사업신청자 검토 철저 ②보조사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③목적사업 적격자가 없을 경우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침 수정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대행 또는 중개 등의	①절차상 관여하는 단체(농협 등)가 많아 수수료 발생 ②회계 정산서류가 많아 대행	①보조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 ②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부담 경감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함	업체 위탁은 불가피 ③중개수수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이 없음	③위탁업무 대행수수료의 정액제 도입, 수수료 인하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	①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률적 사업 시행 ②보조사업 시행후 여건 변화에 따른 활용 저조 ③보조금 취득재산에 대한 관리규정 미흡	①보조사업 결정시에 충분한 현장 적용성 검토 필요 ②업그레이드 지원, 용도변경 기간 단축 등 검토 ③기계, 시설, 장비 등의 공동세부기준 마련 필요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법인 중심의 사업 추진 문제 : 농식품보조사업의 주체가 단체(법인, 공동체)로 추진되므로 이 과정에서 갈등과 시비로 사업의 책임성과 없이 효과를 못내고, 또한 다수의 사업이 표준모델이 없어 제각기 사업추진으로 공신력이 없음. 따라서 가능한 공동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보다는 개인(농업인)의 공모를 통해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 지역마다 농업 여건이나 소비 여건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보조사업지침으로 인해 사업효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서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사업의 계획 평가 등에 외부 의존 문제 : 농식품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선정 절차가 복잡하여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관련직원들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평가를 외부전문가(예: 중앙계획단)에 일임함에 따라 평가의견이 현장여건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됨.
  - 농식품부의 사업 할당식 추진 문제 : 농식품부가 일부단체나 지역의견만

단시간에 수렴하여 정책입안함으로써, 대다수 농업인에게는 별로 실효성 없는 정책사업을 지자체 단위로 사업량 할당 방식으로 추진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음.

### 3.2.4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으로, 시·군에서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이 교부될 경우에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적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상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라는 질문에 대하여 5%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8%, 5~10% 29.7%, 10~20% 1.6%로 나타남.

<표 4-58> 농식품보조사업 예산 100 교부시 부정수급 발생 수준에 대한 의견

구분	1% 미만	1%이상 ~ 5% 미만	5%이상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전체
빈도	20	24	19	1	0	64
백분율(%)	31.3	37.5	29.7	1.6	0	1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정수급의 여러 유형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영향이 적다고 인식하였으며, 일부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10%이상인 사항은 ① 보조사업 관련 업체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상호 배분 12.3%(심각 10.8%, 매우심각 1.5%),
  -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5~10%인 사항은 ② 보조사업 관련 업체가 단독으로 주도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시설장비·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



- 하고 보조금을 업체가 챙김 9.2%(심각 9.2%),
- ③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세부요건(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한데,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6.1%(심각 4.6%, 매우심각 1.5%)로 조사됨.
-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5% 미만인 것으로는 ④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4.7%, 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후 허위 정산 4.7%, ⑥ 농업인이 시설장비, 농자재 가격,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 과다 수령 4.7%, ⑦ 사업대상자 기본요건 미달자가 요건서류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 3.1%, ⑧ 구입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기자재를 허위 사진·서류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허위 수령 3.1%로 조사됨.

<표 4-59>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인별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보조금 부정수급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한 편	보통	영향 적음	영향 없음
보조사업 관련 업체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상호 배분	1 (1.5)	7 (10.8)	25 <b>(38.5)</b>	21 (32.3)	11 (16.9)
보조사업 관련 업체가 단독으로 주도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업체가 챙김	0 (0)	6 (9.2)	20 (30.8)	32 <b>(49.2)</b>	7 (10.8)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세부요건(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한데,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1 (1.5)	3 (4.6)	18 (27.7)	25 <b>(38.5)</b>	18 (27.7)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0)	3 (4.7)	21 (32.8)	28 <b>(43.8)</b>	12 (18.8)
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 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외 사용한 경우	1 (1.6)	2 (3.1)	17 (26.6)	17 (26.6)	27 <b>(42.2)</b>

농업인이 단독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	0 (0)	3 (4.7)	16 (25.0)	31 <b>(48.4)</b>	14 (21.9)
사업대상자 기본요건(농업경영체, 직접경작, 소득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요건 서류를 조작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0 (0)	2 (3.1)	19 (29.2)	27 <b>(41.5)</b>	17 (26.2)
구입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기자재를 허위 사진·서류 등으로 속여서 청구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0 (0)	2 (3.1)	16 (25.0)	15 (23.4)	31 <b>(48.4)</b>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조사하였는데, 응답 결과에서 빈도가 많은 내용을 우선순위로 3개씩만 <표 4-16>과 같이 정리하였음.

-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농기자재, 시설 등의 보조가격 기준이 필요하고,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기준이 확실적이므로 맞춤형 또는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며, 시·군의 관리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 확대 및 컨설팅 전담기관 육성을 제시하였음.

<표 4-60>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	발생 원인	예방(경감) 대책
보조사업 관련 업체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상호 배분	①지자체에서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농기계, 장비 등 시장가격을 확일 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③실제 소요 수량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사례	①정부 차원의 보조금 감시센터 운영 검토 ②정책 반영시 생산원가조사 필요, 보조사업 단가 인하 조치 ③부정 적발시의 벌칙 강화
농업인이 단독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	①농기계, 시설장비의 가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②농가 자부담 비율이 낮기 때문 ③사업대상자의 안일한 생각	①공시기준 가격, 표준단가 확인자료 등의 공유 필요 ②자부담 비율의 상향 조정 ③보조사업에 대한 교육 필요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세부요건(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	①서류 심사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오류 발생 소지 ②일선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①영농경력 등 기준 강화 및 현장 심사로 보완하도록 의무화 ②부정수급시 지원제한 또는 형

한데, <b>요건서류를 조작</b>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이 어려운 실정을 악용 ③신청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 미흡	사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③부적격 사실 확인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b>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b> 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①중요 시설장비의 목적의 사용 확인에 현실적인 한계 ②보조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욕심의 문제 ③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①정기적인 사후관리 필요, 예산과 인력 확충 ②보조사업 목적의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 강화 ③상업적 장기임대는 제재, 현실적인 단기임대는 허용
<b>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b> 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b>보조금을 부정 수령</b> 하거나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①신규 업무담당자인 경우에 상급자나 외부 청탁의 가능성 ②부정당한 사업자 또는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③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복성 압력이 될 수 있음	①직원에게 청렴교육 이수 및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 실시 ②보조금 위반자에 대한 정보확인시스템 구축 ③사업자 변경 요구시 강력 대응 조치 마련
보조사업 <b>관련 업체가 단독으로 주도</b> 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b>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b>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b>보조금을 업체가 챙김</b>	①농기계, 자재 등의 소요 수량 및 가격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족 ②시군 보조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③관련업체가 사업 내용을 농업인에게 알려주거나 자부담 대납하는 편법 사용	①농자재 표준단가의 확인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보급 ②사업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농자재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③사전 자부담 확인제도 도입(자부담과 보조금 동시 입금)
사업대상자 <b>기본요건</b> (농업경영체, 직접경작, 소득기준 등)을 <b>갖추지 못한 자가 요건 서류를 조작</b> 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①사업대상자의 기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미흡 ②자료 부실 등으로 부적격차선장 가능성 ③부적격차 선정에 대한 처벌 미흡	①농업인 통합정보망을 통한 행정데이터 일원화 필요 ②객관화된 자료를 근거로 심사 선정하는 시스템 구축 ③부적격 확인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
구입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b>농기자재를 허위 사진 등으로 속여서 청구</b> 하거나, <b>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b>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①허위 사실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현장점검 확인에 한계 ②소모성 농자재의 경우에 청구 시기의 계절적 괴리 발생 ③기구입 농기계를 이용하여 보조금 수령	①보조사업 사후관리 인력 확충 및 실무경험의 현장행정 강화 ②소모성 농자재에 대해서는 농협 등에 위탁하여 점검 가능 ③허위 사실 적발시 보조금 환수 등 처벌 강화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시·군 행정의 실무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 농식품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수급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도 제고됨.
  - 보조사업자 선정시 농업인의 의지 확인 :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은 사업에 대한 열정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욕심에 따른 것이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대상자가 진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 및 실천 의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이 필요함.
  - 시·군 행정의 실무 능력 강화 : 보조사업대상자가 마음먹고 부정수급한다면 담당자가 치밀하게 조사하지 않는 한 밝히기 어려운 실정임.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경력자 멘토 등 실무자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철저 등으로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음.
  
- 끝으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 중앙정부의 성과지향적인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탈피
    - 지자체마다 많은 보조사업이 다르게 시행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
    - 지역의 차별화된 여건과 특화품목 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의 확충
  - <집행관리>
    - 농식품보조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신규 단체나 농업인이 정부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사업비, 사업량) 축소
    - 자부담 능력이나 운영실적(3년 이상)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는 생산기반, 원료 확보, 사업 확장성, 제품판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

- 보조사업 신청서류의 간소화 및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절차도 간소화 필요

<시·군담당자 역량>

- 보조사업담당자 인사 또는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교육 또는 지침전달교육을 수시로 실시
-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지원 필요

<정보지원시스템>

- 농업인보조사업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와 연계한 농식품보조사업지원시스템(입력·출력이 간단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관리인력 및 업무현황 조사결과<sup>9</sup>

### 4.1. 조사 개요

- 목적 : 농식품보조사업 시행기관의 사업관리 여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조사 대상 : 시·도를 통해 조사표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10개 시·군
- 조사 내용
  - 농식품보조사업 담당 인력, 업무량 등 현황 및 변화
  - 농식품보조사업의 적절한 사업관리에 애로사항
  - 농식품보조사업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의견 등

### 4.2. 조사 결과

#### 4.2.1. 농정 담당인력 및 업무량 현황

##### (1) 최근 5년 동향

- 지자체의 농식품정책 담당인력에 비하여 관리하는 사업 수나 민원업무가 크게 늘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음.
  - 시·군 당 농식품정책 담당 실무인력은 5년 전 20.1명에서 현재 21.9명으로 5년 전 대비 평균 9% 증가하였음.
  - 국비, 도비, 시군비로 보조하는 사업 수가 5년 전 198개에서 현재 239개로 5년 전 대비 평균 21%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농정담당자 1명 당 관리하는 사업 수는 9.7개에서 10.9개로 늘어 12.1%나 증가하였음.

<sup>9</sup> 이 절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담당: 박유천 사무관, 김문석 주무관)에서 조사·분석·정리한 결과를 연구책임자가 편집·수정 보완하였음.

- 농식품 사업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나 민원 업무 부담으로 보조사업 담당자의 사업관리 여력을 악화시키고 있음.
- 농식품 보조사업 담당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는 5년 전 103건에서 현재 128건으로 늘어나 24.3%나 증가하였음.

## (2) 인력의 전문성·경력 현황

-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나 전문성은 줄어들고 있어, 사업관리와 현장소통의 역량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정사업관련 담당자의 한 가지 업무 보직유지 기간은 5년전 2.6년에서 현재 2.3년으로 줄어들어 사업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있음.
- 농정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직원의 비율은 감소(44.6%→36.1)한 반면에 10년 이하의 직원의 비율이 증가(55.4%→43.9)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3년 이하 직원의 비율(21.1%→25.2)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3)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사기고취 현황

-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와 현장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집합교육이나 대면교육(워크숍 등)이 크게 줄어들어 지자체 담당자의 규정 숙지나 현장대응력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됨.
- 직원 1인당 10여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집합교육이나 대면교육을 받은 횟수는 5년 전 3.7회에서 현재 0.9회로 감소하였음.
- 대면교육이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방역 및 재난지원금 등의 현안 추가업무를 수행하느라 온라인 학습을 이행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견임.
- 농정업무 담당자의 승진 소요년수도 타 직렬에 비해 길고(9급→5급 24.6년), 평가를 받을 때도 일반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결과적으로 농정업무 담당자는 업무 평가에서 대부분이 보통 이하의 평가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4) 결 론

-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민원과 사업 수가 늘어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에, 업무담당자의 경력은 줄어들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현장점검, 현장대응 등의 사업관리 여건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됨.

<표 4-61> 시군 농정담당 인력 및 업무 현황(10개 시군 평균)

항 목	세부항목	평 균			
		5년전	현재	증감	증감 (%)
농정사업 담당인력 (명)	계	29.1	31.8	2.7	9.3
	총괄자(과장급)	1.6	1.8	0.2	12.5
	관리자(계장급)	7.4	8.1	0.7	9.5
	실무담당자	20.1	21.9	1.8	9.0
농정관련 관리사업 수 (개)	계	198.0	239.1	41.1	20.8
	국비사업	38.5	48.5	10.0	26.0
	도비사업	67.6	83.4	15.8	23.4
	시군비사업	94.5	107.2	12.7	13.4
1인당 관리하는 사업수 (개) (국비+도비+시군비)		9.7	10.9	1.2	12.1
농정사업관련 민원처리 연간 건수 (담당자 1명당)		103.2	128.3	25.1	24.3
농정 관련 동일 또는 유사사업 연속 담당 년수 (평균 보직순환 년수)		2.6	2.3	-0.2	-8.7
실무담당자의 농정사업 근무경력 (읍면에서 농정담당기간 포함)	20년 이상	5.7	5.4	-0.3	-5.0
	10~20년	7.2	5.8	-1.4	-19.4
	3~10년	9.9	12.0	2.1	21.2
	3년 이하	6.1	7.8	1.7	27.9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lt;표 4-62&gt; 시군 농정담당 인력의 처우 및 역량개발 현황(10개 시군 평균)

항 목	세부항목	평 균			
		5년전	현재	증감	증감 (%)
승진 평균 소요년수	9급~7급	6.0	5.3	-0.7	-11.7
	7급~6급	8.2	7.0	-1.2	-14.6
	6급~5급	13.3	12.3	-1.0	-7.5
농정사업 업무담당자 평가 받는 수준 *매우잘받음(5)~보통(3)~매우못받음(1)		2.4	2.5	0.1	4.2
업무역량 강화 교육 횟수 (1인당 연간)	집합, 대면교육	3.7	0.9	-2.8	-75.8
	온라인, 비대면교육	2.0	3.7	1.7	83.3
사업관련 포상 받는 수준 (장관상등 1년에 10명당 받는 사람수)		2.2	2.5	0.3	15.4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4.2.2. 농식품보조사업 담당인력 및 업무에 관한 의견

- 시·군 농식품보조사업 담당 인력 및 업무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표 4-63>에서 농정사업 담당인력, 농정관련 사업 관리, 농정사업관련 민원처리, 실무담당자의 농정사업 근무경력, 농정사업 담당자가 평가 받는 수준, 업무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정리하였음.
- 농정관련 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증원이 되지 못하여 1인당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임.
- 농업직 공무원의 충원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직 순환이 어려우며, 행정직이 맡는 경우에는 농업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 부족으로 농업인들과 상담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음.
- 시·군 농정담당자들은 업무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기저하로 인해 전출이 발생하는 실정임.
- 농정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교육기회가 감소하였음.

&lt;표 4-63&gt; 시군 농식품보조사업 담당 인력 및 업무에 관한 의견

항 목	의 건 내 용
농정사업 담당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는 복잡다양화로 실무담당자 증원이 요구됨</li> <li>• 직원의 실무경험 부족으로 업무 추진 미흡</li> <li>• 직렬과 무관한 업무 수행</li> <li>• 팀과 사업 수는 늘었지만 실무담당자는 늘지 않았고 실무담당자가 관리하는 사업수도 늘었음</li> <li>• 신규정책 및 사업이 수립되는 수준에 비해 업무담당자는 한정적으로 업무량 증가 초래</li> <li>• 귀농귀촌팀 신설 및 계절근로자 등 담당인력 증원</li> <li>• 담당자 증원 대비 신규사업 및 업무세분화에 따른 담당자 업무 과중</li> </ul>
농정관련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사업 증가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절차가 증가됨</li> <li>• 신규사업의 추가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됨</li> <li>• 인원은 그대로이나 각종 보조사업이 많아져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li> <li>• 농지면적, 농가인구, 농업예산 등 인접 시군과 비교시 농업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힘들</li> <li>• 별도의 예산 성립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의 중요도가 상당한 업무들이 있음 (예 : 농업법인 처리업무 및 실태조사,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등)</li> <li>• 2018년 농업기술센터 예산 333억원에서 2022년 예산은 1,000억원을 관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li> </ul>
1인당 관리 사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직원을 배려하여 사업수를 줄이면 기존 직원의 사업수가 늘어남</li> <li>• 소수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깊이 있는 업무처리가 어려움</li> <li>• 담당자별 업무 편중성이 상이함</li> <li>• 1개 사업당 보조사업 대상자가 다수(1~2백명)인 사업이 많음</li> </ul>
농정사업 관련 민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발생 증가 및 다양화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 발생</li> <li>• 농민에 대한 보상금이 많아져서 자격요건에 대한 민원 많음</li> <li>• 바뀌는 제도 등에 대한 민원 증가</li> <li>• 농업경영체 등록이 건강보험료 감면, 농업인수당 지원, 공익형 직불제 지급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li> </ul>
평균보직 순환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2년 이내에 보직 순환</li> <li>• 그동안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이 부족하여 순환보직이 어려움</li> </ul>
실무담당자의 농정사업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성 및 고질 민원인의 증가로 민원처리가 어려운 업무를 9급과 같이 하위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순환이 절실</li> <li>• 농업직공무원 충원부족으로 행정적이 센터 및 읍면 산업부서에서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사하고 5년 정도면 7급 승진으로 경험 및 경력부족에 난이도 있는 업무 취급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및 기타직렬 농정업무 담당에 따른 용어 이해 및 농업인과의 대면 업무시 소통에 어려움</li> </ul>
승진 평균 소요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직은 타 직렬에 비해 승진 소요년수가 긴 편임</li> <li>• 업무역량에 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농업직 사기저하로 지속적 진출</li> <li>• 6급까지 타직렬과 비슷하게 승진되고 있으나 5급은 보직자리 제한으로 승진임용으로 한계가 있음</li> <li>•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5급 임용 직렬 결정으로 00군의 경우 농업군임에도 농업직 읍면장은 1명도 없는 실정임</li> </ul>
농정사업 담당자가 평가 받는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량은 많으나 실적이 상반기 내에 추론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으며 (직불제 등) 신속집행 등 제도적으로 도움받기가 어려운 실정임</li> <li>• 타분야 업무담당자보다 평가 절하되고 있음</li> </ul>
업무역량 강화 교육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해 집합 및 대면교육이 없으며, 농정업무 이외의 기관별 수행 업무(재난지원금, 코로나조사 등)로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 참석 어려움</li> <li>• 업무공유의 자리가 줄어들어 역량 강화에 한계</li> <li>• 코로나19로 교육 미실시 등</li> <li>•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대면교육에 따른 제한은 없음</li> </ul>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4.2.3. 농식품보조사업 개선 제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의 비효율 요인과 관련한 개선 제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 및 기타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대체로 ‘찬성’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표 4-6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음.
  - 선정 기준의 명확화 및 검증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사업별 표준가격 지표가 필요하며, 낮은 단가로 인한 사업 포기는 물론 보조사업으로 편입됨으로써 단가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임.
  - 소규모 사업 지원시는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 애그릭스와 e나라도움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일선 공무원이나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임.
  - 중요재산 가동·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지도 등은 필요하나 운영비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임.

&lt;표 4-64&gt; 지자체의 보조사업 비효율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항목	제안 내용	지자체 담당자 의견 (찬반 또는 다른 의견)
사업자 선정	선정기준 명확화, 자격 검증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민원 증가</li> <li>- 검증시스템 신속 구축</li> <li>- 선정기준 명확화로 인한 비대상자 민원소지 해소</li> </ul> </li> </ul>
보조 단가	사업별 표준가격 지표 마련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별 낮은 단가로 보조사업자의 포기가 빈번히 발생함</li> <li>- 보조사업의 경우 판매처의 단가 상향으로 인한 농업인의 보조비율 불만 해소 필요(한정된 예산으로 지침상 보조비율만큼 지원이 어려움)</li> <li>- 보조사업으로 편입되는 순간 단가 인상</li> </ul> </li> </ul>
절차 간소화	소규모사업 절차서류 간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지원시 간소화된 행정절차 절실</li> <li>- (중립) 신청서류 간략화로 허위신청 등 비대상자 선정 우려</li> <li>- 절차 및 서류는 현재 간소화되어 회계 절차상 꼭 필요한 서류만 징구하고 있으며</li> <li>* 공무원들이 모든 보조사업 서류를 대행하여 작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보조사업대상자 양측 불만 축적</li> </ul> </li> </ul>
회계 관리 투명성	에그릭스와 e나라도움 충분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 필요 (일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혜자는 고령의 IT취약계층이 대부분임. 사업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기만 할 것 같음</li> <li>- 대안 :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지정하여, 입출금내역 조회, 세금계산서 정상유무 조회기능 추가로 족하다고 생각함</li> </ul> </li> <li>• 반대 (e호조에 비해 시스템이 불안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나라도움 사용에 한계</li> </ul> </li> <li>• 찬성은 하나 전제 조건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사용이 미흡하여 공무원이 대행해줌에 따라 업무 가중화/사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음</li> <li>- e나라도움 메뉴얼 사용 불편</li> <li>- 농업의 특성상 e나라도움에 접근하고 자료 작성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수로 담당공무원이 위임장에 의거 대행하여 작성하는 현실로 공무원의 업무량 가중에 따른 기피 시스템임</li> </ul> </li> </ul>

		* 아그리스토 위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
보조사업 컨설팅	컨설팅 기관·단체 육성, 대규모 사업 컨설팅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 최소화</li> <li>- 대규모사업의 컨설팅 외 감리, 감독할 수 있는 추가 비용 지원</li> </ul> </li> </ul>
시설·기계장비 사후관리	중요재산 가동·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및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찬성(교육은 찬성, 운영비 지원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에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중복지원 등 형평성에 어긋남</li> <li>- 사후관리보다 사업자선정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두어 보조사업으로 받은 자산이 적정 사용되는 것에 초점</li> <li>- 사후관리반 절대적인 필요</li> <li>-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의무이며, 운영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li> </ul> </li> <li>• 반대 : 보조사업 중요재산의 가동,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현행 사후관리)정도는 필요하나 운영비 지원은 반대</li> <li>• 운영비 지원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성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나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면 우후죽순 보조사업 요구</li> </ul> </li> </ul>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한 개선 제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 및 기타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대체로 ‘찬성’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표 4-6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장의 의견이 제안되었음.
- 부정수급 위험요소 파악 및 집중관리는 필요하지만, 위험요소가 파악된 사업자의 통장거래 조회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실천방안이 필요함.
  - 지자체에서 농식품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부정수급 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제 적용에 대해서는 차등 단계를 단순화하고, 위험 점점을 활용하여 사전적 방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lt;표 4-65&gt; 지자체의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안 내용	지자체 담당자 의견 (찬반 또는 다른 의견)
부정수급 위험요소 파악 및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수급 위험요소가 파악된 보조사업자의 통장거래 내역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선</li> <li>- 당해 추진중인 보조사업이 넘쳐나는 중에 완료된 사업 현장점검의 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li> <li>- 농업인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대규모 보조사업을 줄인다면 부정수급 위험도 감소할 것임</li> </ul> </li> <li>• 지자체의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의 법률 명문화 필요 (인력부서에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군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하여 기 지원된 보조사업의 데이터입력이 완료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특정작목, 특정인의 과잉, 중복투자부분을 시스템 활용으로 관리가 예상됨.</li> <li>* 금년도에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하여 신규사업, 연속사업의 일몰제 등을 제도권 범위에서 심의할 수 있게 추진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 힘있는 소수에 의한 사업편성 등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 추진</li> </ul> </li> <li>• 외부단체 모니터링 제도 도입</li> </ul>
부정수급 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등단계를 2-3단계로 단순화</li> <li>* 보조사업 중 발생하는 민원의 대처 사례 또는 보조사업 관리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유)</li> <li>- 점검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제기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li> </ul> </li> </ul>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5. 농정연구자 의견조사 결과

### 5.1. 조사 대상 및 방법

#### ○ 조사 목적

-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대하여 농업정책 전문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국내의 농산업정책 분야 연구자 총 50명
  - ※ 전국 17개 대학 농업경제학전공 교수 3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산업 연구자 20명
- 조사 기간 : 2021년 10월 5일 ~ 10월 31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이메일 조사

#### ○ 조사 내용 : 부록 의견조사표 참조

- 농식품보조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5.2. 조사 결과

#### 5.2.1. 응답자 분포

- 의견조사의 응답자는 총 32명으로 교수직이 16명, 연구직이 16명임.
  - 대학의 응답자는 서울대, 강원대, 충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순천대, 제주대,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농수산대 등임.

&lt;표 4-66&gt; 응답자의 직종 분포

단위: 명, %

구분	교수직	연구직	합계
빈도	16	16	32
백분율(%)	50.0	50.0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5.2.2. 농식품보조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

- 현재 농식품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집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5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lt;표 4-67&gt;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1	9	16	6	0	32
백분율(%)	3.1	28.1	50.0	18.8	0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계획과 감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50.0%)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lt;표 4-68&gt;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 적절하게 집행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 비중에 대한 의견

구분	중앙부처 역할이 큼	서로 비슷	지자체 역할이 큼	전체
빈도	7	9	16	32
백분율(%)	21.9	28.1	50.0	100.0



- 농식품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관리감독권을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늘려야 한다(50.0%)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4-69> 농식품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감독권에 대한 의견

구분	감독권을 늘려야	현행유지	감독권을 줄여야	전체
빈도	16	8	8	32
백분율(%)	<b>50.0</b>	25.0	25.0	100.0

- 농식품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62.5%)로 나타났는데, 앞의 문항과 다소 배치되는 결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자체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표 4-70> 농식품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에 대한 의견

구분	재량권을 늘려야	현행유지	재량권을 줄여야	전체
빈도	20	6	6	32
백분율(%)	<b>62.5</b>	18.8	18.8	100.0

- 농식품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역할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중앙정부(56.3%)가 지자체(46.9%)보다 다소 높게 응답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예산 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구체화)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의견임.
  - 집행감독에 대해서는 지자체(62.5%)가 중앙정부(56.3%)보다 다소 높게 응답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사업자 선정심사 및 집행관리에 철저)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의견임.
  -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62.5%)가 중앙정부(46.9%)보다 다소 높게 응답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의견임.

<표 4-71> 농식품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 비중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덜 중요	전혀 아님
중앙 정부	계획수립: 예산 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구체화	56.3	31.3	12.5	0	0
	집행감독: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른 점검	31.3	56.3	9.4	3.1	0
	사후관리: 사업평가 및 부적정 보조금 환수	46.9	37.5	12.5	3.1	0
지방 자치 단체	계획수립: 농식품부와 교감하며 사업계획 수립	37.5	46.9	12.5	3.1	0
	집행감독: 사업자 선정심사 및 집행관리에 철저	62.5	28.1	9.4	0	0
	사후관리: 보조사업 시설장비 등 수시 점검	62.5	34.4	3.1	0	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중앙정부 역할>

- 중앙정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계획수립, 사업시행지침 수립을 정밀하게 할 책임이 있으며, 지자체의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지자체 역량>

- 농식품보조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집행되므로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집행하되, 지자체가 책임하에 집행하는 재량권을 조금 더 주는 것도 좋을 것임.

<통합정보관리 및 관계기관 협력>

- 보조사업 이력관리 정보, 중복수급 또는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 수급 정보 공유 등 보조사업 선정, 집행,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그릭스(AgriX), e-호조, e-나라도움 등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부처간 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협약을 강화해 나가야 함.

### 5.2.3.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으로 집행관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관리감독이나 사후관리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음.
- 현재 농식품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50.0%)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21.9%(그렇지않다 18.8%, 전혀그렇지않다 3.1%)임.
  -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보통(43.8%), 그렇다(43.8), 그렇지않다(9.4%) 순으로 응답하였음.
  -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등은 적절하게 집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53.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나 농기자재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59.4%)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4-7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1	6	16	8	1	32
백분율(%)	3.1	18.8	<b>50.0</b>	25.0	3.1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73> 농식품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0	3	14	14	1	32
백분율(%)	0	9.4	<b>43.8</b>	<b>43.8</b>	3.1	100.0

<표 4-74>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	-----------	-----------	----	-----	-----------	----

빈도	1	17	8	6	0	32
백분율(%)	3.1	<b>53.1</b>	25.0	18.8	0	100.0

<표 4-75> 농식품보조사업 지원시설·농기자재의 사후관리 적절성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1	19	9	3	0	32
백분율(%)	3.1	<b>59.4</b>	28.1	9.4	0	100.0

- 농식품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경영체에 요구되는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나 사업을 수혜하는 농업경영체가 함께 사업신청·심사, 자금집행·회계관리, 시설장비 점검·유지관리 등을 적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항목별 5단계 평가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항은 농업경영체의 자금집행 (56.3%)으로, 자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회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임.

<표 4-76> 농식품보조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농업경영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덜 중요	전혀 아님
지방 자치 단체	사업신청: 투명한 공모 절차, 자격 심사 등	<b>53.1</b>	40.6	6.3	0	0
	자금집행: 사업 단계별 자금 교부, 실적 점검	<b>43.8</b>	<b>40.6</b>	15.6	0	0
	사후관리: 보조금 정산, 시설장비 등 수시 점검	<b>53.1</b>	37.5	9.4	0	0
농업 경영 체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25.0	<b>53.1</b>	21.9	0	0
	자금집행: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 회계관리 철저	<b>56.3</b>	43.8	0	0	0
	사후관리: 보조사업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b>53.1</b>	43.8	3.1	0	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을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업계획 명확화>

-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포함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음. 사업설계시 사업의 목적과 역할분담 등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이해도를 컨설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집행관리 효율화>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풀을 통해 확충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 현장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의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보조사업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과 중앙정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기초지자체 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사례: 남원시 HAGRIX)

<사후관리 강화>

- 농업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여부에 따른 사업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조금관리법은 부정수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업보조금의 사후관리는 배분된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또한 시설 등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각차가 존재함.

#### 5.2.4.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발생에 동의하면서 예방 내지 근절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음.

- 현재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53.1%)는 의견이 많았음.
-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37.5%)와 보통(34.4%)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표 4-77>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1	4	10	17	0	32
백분율(%)	3.1	12.5	31.3	<b>53.1</b>	0	10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 표에서 동일.

<표 4-7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 또는 근절대책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0	12	11	8	1	32
백분율(%)	0	<b>37.5</b>	<b>34.4</b>	25	3.1	100.0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부패 항목과 오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패에 대해서는, 공모(내부 공모, 외부 공모)에 그렇다(50.0%), 임의처리(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에는 보통(37.5%), 허위(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에는 그렇다(37.5%) 등으로 나타났음.
  - 오류에 대해서는,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에는 그렇다(46.9%), 중복처리(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에는 그렇다(43.8%), 업무착오(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에는 그렇다(46.9%), 관리미흡(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에는 그렇다(34.4%), 집행오류(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에는 보통(46.9%) 등으로 나타났음.

&lt;표 4-79&gt;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부 패	공모: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모	6.3	<b>50.0</b>	34.4	9.4	0
	임의처리: 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	9.4	31.3	<b>37.5</b>	21.9	0
	허위: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	31.3	<b>37.5</b>	15.6	15.6	0
오 류	증빙미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0	<b>46.9</b>	31.3	21.9	0
	중복처리: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3.1	<b>43.8</b>	37.5	15.6	0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12.5	<b>46.9</b>	37.5	3.1	0
	관리미흡: 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	12.5	<b>34.4</b>	31.3	21.9	0
	집행오류: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6.3	34.4	<b>46.9</b>	12.5	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그밖에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현장 점검을 지적하였음.

## &lt;제도 개선&gt;

- 부정수급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감시 주기 및 감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시의 환수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할 필요(부정수급에 참여한 대상자, 업체 등에 정보공개, 타보조사업 신청 제한, 입찰 제한 등)
- 사업 설계 단계에서 공모방식 사업을 줄이고, 바우처 등 보조사업이나 이차보전 금융사업으로 전환하면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lt;현장 점검&gt;

- 현장에서 부정수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복 수령 및 사업의 열매만 따먹는 체리피커(cherry picker)임. 불법이나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사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함.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나, 가격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처리 등 허위에 해당하는 부패 점검은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5.2.5. 농식품보조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사업 단계별 중요도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 반영(필요 50.0%),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보통 56.3%) 등임.
  - 선정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필요 53.1%),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필요 50%),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매우필요 50.0%) 등임.
  - 집행 단계에서는, 보조금 교부 조건의 간소화(필요, 46.9%),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보통 46.9%),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매우필요 62.5%),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필요 50%),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의 철저(필요 50%) 등임.
  -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매우필요 53.1%),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필요 46.9%) 등임.

<표 4-80>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

사업추진 단계 및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46.9	<b>50.0</b>	3.1	0	0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3.1	25.0	<b>56.3</b>	15.6	0
선정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31.3	<b>53.1</b>	15.6	0	0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12.5	<b>50.0</b>	28.1	9.4	0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b>50.0</b>	46.9	3.1	0	0
집행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해야	3.1	<b>46.9</b>	37.5	12.5	0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해야	18.8	34.4	<b>46.9</b>	0	0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b>62.5</b>	31.3	6.3	0	0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40.6	<b>50.0</b>	9.4	0	0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	46.9	<b>50.0</b>	3.1	0	0



사후 관리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b>53.1</b>	37.5	9.4	0	0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43.8	<b>46.9</b>	9.4	0	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끝으로,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시에 현장의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 되도록 제도화 필요.
- 사업계획 수립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의견과 무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무리한 집행 또는 부정수급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집행관리>

-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집행·사후관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유형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형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
-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군담당자 역량>

-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이 중요한데 잦은 순환보직이 문제이므로 적어도 3년 정도는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공모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정보지원시스템>

- 보조사업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제6차 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한 e-나라도움, e-호조, AgriX의 고도화)
- 부정수급, 중복수급, 편중지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반영할 필요

## 6.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

- 본 의견조사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하여 수혜 측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의견, 지원(공급) 측인 시·군공무원의 의견, 그리고 농정연구자들에게는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농업인 조사는 시·군 농정과와 추천을 받은 농업인 중에서 이메일 주소 정보가 확보된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60명(회수율 31.4%)이 응답하였고 주관식 설문에도 37명이 답변하였음.
  - 농업경영체는 농업법인 중심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307개 법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했는데 37개가 반송되었고 27명(회수율 10%)이 회신하였으며, 정책 제언 등의 주관식 설문에 기재한 사람은 15명이었음.
  - 추가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인 50명에게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5명(회수율 50%)이 응답하였고 주관식 설문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는 전국 143개 시군의 농정팀장급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65명(회수율 45.5%)이 회신하였으며, 정책 제언 등의 주관식 설문에 기재한 사람은 42명이었음.
  - 농정연구자는 전국 농경제과 교수 20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 20명에게 이메일로 조사하였는데 총 32명(회수율 64%)이 응답하였으며, 정책 제언 등의 주관식 설문에 기재한 사람은 20명이었음.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대표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응답을 보였고 시·군 공무원들도 긍정적이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업인들은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원 받은 수혜 농업인들은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 반면에 미수혜 농업인들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농업경영체 대표들은 농식품보조사업의 수혜자로서 사업 실적에는 대체

- 로 만족하고 있으나,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이나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 담당공무원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니만큼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농정연구자들은 현행 농식품보조사업 정책이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경영체의 역량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음.
- 농식품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비롯하여 시·군 공무원이나 농정연구자들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의 여지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에 대하여 보조사업 시 농기자재 및 시설 단가의 상승,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과도한 제한,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집행관리 컨설팅,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업경영체들은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업신청부터 집행까지 관련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참여가 제한되고 외부위탁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음.
  - 시·군 담당공무원들은 농식품보조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 시군 담당자의 행정관리 역량 부족,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음.
  - 농정연구자들은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특히 지자체에서 요구하듯이 중앙정부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수혜자인 농업인들과 공급자인 시·군 공무원들도 일부 부도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예방 내지 근절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들은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으로 업체와 농업인의 공모, 업체가 주도하여 허위 신청, 특정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사업자 선정, 정산서류 확인 등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농업경영체들은 부정수급 문제가 최근에는 많이 정비된 것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행정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함.
  - 시·군 담당공무원들은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행정적 오류보다는 보조금 수혜자의 부도덕성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며, 따라서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 농정연구자들은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관계자의 부패보다는 행정적 오류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으로 부정수급 적발시의 환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하면서 부정수급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장지향의 정책사업 수립 : 농식품보조사업의 계획 수립시에 지자체 및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역의 차별화된 여건과 특화품목 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이 확충되어야 함.
  - 농식품보조사업의 안내 및 홍보 : 농업인들은 정책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력이 취약하므로 영농교육이나 사업설명회 등을 확대하여 공정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 정책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 신규창업농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자부담 능력 등 역량 있는 농업경영체가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 록 진입장벽의 완화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함.
-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 보조사업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구입절차 간소화(나라장터), 건물의 부기등기 이행기간의 단축 등이 필요함.
  - 보조사업 집행관리 업무의 간소화 : 사업지침의 집행관리 기준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컨설팅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대부분이 정책사업의 사업비 관리나 회계처리 등에 미숙함으로써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가의 컨설팅을 필요로 함.
  - 지자체 농정담당자의 전문성 확충 : 보조사업 담당자의 순환보직 제한 및 업무보수교육 정례화 등을 제도화하고, 초임자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의무화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 보조사업 시설 등의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 농식품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함.



## 제 5 장

### 주요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사례분석

#### 1. 농식품보조사업 운영 사례의 주요내용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로 지원규모가 크고 사업 신청이 많은 사업 총 12개를 선정함.
  - 조사대상 사업은 최근 수년간 농업·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임.
  - 조사대상 사업은 정책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통분야, 식량, 원예, 축산, 그리고 농촌 분야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2~3개 사례를 선정하여 현지 섭외 후 면접조사 가능한 1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사업의 보조 형태는 자본보조를 기본으로 경상보조가 추가되는 형태이며, 사업의 주체는 민간 또는 지자체임.
  - 일반적으로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주체는 농업경영체가 대다수이지만, 본 사례조사에서는 추진주체(지자체, 공공기관,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에 따른 사업시행의 특성을 파악하는 의미가 있음.
  - 조사대상 사업들은 지자체의 역량 및 농업경영체의 능력에 따라 사업 운영의 적응력이나 성과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됨.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조사대상인 12개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농기계임대사업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발농업 기계화를 제고
- (2)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단지에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 (3)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생산되는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 (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5)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6)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제고
- (7)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지원
- (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9)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
- (10)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 (11)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

<표 5-1> 조사대상 보조사업의 개요

분야	사업명	사업 주체	보조 형태
공통	농기계임대사업	지자체	지자체 자본보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생산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식량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농업법인, 생산조직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자본보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농협, 농업법인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원예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자본보조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농업법인, 생산조직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산지유통조직	지자체자본보조
축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농촌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농업인조직,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자본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사업위탁: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자본보조

자료: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발췌 작성.

## 1.1. 농기계임대사업 : 부안, 부안군농업기술센터

### 1.1.1. 사업추진 개요

- 농기계임대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부안군은 2011년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이후에 2015년 남부사업소, 2020년 동부사업소를 개설하여 본소 1개소 분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부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8년부터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도입하여 논대체작물(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여 영농비 절감과 농가 일관기계화 기술체계 습득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자본보조금)은 2010년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이후에 매년 국비 4억~1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20년에는 8억 원을 지원받았음.
  - 사업비는 국고 50%와 지방비 50%로 집행하고 있으나, 군에서 농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매년 2~3억원의 경비를 지방비로 추가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은 대형 농기계부속기 구입 및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에 주로 사용하며, 기계구입비에 70~80%, 운영경비에 20~30%가 소요되고 있음.
- 보조사업을 수혜 받은 후 농가의 농기계임대사업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임대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임.
  - 참여농가 수 : 2019년 7,916호 → 2020년 8,652호, 9.3% 증가
  - 농작업기 임대일수 : 2019년 8,941일 → 9,876일, 10.5% 증가
  - 농기계임대료 : 2019년 180,819천원 → 149,932천원, 17.1% 감소
  - 농가 측면의 경영비 절감효과로, 관리기를 예로 들면 연간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임대사업소 이용시 20~30%의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됨.

### 1.1.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발작물 농기계의 수요 증대로 농기계의 임대 수요가 많으나 예산 제약으로 적기적소에 농기계 보급이 어려운 상황임.
  -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사업지침에 융통성이 부족하여 현장 적용에 애로가 많음.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정부의 농기계 임대료 반값 지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50%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2년에 임대료가 원상회복 시에는 농가의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크므로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은 서비스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담당하기에는 제약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협 또는 대형 영농법인이 주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선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우수조직에 농기계임대사업의 위탁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의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에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의 세부계획과 집행관리를 모두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는 행정주도적인 사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사업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이므로 농기계 이용이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별문제 없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계장비의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위탁관리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기계업체에 업무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임대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농기계의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임대하는 기종이 많으므로, 임대단가 조정 등의 현실적인 요청을 감안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표 5-2>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군에서 농기계임대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함으로써 사업신청이 과다하지 않음.	발작물 농기계지원사업 등 사업실시요령이 수시로 변경되고 사업지침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사업 선정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이루어짐.	농가의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임대농기계 기종과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필요
자금 교부 집행	군 지방비로 운영경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침의 자부담 비율을 크게 상회하여 지출하는 실정임. - 지자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할 필요
회계 처리 정산	회계규정에 따라 집행관리	해당 없음
사후 관리	농기계 임대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편임.	기계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위탁관리 허용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 괴산,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사)흙살림연구소

### 1.2.1. 사업추진 개요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구축하는 사업임.
- 흙살림연구소(회장 이태근)는 1993년에 유기농업을 과학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창립되어 현재는 토종농장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토종농장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과 주변농가의 계약재배를 연계하여 흙살림푸드(주)를 통해 유통사업을 펼치고 있음.
  - 흙살림연구소는 토종미생물을 배양하고 건강한 흙을 만드는 농자재 7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300여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농자재 공급, 생산물 인증 관리,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에서는 유기농산물 유통사업과 친환경농산물 급식, 대형마트 공급, 일반가정에 꾸러미 판매, 온라인쇼핑몰 납품 등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흙살림꾸러미는 계절별 채소, 과일, 쌀 등을 중심으로 가족식단에 맞는 친환경농산물로 구성해 배송하는 사업임.
  - 흙살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농장은 3.3ha 정도이며, 이 농장에서 흙살림푸드가 시장에 내놓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유기농산물 재배계약을 맺은 농가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딸기 등 채소를 수집하여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선별과 포장을 거쳐 꾸러미상품으로 배송함.
- 최근 5년 동안에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 실적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6억원(국비 4.29억원, 도비 1.43억원, 시비 5.72억원, 자담 5.17억원)을 지원받아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및 물류기계설비 등을 구축함.

- 보조사업을 수혜 받은 후 경영 실적과 성과의 변화 내용을 보면, 시설 도입을 통한 조작비용 절감, 판로확대, 농가 조직화 기반 등의 성과를 보임.
  - 비용 측면에서 반자동화 시설→ 자동화 시설된 저온 냉장관리로 상품 감모율을 종전 5~6%에서 2~3%로 줄임.
  -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개척 확대(학교급식, 꾸러미사업 참여, 쇼핑몰 입점)으로 2020년 매출액 188억원 → 2021년 말까지 270억원 추정.
  - 단지 농가조직화(친환경 인증): 2019년 28호, 32ha→2020년 66호, 50.8ha

### 1.2.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이 정착되지 못하여 일반농가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생산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임.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단기적으로 완결성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 추진되어야 하며, 계획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사업준비 단계부터 사업신청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지역 단위로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하며, 품목별 조직 활성화를 통한 품목 조직 중심의 사업추진도 검토가 필요함.
  - ※ 최근 친환경농업의 동향을 보면,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품목 또는 기능 중심으로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조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음. 사업대상에 이러한 광역조직(예: 한살림, 흙살림)은 별도의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권 조직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나가야 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지원사업체 발굴이 행정계통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사업비 확정단계에서 사업비 삭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설계 시 면밀한 지침 제시로 혼선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함.

<표 5-3>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행정과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로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원활	공모사업이므로 사업 준비부터 행정과 생산자조직이 잘 협력해야 함. 사업추진이 행정계통에 너무 의존하므로 마을조직의 자율성이 낮음.
사업 선정	조직체계가 확립된 중견사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가능	우수한 사업체라도 신규로 보조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움. 시설관련 설계·감리를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맡으므로 비효율적임.
자금 교부 집행	자금 집행과정에서 점검 항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업 확정과정에서 건축비가 대폭 삭감되어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자부담이 증가함.
회계 처리 정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처리	없음
사후 관리	농가조직화기반 강화, 판매처 다양화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	우수사업체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후속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어야 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3.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 김제, 죽산콩영농조합법인

#### 1.3.1. 사업추진 개요

-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간 농가교육·컨설팅 등 역량 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비가 맞춤형으로 지원됨.
- 김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은 쌀생산조정에 대응하여 논콩 다수확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우수사례임.
  - 논콩 재배에 기계화율을 높이고 후작으로 우리밀, 보리,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여 소득 기회를 늘리고 있음.
  - 콩, 밀, 보리 등의 생산·가공·유통이 일체화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보완하고, 계열농가의 확충을 통하여 농가 조직화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함.
- 최근 5년 동안에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자본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2018년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도·군비 4억원, 자담 1억원)을 지원받아 콩 전용콤바인, 정선·선별시설,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장비를 보완하였으며, 또한 농가조직화 컨설팅을 추진하였음.
  - 공동경영체우수사업체로 인정되어 2020년에도 잡곡부문 들녘공동체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9억 9천만원을 지원받아 생산-가공-유통의 일관사업체계를 구축하였음.
- 보조사업을 수혜 받은 후 경영 실적과 성과의 변화 내용을 보면, 시설도입을 통한 조작비용 절감, 다수확 기술, 판로 확대, 농가 조직화 기반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일관작업체계를 구축하고 콩 다수확 안정기술체계 도입을 통하여 일반농가 대비 2배 이상의 수확량 및 고소득을 실현하였음.
- 수확후 관리에 대해 유통판매망을 강화하고 판매처를 다양화하였음.
- 단지내 농가조직화: 2018년 70호 480ha →2021년 84호 640ha로 국내 최대의 콩재배단지화를 구축하였음.

### 1.3.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사업체 규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편차가 크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50ha 이상이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축산영농조합의 사업규모는 640ha에 달하지만 보조사업 지원규모는 규모가 적은 사업체와 동일한 수준임.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공동경영체의 성장에 맞추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후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업 참여 경영체의 경영 여건을 보면, 경영체 간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경영체의 여건에 맞도록 사업 지원규모의 차별화가 요구됨. 따라서 공동경영체의 사업규모에 따른 보조사업비 지원이 적절하게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움.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으며, 농업생산조직의 경우는 대부분 조직이 영세하여 관련 서류를 완비하는데 애로점이 많음. 따라서 구비서류 등 사업신청의 간소화가 필요함.

※ 영세규모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후속 지원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표 5-4>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콩산업 공동경영체로 조직을 탄탄히 성립한 선도업체로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시범사업 주체로서 신뢰도가 높음.	보조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함. 공동경영체의 사업규모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음.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에 정보 획득이 어려움. -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사업 선정	사업 절차에 적절히 대응함.	사업체의 성장과정에 따른 후속지원이 필요한데,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한계임.
자금 교부 집행	없음.	공동경영체에 따라 사업규모의 편차가 심한데, 대규모사업체로서는 보조사업비 규모가 작음.
회계 처리 정산	없음	특별히 없음.
사후 관리	철저한 시설 및 작업기 관리, 규모화를 통하여 사업 운영효율 극대화	사업체의 성장에 맞추어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후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 천안, 천안시쌀조합공동사업법인

### 1.4.1. 사업추진 개요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은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 거점별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우리쌀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임.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및 집진시설을 보강 지원함.
-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16년 12월 서북구 4개 농협(성환, 성거, 직산, 입장농협)이 뜻을 모아 고품질 천안쌀 생산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현금과 현물을 공동 출자해 조공법인을 설립하였음.
- 2017년 9월 농식품부의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미곡 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을 증축하였음.
  - 2018~2019년 2년간 총사업비 95억 6000만원(국비 23억, 지방비 16.6억, 조공법인 자부담 56억)이 투입되었음.
- 이 사업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 쌀 생산라인이 구축되어 균일한 품질의 우수한 천안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쌀의 품질을 유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수매량: 2017년 7,000톤 → 2020년 8,500톤(홍년) → 2021년 14,200톤
  - 매출액: 2017년 140억원 → 2020년 170억원 → 2021년 210억원(추정)

#### 1.4.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대규모 시설이 도입되는 사업의 경우에 각종 인허가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 사업비 미집행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행정에서는 미집행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향임.
  - RPC사업은 농업인의 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실시 후에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완사업에 대한 후속지원이 요구됨.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농협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감안 후속지원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완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리 목적의 민간사업자와 차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함. 농협의 경우는 회계관리가 철저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과 차별되어야 함.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보조금 획득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부실화가 우려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자 선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업선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부지 확보시 인허가 문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고정시설 건설사업 등은 사업자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본사업 선정에 앞서 전년도에 예비사업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추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당년도 사업비를 목표보다 미집행한 경우에 사업비가 삭감되므로 부적정 집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집행의 불용 또는 이월 문제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 따라서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회계관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 지원사업자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표 5-5>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시 행정과 원활한 업무협조로 추진 되어 만족함.	사전 준비가 부족하여 사업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에 애로 발생
사업 선정	현재의 사업은 적절히 대응하여 추진하였음.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시부지의 인허가 등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무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
자금 교부 집행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 적극대응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집행의 불용 또는 이월 문제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
회계 처리 정산	농협계통은 회계처리가 무리없이 잘 이루어짐.	당년도 사업비를 목표보다 미집행한 경우의 사업비 삭감 문제 -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목적 사업 사용 범위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사후 관리	농협사업과 연계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	지원사업자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노후화, 시설의 수요증가에 대응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5.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 양구, 농업회사법인 (주)양구아스파라

### 1.5.1. 사업추진 개요

-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외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농업회사법인 (주)양구아스파라는 양구지역에서 15년 이상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해 온 전문농가들이 2017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주로 해외 수출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임.
  - 강원도 도농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아스파라거스를 수출 유망작목으로 선정한 후 보조사업을 통해 철저한 재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농식품보조사업(자본보조금)은 법인 설립 후에 이상기후 대비 시설 내 환경조절시스템 구축사업과 권역별 수출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농가당 약 1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 받았음.
  - 사업비는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집행하고 있으나, 양구군에서 2년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과 수출단지 조성, 소비 촉진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음.
- 보조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과 수출 증대, 농가소득 증대로 나타나고 있음.
  - 농가 수 및 재배면적 : 2016년 16호 8.6ha → 2020년 43호 20.5ha로 증가
  -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 2016년 대비 노동력 30% 절감, 난방비 50% 감소
  - 수출 증대 : 2015년 1개국 3톤 → 2019년 5개국 19.4톤
  - 농가소득 증대 : 4만원/평 → 5만원/평, 단위당 소득 약 20% 증가

### 1.5.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재배시설 내 재배관리시스템의 자동화 개선의 수요는 난방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의 개선 수요가 많은데 비하여 지원규모나 금액규모가 적어 난방 등 일부 시설개선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의 용도가 한정적이고 지원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원예시설의 첨단화와 자동화시스템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정책개선 방향으로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심사평가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추진에서 보조금의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이고 농가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용자의 경우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일정 한도 내에서 농가별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환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재배시설 내 시설 개선 대상과 범위를 온도조절 등 일부 장치시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관리시스템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자체의 전면적인 재설치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농가의 고령화로 사업신청서나 계획서 작성이 복잡하여 이해하고 기재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수요농가를 선정 후 사업신청서나 계획서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5-6>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군 농업기술센터의 안내와 설명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없었음.	농가가 개별적으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내용이 복잡하고 고령농가가 컴퓨터 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사업 선정	군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정 농가를 선정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짐.	신청 농가수가 많은데 비하여 할당된 사업량이 적으므로 농가당 보조금 규모가 적게 배정되고 실질적인 시설개선이 제한적임.
자금 교부 집행	적기 자금배정과 재배시설 내 환경조절시스템 개선 사업자도 자금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됨.	보조 및 용자가 실수요액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군의 지원이 더 필요하며, 자부담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임.
회계 처리 정산	사업비 사용 결과를 군과 농협 등에서 엄정하게 관리함.	용자 상환기간을 고정하지 않고 농가별로 어느 정도 유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후 관리	군과 은행에서 사업계획과 지원규모에 맞게 사업이 잘 완료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함.	사업규모에 비하여 점검 횟수가 자주 있는 편이며, 사후관리기간도 긴 편으로 생각됨. 시설 설치 후 전문가의 철저한 점검이 한 번 더 이루지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6.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 상주, 산떼루아영농조합

### 1.6.1. 사업추진 개요

-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품질·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 생산 분야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포함되며, 유통 분야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등이 포함됨.
- 산떼루아영농조합법인은 국내 포도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2015년에 설립하여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현재 참여농가 26농가에 재배면적은 30ha임.
  - 보조사업은 2017년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8,605만원)에서 시작하여 2019년 명품포도 유통단지 기반조성사업(12,400만원), 그리고 2018~2020년에는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24,900만원)으로 지원받았음.
  - 주요 사업내용은 2017년에는 선별기 설치, 에어커튼, 컴프레셔 구입이며, 2018년에는 공동선별장 확장, 선별기 시설보완, 냉난방기 구입, 2019년에는 저온저장고 확충, 전동지게차 구입, 수출용 포장박스 및 자재 구입, 2020년에는 수출용 포장박스, 수출용 팔레트, 수출용 부자재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았음.
- 보조사업 수혜 후의 성과로는 시설 설치와 장비구입 비용절감, 수출 등 매출액 증가,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절감 : 수혜 전에는 공동선별장 등 시설 및 장비구입 비용 100% 부채 충당 → 수혜 후에는 시설·장비 보조금 지원으로 200% 부채 절감. 수출용 포장자재 보조금 지원으로 약 60% 비용절감 효과

- 매출액 증가 : 수혜 전 2016년 법인 총매출액 7.5백만원 → 2018년 1,269백만원, 2020년 3,168백만원으로 40배 증가
- 수출 증대 : 2016년 8.4톤 → 2018년 90톤, 2019년 8개국 400톤 수출
- 농가소득 증대 : 수혜 전에는 매출액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수혜 후에는 부채와 이자지출이 대폭 감소하여 증가된 매출액이 직접 농가소득으로 연계됨.

### 1.6.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가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사업으로 비교적 투입규모가 큰 사업종류가 많은 것에 비하여 1회 지원받는 자금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수혜자의 입장에서 1회 지원 대상 사업종류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소규모로 여러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시행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다른 사업에 비해 1회 사업규모 대비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회 지원 시 지원 대상 사업종류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고,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 설치된 시설의 확충과 관련 장비구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 개보수나 확충을 위한 지원자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보조사업 지원자금의 국고 보조율과 지방비 보조율이 각각 20%와 30%에서 시·군의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지방비 보조율보다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함.

##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보조사업 신청 시에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lt;표 5-7&gt;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지자체의 정보 안내와 신청 관련 문의 및 협조를 통해 신청함.	사업 안내를 좀 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워 지자체에 문의 후 신청하지만, 요건 및 시행지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요건미비 등으로 재신청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사업 선정	지자체에서 우선 선정대상 결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 후 선정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서 선정 탈락 시 차기 자체 사업계획 수립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탈락 시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짐.
자금 교부 집행	개별경영체와 사업시행주체인 법인이 모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것은 좋은 것으로 판단됨.	자금 교부과정이 좀 까다로운 편이며, 자금집행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 - 사업대상 선정이나 교부에서 수출관련 사업대상 폭이 확대되어야 함.
회계 처리 정산	회계사무소 위탁처리로 큰 문제는 없으며, 지자체나 은행에서 철저히 관리함.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대출 이전에 빨리 사업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포함 보조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 재사용에 대한 제출 및 집행 등의 번거로움.
사후 관리	사업 추진실적, 집행사항, 운영관리 등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	해당사항 없음.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7.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 함안, 가야농협산지유통센터

### 1.7.1. 사업추진 개요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 가야농협의 농산물유통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설립되기까지는 경매식 산지집하장과 농산물 공동선별장 2개소로 분리되어 단순 기능의 소규모 유통시설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1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8년 12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준공되어 산지 농산물유통의 대규모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52억 7900만원으로 이 중 보조 31억 5600만원(국비와 지방비 각각 15억 7800만원)과 자부담 21억 2300만원)이 투입되어 20706㎡ 부지에 건축연면적 6216㎡ 규모로 건립되었음.
  - 주요 시설은 수박, 멜론, 파프리카, 참외 등을 1일 80톤, 연간 1만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창고, 사무실 등의 건물과 비파괴 선별시스템 등 최신 설비와 기계장비가 설치되었음.
- 보조사업으로 그 동안 단순·분산된 기능의 소규모 산지집하장과 공동선별장에서 수행되어 오던 산지유통기능이 규모화·전문화·종합화된 유통기능 수행의 시설로 통합되어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와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다양한 물류기능 수행이 가능해져 함안군 농산물의 공동유통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 보조사업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운영으로 그 동안 분산된 소규모 산지유통기능이 규모화된 통합기능으로 운영됨으로써 농산물 유통사

업 중 판매사업의 매출액 규모가 2017년 207억원 수준에서 2019년 229억원, 2020년 253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음. 특히 유통센터 내에서 선별·포장·저장 등 다양한 종합적 물류기능이 가능해짐으로써 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이 상승하고 함안군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짐.

### 1.7.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사업 신청과 선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수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우고 사업 대상 선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여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외부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신청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신청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용역사업자 선정이나 용역비 지출에 조합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사업대상 선정 시 3단계의 평가가 있는데, 2단계의 서면평가와 3단계의 발표평가의 내용과 항목이 원물 확보, 시설 가동성, 투자 효율성, 마케팅 등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선정 평가의 노력·비용·시간 면에서 중복됨.
  - 공사 사업자 선정에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 aT,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설계가 나오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나라장터에 적격심사(평균 낙찰률 87.745%) 입찰 공고에서 최저가 낙찰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액의 부담이 큼.
  - 사업 완료 후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가동률 등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사업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평가는 사업 완료 후 매 1년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이 조합에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충실한 신청 준비를 위하여 보조사업 정보와 안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선 수요자들이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업신청과 선정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외

- 부 용역이 없어도 조합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 선정 시 3단계의 평가에서 2단계 서면평가와 3단계 발표평가의 내용과 항목이 원물 확보, 투자 효율성, 시설 가동율, 마케팅 등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와 선정의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하나로 합쳐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사 시공사 선정에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 aT와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설계가 나오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나라장터에 적격심사(평균 낙찰율 87.745%) 입찰공고 시 최저가 낙찰율(평균 75% 전후) 기준으로 60% 보조금에 40% 자부담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비 부담률 하향 조정과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 완료 후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가동율 등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사업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평가는 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APC가 기 설치된 타 농협 APC를 견학하고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음. 신청을 위하여 지자체의 정보 안내와 도움을 얻어, 설립 당위성 등에 대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신청함.	충실한 신청 준비를 위하여 보조사업 정보에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지자체나 외부의 도움이나 안내가 없이는 구체적인 정보 획득이나 이해하는데 애로가 있음. 사업 신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각하고 선정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신청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신청에 중복적인 능력과 시간과 용역비용 부담이 있음. 조합 자체의 신청 준비는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 선정	신청된 자료들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우선 선정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선정을 위한 두 차례의 평가(서면 및 발표 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이 1회 신청으로 선정되었음.	사업 대상 선정 시 3단계의 평가가 있는데, 2단계 서면평가와 3단계 발표평가의 평가 내용과 항목이 원물확보, 시설가동성, 투자효율성, 마케팅 등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선정 평가의 노력·비용·시간 면에서 중복됨. 신청 준비를 위한 지자체의 전문적인 지원(용역 등)이나 보조금 내용에 외부 용역비등 신청 준비금도 일정 부분 포함되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자금 교부 집행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자체에 바로 자금신청을 하였으며, 법인 통장으로 즉시 자금이 교부되어 적시에 사업시행이 가능하였음. 사업부지 확보, 지자체 및 자부담 확보, 실시설계에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하였음. 공사 사업자 선정도 지침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모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입찰로 선정하였음. 자부담은 조합에 어느 정도 부담 여력이 있고 이미 총회에서 지출 처리가 승인이 되어 공사비의 20%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음.	공사사업자 선정에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 aT,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설계가 나오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나라장터에 적격심사(평균 낙찰율 87.745%) 입찰 공고에서 60% 보조금과 40% 자부담이 있음. - 최저가 낙찰률은 평균 75% 전후에서 형성됨으로 두 낙찰률에는 10% 이상의 차이가 있음.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농협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에 의한 낙찰된 금액에 대하여 자부담 40%로 집행하면 자부담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임. - 국비 보조율이 30%에서 40% 정도로 상향 조정되면 지자체와 조합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회계 처리 정산	회계처리는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큰 문제는 없었음.	특별히 문제 없음.
사후 관리	시설물 등기, 활용, 사업계획서와 의 운영실태 대조 등 조합의 사후 관리는 지침대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현지 시설점검이나 운영실태 점검·관리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음.	사업 완료 후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가동율 등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사업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평가는 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정읍, (유)성유농업회사법인

### 1.8.1. 사업추진 개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축산법에 의거 각종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자 공급,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유)성유농업회사법인은 2014년 곤충산업 창업을 시작으로 시험사육을 거쳐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유충)를 전문적으로 사육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대식 사육장으로 신축 이전하여 부지면적 6,879㎡ 시설면적 1,500㎡에서 발효 참나무 톱밥을 사료로 연 3톤(약 50만 마리)을 건조 굼벵이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 곤충먹이는 농장에서 직접 참나무 톱밥을 발효시켜 효소제로 만들어 품질 좋은 건강한 식·약용굼벵이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으로는 특허 출원한 상표 및 디자인 등록으로 천사꽃벵이환 워비꽃벵이환 등의 식·약용 건조 굼벵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보조사업은 2019년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 유충의 사료인 원료 가공시설(82%), 굼벵이 사육 기자재(13%), 장비 구입(5%) 등에 사용하였음.
- 보조사업 수혜 이후 성과로는 사업에서 가장 핵심분야인 원료 가공시설 개선에 의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과 매출액 증가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생산비 절감 : 수혜 전에는 굼벵이 사료인 톱밥 원료 발효 가공 기간이 360일로 지나치게 길고, 이 기간 투입인력이 총 72명이었으나, 수혜 후에는 톱밥 원료 발효 가공 기간이 240일로 단축되고 투입인력도 32명으로 감소



- 되어 전체 생산비가 40~50% 절감됨.
- 매출액 증가 : 수혜 전에 비해 수혜 후의 동일 사육규모의 연간 매출액이 약 94% 증가하였으며, 수익률도 수혜 전 40% 수준에서 92%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그밖에 우수한 사료 가공시설 설치와 사육 기자재 구입으로 청정 사육환경이 조성됨으로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함.

### 1.8.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2019년에 지원받은 본인 축사시설은 굼벵이 사료인 소규모 톱밥 발효 가공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원받은 1억원으로 큰 부담이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굼벵이 사육사 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지원규모가 부족한 수준이었음.
  - 지원 형태는 2019년부터 보조가 없어져 용자 80%, 자부담 20%로 용자와 자부담 부분에서 모두 사업자의 자금 압박 부담이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로 가능하지만 지자체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 정부나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는 지원 내용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때로는 의견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대규모 이차보전사업이 아니고 중소규모 FTA 기금 용자사업의 특성 상 전반적으로 큰 애로점은 없는 나타남. 따라서 단지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에 융통성을 확대하고 지원형태에서 보조비율을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서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부담 압박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지자체가 사업신청을 공지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안내 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농업경영체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게 양식을 간소화하거나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와 함께 일괄 작성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관련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면사무소 상담소장에게 사업대상과 작성하는 방법 협의 후 신청	보조사업의 큰 애로사항은 없으나, 사업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령자들이 작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음
사업 선정	사업신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청함.	사업자 선정기간이 조금 긴 편이며, 선정되어 사업 착수·시공하는 과정에서 관 주도 공사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사업추진이 경직됨.
자금 교부 집행	금융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신규통장 발급받아 자금배정 및 교부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이 부담이 되며, 집행서류 구비와 비치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움. 사업자가 설계·시공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움이 있음.
회계 처리 정산	대출은행이 시청사 내에 있어서 민원과 함께 회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이 좋음.	해당사항 없음
사후 관리	규정에 의해 준수하여 큰 문제는 없음.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처리기간이 긴 편이며, 소규모 지원시설의 양도 조건이 까다로움.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9.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 괴산,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

### 1.9.1. 사업추진 개요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축산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에 의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의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완전배합사료(TMR), 단미사료 생산과 육우사육업으로 설립하여 조합원 육우·양돈농가에 직접 사료를 공급하고 한살림 정육의 70%를 공급하는 업체임.
  -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한축회)은 괴산 지역의 축산농가 약 40여 호로 구성되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경축 순환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볏짚과 곡물을 섞은 친환경 완전배합사료(괴산TMR)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음. 현재 한축회 회원 농가가 사육하는 소가 2,300두 정도이며, 매달 80~100두를 한살림에 공급하며, 매월 생산하는 조사료가 1,000톤 정도임
  - 보조사업은 2019년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12,990만원(자부담 5,196만원)을 지원받아 조사료 수확장비인 트랙터를 구입하였으며, 조사료 가공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19,500만원(자부담 10,500만원)을 지원받아 TMR사료 세절기를 구입에 사용하였음.
- 보조사업 수혜 후 성과로는 사업에서 완전배합사료 원료인 조사료 수확작업의 기계화 진척에 의한 인건비를 포함한 조사료 생산비 절감, TMR공장내 사료세절기 설치에 의한 사료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조사료 수확 생산비 절감 : 수확 인건비 절감으로 전체 수확비용이 수혜 전에 비해 약 10% 정도 감소
  - 완전배합사료 생산비 절감 : TMR 생산지가 전체적으로 5~10% 감소

### 1.9.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사료공장의 내부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보조사업 참여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지만, 수혜자 대상과 지원규모의 제한, 신청·선정에서의 삼진아웃제 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아쉬울 때가 많이 발생함.
  - 보조사업 시행사업자 선정에서 공개 입찰을 통하여 진행되는 관계로 기존 시설 설치업체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추후 A/S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 조사료 생산 및 생산된 조사료를 이용한 완전복합사료(TMR)를 생산하는 사료공장의 시설개선이나 장비교체 등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고 자부담 여력의 한계로 실질적인 보조사업의 성과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료공장의 경우 2008년 TMR 사료 공장 신축 당시 정부 정책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나 기계·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산성 감소, 사료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해 시설 재투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보조사업의 참여기회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지원에 의해 일부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료공장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장비 교체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법인 입장에서는 큰 자금부담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법인의 경영성과가 적자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보조사업 정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싶으나 선정 기회가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정부 보조사업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선정되는 기회가 넓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보조사업 신청을 공지할 때 신청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 좋겠음.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설공사 시행주체를 선정할 때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기존 시설 설치 업체가 아닌 다른 시공업체가 선정될 경우에 추후 A/S나 시설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 보조사업 지원규모에서 실질적인 자부담의 압박과 자금 수요를 꼼꼼하게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지원금 규모가 현실화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lt;표 5-10&gt;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양식대로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며, 큰 문제는 없었음.	서류 작성이 좀 복잡한 편이며, 일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 되어 있음.
사업 선정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계획서가 잘 반영되어 선정됨.	선정의 필요성이 긴박하고 중요한데 선정되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잘 선정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시공업자 선정도 보조사업 대상자의 의견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자금 교부 집행	사업자 선정 후 즉시 금융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수령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음.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압박이 되고 있으며, 자부담 우선집행도 개선되어야 함.
회계 처리 정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사업지침에 회계사나 은행에 업무위탁 조항을 명시할 필요.
사후 관리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음	사업의 변동성에 비해 사후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임.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1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 보령, 농업회사법인 홍보그린텍(주)

### 1.10.1. 사업추진 개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해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너지화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충남 보령시 천북면은 전국에서 면단위에서는 가장 큰 양돈단지로서 2020년 현재 81농가에서 25만 여두의 돼지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화된 양돈전문단지임.
  - 농업회사법인 (주)홍보그린텍은 슬러리 30톤/일, 우분·돈분·계분 60톤/일(바이오가스 추진으로 2021년 하반기 액비100톤 증설)의 분뇨를 부속시켜 경종농가 65호(관내50호)에 공급하고 있음.
- 이 사업체는 축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REC판매 등 축산경제 모델창출, 축분을 퇴액비로 전환하여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및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
  - 정부의 축분활용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사업에도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현장적용연구에 기여하고 있음.
- 2012~2013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2015년 완공) 사업비 4,926백만원(국비 1,800백만원, 지방비 1,350백만원, 자부담 1,776백만원)으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처음 참여한 이후, 2차사업으로 1920~1922년(3년간) 총사업비 9,200백만원(국비 4,600, 지방비 1,840, 자부담 2,760)을 지원받음.
  - 회사가 소재한 신죽리 인근 축산농가의 축분 연간 36,500톤을 자원화하

는 목적으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여 인근의 농가에 공급하고,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1.10.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우므로, 최소한 유선으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함.
  -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음.
  - 사업착수 단계에서 무조건적인 입찰의 진행을 통한 시간의 허비로 적기에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적기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당년도 사업비 미집행사례가 빈발함.
  - 적절한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요구됨. 사업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도 축산분뇨 무단투기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음.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에 대한 정보전달이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효과적으로 사업안내와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 적절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수요자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정보가 수요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에 앞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함.

- 축산분뇨 투기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함.

<표 5-11>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현행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수행함.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획득이 어려우므로, 최소한 유선으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함.
사업 선정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을 평가 받아 사업자로 선정되었음.	사업선정시 현장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사업선정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음. 사업실행 능력 있는 업체 선정(보조금의 낭비가 없도록)이 이루어져야 함.
자금 교부 집행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함.	사업착수 단계에서 무조건적인 입찰의 진행을 통한 시간의 허비로 적기에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회계 처리 정산	회계규정에 따라 수행함.	적기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년도 사업비 미집행 사례가 많음.
사후 관리	축분발효시설 등을 활용하여 양돈 단지의 분뇨를 처리,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있음.	축산분뇨처리 관련사업은 주변 농가의 민원발생이 많음. 사업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도 축산분뇨 무단투기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음.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11.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양평, 뚝딴지마을(주) 농업회사법인

### 1.11.1. 사업추진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원물생산(1차), 가공·판매(2차), 체험·농촌관광(3차)을 연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임.
- 경기도 양평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뚝딴지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기업과 함께 성장한 농촌융복합경영체임.
  - \* 2012년 8월 설립, 현재 회원 10명, 연 매출액(2020년) 3억 5700만원
  - \* 이형훈 대표는 2021년 5월에 농식품부의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제70호)’으로 선정됨.
- 돼지감자의 또 다른 이름인 뚝딴지에서 유래한 ‘뚝딴지마을’은 생산 및 계약 재배를 통해 원물을 확보하고, 돼지감자차·참기름·들기름 등 가공품을 가공·판매하며, 차별화된 체험 운영하고 있음.
  - 생산 : 돼지감자·들깨·참깨 등 자가생산 및 18개 농가와 계약 재배(연간 약 225톤)로 지역과의 상생
  - 가공 : 돼지감자 가공품(차, 장아찌 등), 참기름, 들기름 등 7개 제품 개발 및 생산
  - 체험 :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사계절 프로그램 운영 및 비대면 체험 키트 개발로 코로나 위기 대응
- 2017년에 농식품공동체지원사업 1억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4300만원을 보태어 농산물가공공장을 확충하고 돼지감자와 가공품 등을 개발하고 ‘뚝딴지마을’ 브랜드로 마케팅에 성공함.
  - 사업 초기에는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민들이 구입하는 정도였으나, 점차 외부에서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수도권 대형매장

- 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음.
- ‘뚝딴지마을’ 브랜드로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9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사례 경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키트를 제작하여 다양한 가공품 생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마을기업이라는 공동체를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체험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자가생산 및 18개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연간 약 225톤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어르신 등 주민들이 제조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계층 일자리를 창출함.
    - \* 2020년 마을주민 임시근로자는 1200명으로 송학1~3리 인구(1498명)의 80% 수준

### 1.11.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현재의 융복합사업 지원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품 생산단계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브랜드 마케팅할 수 있도록 포장재 디자인 등의 지원도 필요함.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영세한 농업경영체들이 정책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조사업을 지역안배 또는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는 경영체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 농식품 분야도 HACCP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맞출 수 있도록 가공 시설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함.

##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농촌 현장에서는 정책사업 신청이 종료된 후에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정책사업 안내 및 홍보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함.
- 국고보조사업은 단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도 짜맞추기식 회계처리를 하게 되므로, 지자체 감독 하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의 자부담 기준을 완화해야 함. 기계설비 등의 설치도 자부담을 완료해야 보조금이 입금되어 공사가 발주되는 실정이므로 사업 착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음.
- 군 농정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사업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제가 많음.

&lt;표 5-12&gt;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공고된 사업내용을 군 담당자가 알려줘서 신청하게 됨.	대체로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나 신청 안내가 늦는 실정임. 심지어 사업종료 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음.
사업 선정	마을기업이 공동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함.	일부 사업은 지역안배나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있음. - 식품사업은 HACCP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야 함.
자금 교부 집행	마을기업이 자부담 부분을 공동으로 대응함.	사업비에 맞춰서 건적을 제출하므로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자부담 입금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며, 시설업체에 따라 장비 설치 후에 자금 지급.
회계 처리 정산	규정대로 실시함.	보조사업이므로 업체에서도 단가 조정이 되지 않아 짜맞추기식으로 처리하는 실정임.
사후 관리	농산물가공시설 등을 체험활동에도 활용하여 가동률을 높임.	군의 농정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1.12.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안성, 삼죽면(사업시행자: 안성시장)

### 1.12.1. 사업추진 개요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지역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생활편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공모사업임.
- 사업지구는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용월리, 내강리 일원으로 면적은 3907ha(거점지 765ha, 배후마을 3142ha)이고, 사업계획 수립 당시 2019년 인구는 3958명, 가구는 1101호(거점지 595호)임.
  - 사업기간은 총 4년으로 2019년 1월부터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등의 운영주체는 삼죽면추진위원회임.
- 총 사업비는 40억 원(국비 28억, 지방비 12억)이며,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일괄수탁 받아 분야별로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임.
  - 기초생활기반 : 삼죽공감센터(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두둘기쉼터(야외공연장), 문화마실길(덕산저수지-중심지 연결보행로)
  - 지역경관개선 : 덕산이음길(덕산저수지 수변공원), 보리수길(죽산천변)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 경영지원 등

<표 5-13>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단계별 일정

구분	기본 계획	세부 설계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S/W		
			총괄	연도별	총괄	연도별	총괄	연도별	
일 자	착수	19.07.17	20.09.16	21.07.05	21.07.05	21.08.11	21.08.11	19.07.17	21.01..21
	완료	20.09.07	21.06.15	22.12.10	21.12.10	22.12.10	21.12.10	22.12.10	21.12.10
원도급	(주)농촌엔정	호재건축사	재성종합건설(주)		미성이엔씨		(주)농촌엔정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업무자료.

### 1.12.2.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농촌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농식품부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역SOC 정비를 위한 일부사업에 한정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증대할 수 있음.
  - 각종 시설의 운영주체는 면단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들이 준공된 후에는 사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농촌지역에도 생활SOC 복합화 트렌드에 따라 타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으나(특히 복지분야 사업), 시·군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타과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사업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많음.
  -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생활SOC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함.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 공고 후 계획서 제출하는 동안에 작성기준(가이드라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 기준 하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SOC사업을 복합화하는 경우에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복합화 지구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지자체 현장의 요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획 단계에는 초기 예산을 적게 배정함으로써 예산 이월 또는 미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시설 등의 준공 후에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관리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예: 시군조례 제정)이 구축되어야 함.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해 시군조례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하여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표 5-14>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단계별 대응 내용 및 애로사항

단계	잘 대응한 점	애로사항
사업 신청	농촌생활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	사업정보 안내 및 신청기간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으나, 작성기준(가이드라인)이 자주 변경되므로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움.
사업 선정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 지자체 위탁으로 사업 수주함.	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와 시군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함.
자금 교부 집행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세부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임.	기본 및 세부 설계관련 승인단계 절차의 기간 증가로 사업시행 단계가 단축되는 제약이 존재함. 계획단계에는 초기 예산을 적게 배정하여 예산 이월 또는 미집행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회계 처리 정산	사업 기간 후 2년까지 연장가능하므로 대체로 무난함.	기본계획에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사후 관리	시군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일부 대응할 수 있음.	사업준공 후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관리비를 별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함.(시군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존재) - 마을지도자와 같은 사람을 키우는 역량강화 S/W가 취약.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면담조사에 의함.

## 2.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

### 2.1. 사업 분야별 집행관리의 특징과 개선사항

#### (1) 농식품생산·유통 분야

- 농식품생산·유통 분야의 자본보조사업은 주로 농기계·장비 구입 또는 농업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중장기 농정 방향에 따라 개별경영체 지원보다는 공동이용조직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은 공공서비스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 또는 농작업대행작업을 수행함.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은 농업생산조직 단위의 규모경제를 추구함.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과수생산유통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등은 농산물유통조직 단위의 규모경제를 추구함.
  - 원예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등은 자본재 투입이 큰 농업법인의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 농식품생산·유통 분야의 자본보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제기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지원제한 완화 : 개별경영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 신청금액에 비하여 실제 필요한 시설·장비가 많으므로, 지원제한 지침(동일 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원칙적 신청 불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예비사업자 제도 도입 : 고정시설 건설사업 등은 사업자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본사업 선정에 앞서 전년도에 예비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추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 선정기간 단축 : 사업 신청 후 선정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서 선정탈락 시에 차기 자체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회계관리의 유연성 적용 : 예산집행의 당년도 사업비를 목표보다 미집행한 경우에 사업비가 삭감되므로 부적정 집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집행의 불용 또는 이월 문제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 따라서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회계관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 시설공사업체의 연속성 : 시설공사 시행주체를 선정할 때 공개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여 기존 시설 설치 업체가 아닌 다른 시공업체가 선정될 경우에 추후 A/S나 시설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시공업체에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성과평가에 의한 추가지원 : 자본보조사업 시행 후에 부대시설 또는 추가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 (2) 농촌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정비 분야

- 농촌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정비 분야의 자본보조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사업 또는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농촌지역SOC 정비사업 등이며, 사업의 성격상 농식품부 외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확장할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주로 마을기업(농업법인)이나 농촌융복합산업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가공·포장시설 및 장비 설치 또는 포장디자인 등을 지원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시·군이 사업시행자로서 세부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일괄수탁 받아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식임.
- 농촌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정비 분야의 자본보조사업은 각각의 사업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제기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지원사업의 홍보 확대 : 농촌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수행되므로 농촌주민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행정에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 사업의 자율성 부여 : 사업 공고 후 계획서 제출하는 동안에 사업지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 후에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변경시 절차 간소화 : 생활SOC사업을 복합화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지자체 현장의 요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업 변경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초기 예산의 배정 최소화 규정 :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획 단계에는 초기 예산을 적게 배정함으로써 예산 이월 또는 미집행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생활SOC시설의 사후관리 : 시설 등의 준공 후에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관리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2.2. 사업 주체별 집행관리의 개선사항

(1) 개별농업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세한 농업경영체는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 농업경영체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게 양식을 간소화하거나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와 함께 일괄 작성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소규모 설비에 대한 자부담 기준 완화 : 소규모의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을 완료해야 보조금이 입금되어 공사가 발주되는 실정으므로 사업 착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음.
  - 회계관리 업체의 공동이용 : 농업경영체는 자체적으로 회계관리 담당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군이 공신력 있는 회계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함.

(2) 공공기관·단체 : 지자체, 농어촌공사(사업수탁), 농협

- 공공기관·단체는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사업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편이지만, 지자체 농정담당자의 역량 제고 및 국고보조시설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농식품사업과 타부처 사업의 연계 : 농촌지역에도 생활SOC 복합화 트렌드에 따라 타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으나(특히 복지분야 사업), 시·군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타과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사업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많음.
  - 지자체 농정담당자의 역량 : 시·군 농정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사업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소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국고보조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 국고보조시설의 준공 후에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관리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지침 모호, 사후관리, 후속지원 등의 애로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며, 또한 현재의 시·군행정이 전담하기에는 제약이 많으므로, 보조사업관리 중간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조직 설치 : 농림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중간관리조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로 중간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컨설팅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2.3. 총괄 및 시사점

- 농식품 분야의 자본보조사업은 인프라 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지자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신청과 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식품보조사업은 시설 지원 신청이 많으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액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상존하는 실정임.
  - 시설규모를 지원금액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부실사업화될 위험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족한 국가보조사업은 시설 건축에 투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 보조사업 시행 후에도 시설 보관을 위한 후속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경비(경상보조) 등의 후속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음.
- 농촌생활환경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자체의 주민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지만, 시·군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임.
  - 농업인들은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우므로 시·군에서 수시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쌍방향 정보 전달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함.
  - 시·군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희망자를 모집하여 사업지침에 따른 신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성과평가지시스템 및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나 지자체 등이 사업자

- 로 선정되어 운영해야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농식품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의 투입재 선택 및 산출 실적 변화, 농업경영의 혁신 활동 내용, 농업의 공익가치 창출 수준 등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정량적 평가기법을 응용한 심층분석이 필요함.
  - 농식품보조사업의 위험관리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보조금의 부적정집행이나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음.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특성과 수혜자 성격에 관한 분석이 필요함.

## 제 6 장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 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기본방향

- 현 시점에서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 지침과 분야별 국고보조사업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 둘째, 지방자치 제도의 틀 안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며,
  - 셋째, 농정 방향에 따라 보조사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보다 많은 편익이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위와 같은 인식 하에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음.
  - (1) 보조금 집행관리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정비
    - 농식품보조사업을 기획·집행하는 행정담당자가 보조금에 대한 엄정한 인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관리지침을 제도화해야 함.

- 현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야 함.

(2)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적극 활용

- 우리나라는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검토에 대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세부사업별 검토 내용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 과정 단위로 효율성·적정성 기준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식품보조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수혜규모, 비용 등을 DB로 구축하고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3)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

- 보조금 부정수급은 기본적으로 관리주체나 수혜자가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므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혹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시스템 구축

- 국고보조금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사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용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함.
- 농식품보조사업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예: 시군농업발전위원회)가 확립되어야 함.

(5)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집행관리 역량 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부적정한 집행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및 역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lt;그림 6-1&gt; 농식품보조금 집행관리 정책 체계도

구분	정책 방향	정책 수단
기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 마련</li> <li>• 국고보조금 관리역량 강화 (조직 및 인사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제도 정비</li> </ul>
예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 범위 정비</li> <li>• 보조(기준, 차등) 비율 정비</li> <li>•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li> <li>• 국고보조사업의 관행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중복사업 통합</li> <li>• 포괄보조금 제도 확립</li> <li>•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li> <li>• 유사사업의 통일된 보조율 적용</li> <li>• 지방재정부담심의회 구속력 확보</li> <li>• 보조금 정보시스템의 연계 강화</li> <li>• 협업 성과지표 마련</li> </ul>
집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의 목표/성과 지표를 통한 체계적 관리</li> <li>• 평가 결과에 의한 사업선정 및 예산 배분</li> <li>• 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li> <li>•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지표 마련</li> <li>• 사업 선정의 투명성 강화</li> <li>•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적극 활용</li> <li>• 보조금 집행의 예측가능성 강화</li> <li>• 보조금 집행 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의 관리 강화</li> <li>• 보조금 집행관리 체계의 단순화</li> <li>•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li> </ul>

자료 : 저자 작성.

## 2.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2.1. 보조사업 관리법제 정비: 보조금관리법, 농식품재정사업관리규정

-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의 보완
  - 소형 국고보조사업의 계속 지원 : 국고보조사업의 대형화(유사사업 통폐합) 추세에 따라 소액 지원이 거의 소멸된 실정이며, 지방비 사업이 요구되지만 시·군농정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농촌에는 일정 부분의 소형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의 복잡성 및 성과 발현의 지연 등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국고보조율의 차등적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 역량을 반영한 지원시스템 확립 : 농업재해보험 가입 등 기본적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며, 나아가 이러한 경영체 비율이 높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지자체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제도화함.
  - 보조사업자 평가시스템 개선 : 건실한 농업경영체가 활발하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자부담 능력보다는 경영실적과 사업확장성을 높게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함.
  
- 농촌지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및 추진방식에 대한 고려
  - 지방비 매칭방식의 재검토 :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재정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시·군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광역지자체의 사업 추진도 필요함.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부처간 협력 : 농촌생활SOC 분야는 타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시·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타부처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사업의 연계를 적극 권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정보의 부처간 공유
  - 보조금관리위원회 활성화 :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복지부, 농식품부 등 보조금 규모가 큰 12개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부처별·분야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집행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적정 요인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개선 : ‘e나라도움’은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없으며, 검색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지적됨.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2021년 9월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로 나타났음.

## 2.2. 보조사업 집행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 농식품보조사업 계획 수립의 효과성 제고
  - 중앙정부의 현장지향형 사업 설계 : 농식품정책사업 중에는 중앙정부의 의욕이 강하여 현장의 실천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이 존재하며, 특히 정책사업 간의 유사사업과 연계되지 못하여 사업효과에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지향의 사업계획이 요구됨.
  - 지자체의 사업계획 역량 강화 : 맞춤형농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공통된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지자체 농정담당자의 역량이 적극 발휘되어야 함.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발전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사업 설계 강화로 변경 최소화 : 중앙정부의 사업 공고 후에 사업자 선정

을 거쳐 지자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사업시행 기준이나 추진 절차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여 시행착오를 초래하므로, 사업설계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함.

<표 6-1>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단계별 비효율성 요인과 고려사항

단계 구분		비효율성 요인	고려사항
계획 수립	사업 계획	• 사업 예측의 부정확성 • 사업간 연계 부족	• 사업계획의 실효성 확보 • 사업관련 정보 교환
	계획 변경	• 사업 세부설계 미흡 •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 • 민간 부문의 계획 변경	• 계획 대비 성과평가 철저 • 사업계획의 유연성 부여
집행 관리	사업 신청	• 사업 안내/홍보 부족 • 관련 서류의 복잡 난해	• 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 • 관련서류 및 절차 간소화
	자금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 지방비 매칭 미흡 • 추진절차 기간의 과다 소요	• 보조금 제도의 점진 개선
	회계 정산	• 용도의 지출 • 회계관리 소홀 • 정산 후 불용액 발생	•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 불용액의 보조금 차감
	비통제 요인	• 부적격자 부정수급 발생 • 부적절한 회계 처리	• 부적정 지출 및 부정수급 경고의 실효성 제고
사후 관리	시설장비 점검	• 자산관리 부실 • 목적사업 외 사용	• 시설관리의 정기적 검사 • 운영관리비 책정(조례 등)
	비통제 요인	• 실행실적 미제시 • 성과 평가의 실효성 확인	• 중장기적인 사업효과 점검

자료: 저자 작성.

####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의 비효율적 요인의 개선

- 보조사업 정보를 다양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정보비대칭 해소로 공정한 기회 부여
-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사업자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아직도 농업 보조금이 일부 농가에 중복·편중 지원되는 비효율적인 관행 불식

- 보조금 지원단가의 현실성 확보 : 조달청 가격에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하며, 사업시행시에 표준가격 지표를 마련하여 준수토록 권장함. 또한 보조사업 중요 시설·기계에 대해 사후 가치 및 품질 평가 후 기준미달시 보조금을 축소, 정률 보조를 정액보조로 전환, 공동구입 시스템화 등 검토
  - 사업신청 서류의 간소화 : 행정의 간소화 추세에 맞춰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된 담보 제공이나 서류의 과도한 요구를 지양해야 함.
  - 사업추진 절차의 간소화 : 사업지침에서 보조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지원사업의 경우에 복잡한 절차와 과정에 따른 어려움과 비효율성이 제기됨.
  - 지자체의 집행관리 자율성 부여 : 정책사업의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에 대한 융통성 부여 : 획일적 기준을 지양하고 맞춤형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현장기관의 재량을 확대하여 농업경영체 등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
  - 사업집행방식변경 ; 농협이나 조달청 등을 통한 위탁을 직접 수행 또는 공동수행으로 전환하여 수수료 절감, 농업인 요구 반영, 현장 신속 대응 도모
  -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 애그릭스(AgriX)와 e나라도움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실천되도록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 전산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해 시·군에 시스템 사용 도움 인력을 지원 필요

####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보조사업 운영관련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 농업경영체 등이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단체를 육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조직화된 후 행정업무 비중이 높아 농업기술·경영지도가 미흡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반행정과 통합됨

으로써 농정사업의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민간컨설팅업체에 대한 농식품사업 컨설팅 비용 지원 : 현행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농식품보조사업 컨설팅을 포함하고, 농업경영체의 보조사업비에 비용을 지원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함.
-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조직 육성 : 농업경영체가 규모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맞춰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조직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2019년에 사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주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술컨설팅 및 중소기업 인력연수 사업 등을 담당함.

- 농식품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및 시설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자체평가의 충실 : 사업부서 및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 지표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응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의거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에 대응하여 보조사업 성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충실해야 함.
  - 시설물과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철저 :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나 기계장비는 농업인들이 가동하고 유지관리하게 되므로 자칫 관리역량이 부족하거나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 집행관리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서의 비효율 요인 점검 정례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별 ‘사업시행지침서’를 지자체와 현장에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 규정 등을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

### 2.3. 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3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보조사업 성격 : 사업 자체의 특성으로, 일회성 사업, 전달체계가 복잡한 사업, 사업주체가 민간인 사업, 자본보조로 시설물 규모가 큰 사업, 지역적 공간 범위가 넓은 사업 등으로 구분함.
  -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 보조사업자가 다수 존재한 가운데 일부가 선정된 것인지, 보조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등으로 구분함.
  - 사업관리 측면 : 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낮은 사업, 관리해야 할 내역사업 수가 많은 사업, 담당공무원의 관리역량이 낮은 사업,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직접 현장관리가 어려운 사업 등으로 구분함.

<표 6-2> 농식품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구분	선행연구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본연구 의견조사결과
사업계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형식적</li> <li>• 허위문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금액 과다 책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에 의존</li> <li>• 사업계획 과육</li> </ul>
결정/교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미달</li> <li>• 지자체와 담합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류 허위 작성</li> <li>• 자격검증 소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서류 작성</li> <li>• 신청자격 검증 소홀</li> </ul>
운용/ 집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수급</li> <li>• 횡령</li> <li>• 허위(공문서) 문서</li> <li>• 부실집행</li> <li>• 뇌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 없이 편취</li> <li>• 보조금 무단사용</li> <li>• 부적정 집행</li> <li>• 목적외 사용</li> <li>• 지급자 부적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중복사업 수행</li> <li>• 허위 근거자료 인용</li> <li>• 사업단가 과다 책정</li> <li>• 목적외사업 사용</li> <li>• 회계서류 조작</li> <li>• 부실 집행</li> </ul>
정산/ 사후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정산 허술</li> <li>• 시설 장비 등 유지 관리 소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 부적정</li> <li>• 현장실사 태만</li> <li>• 시설관리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형식적 정산</li> <li>• 부적정 자금 미회수</li> <li>• 시설관리 소홀</li> </ul>

자료: 저자 작성.

- 보조금 부정수급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제 적용
  - 차등관리제 원칙 :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강화된 수준의 관리 감독을 실행하고,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식임.
  - 보조사업 위험관리 지표 평가 : 사업별로 낭비·남용, 부정·기망, 오류, 부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함.
  - 고위험 사업의 관리 : 사업자 선정 후에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시행 후에는 집행점검을 의무화하며 매년 일정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접수·처리 및 예방 교육 강화
  - 주요사업, 주요 취약 요인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적인 서류·현장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의심건 처리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체계화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외에 농식품부에 설치된 부정수급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정수급 또는 부정수급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
  - ※ 신고자나 제안자 또는 부서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예산,포상 등) 부여
  - 부정수급 예방교육 강화 : 국고보조금 수급자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제도의 의미 및 부정수급의 부적적성에 대한 윤리 문제를 포함하여 보조금의 용도외사용, 주요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조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 ※ 부정수급 예방교육 사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020년 11월 18~20일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함. 교육 대상은 100억원 이상의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e-나라도움에 ‘탐지 및 특수관계’로 감지된 사업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하였음.

-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
  - 애그릭스(AgriX) 보강 : 자부담 대납 등을 조장하는 부정행위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애그릭스(AgriX) 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정보등록·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제함.
  - 부정수급 위험대상 적발시스템 구축 : 부정수급 징후 모니터링시스템에 농기계·농자재·시설 등의 평균단가나 최근 거래가를 입력하여 DB를 구축하고, 실제 사업실적 보고시 지급한 단가를 입력하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현장점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서 적발하도록 함.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강화
  - 일반적 조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적발 내용에 따라 과다금액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함.
  - 부정수급 반복시 영구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삼진 아웃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강화함.
  - 부정수급 사후관리 :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제한을 계속 유지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2.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비: 통합시스템 연계, DB 확충 등

- 애그릭스(AgriX)와 e나라도움 및 e호조 등의 연계 활용방안 모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특징 : 농업인이 관련 사업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신청에서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임.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특징 : 중앙부처·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 → 사업신청 → 신청자 자격 검증 → 사업자 선정 → 결과 통지 등의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특징 :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12개 분야 74개 업무에 사용됨.

## ○ 애그릭스(AgriX) 시스템 및 DB 확충

- AgriX의 문제점과 한계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기관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시스템 기능 확장에도 애로사항이 존재함.
  - 중장기 추진과제 :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행정자료·빅데이터의 활용,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고 가치 데이터 적극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 농식품부 계획 : 2021년에 차세대 AgriX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농림사업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현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대국민 포털 서비스임.

## ○ 지자체의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

- 기본 방향 : 지자체 단위로 구축중인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면서 농식품부의 애그릭스(AgriX)와 연계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기반 구축 : 2019년부터 시·군 자체적으로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자체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함.
- ※ 지자체의 S/W개발 사례 : 익산시 ‘농업보조금이력관리시스템’(2019년), 영주시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2020년), 남원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2020년), 청양군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2021년), 청도군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2021년)

## ○ 2023년 개통 예정인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과 연계 방안 모색

- 시스템 구축 목표 :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재정 업무 처리와 지방재정 관련 주민 맞춤형 정보공개 및 서비스가 확대되며,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기재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의 전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전망 :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 지자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중임.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사업관리(예산편성, 자금운영, 지방회계, 자산, 채무관리, 결산 등)와 지방보조금관리(사업수행관리, 부정예방관리, 금융정보관리 등)를 주축으로 내부연계(행정정보시스템 등)와 외부연계(e나라도움 등) 및 대민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임.

## 2.5. 보조사업 관리주체 간의 협력 체계화 및 역량 강화

- 보조사업 관리주체(지자체, 유관기관, 사업현장)와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 불균형 : 정보 불균형은 사업기획과 예산편성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편성된 예산을 교부하고 지자체가 교부받은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함.
  - 중앙부처의 정보 제약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전체 보조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시 역선택하게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의 부적정 위험 :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앙부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정수급·부실집행·횡령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 관리주체 간의 정보 불균형을 줄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공개, 현장의견 수렴 등을 비롯하여 보조사업통합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이 요구됨.
- 농식품보조사업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 관련주체 의식 교육 : 지자체공무원, 농업인단체, 영농조직, 농업경영체 등 보조사업 관련주체들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관리책임제 : 각 지자체의 농정담당자로 하여금 보조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일관성 있게 사업시행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관리책임제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함.
  - 사후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 시·군 등은 정부지원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농협·축협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농식품보조사업 추진
-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 제시 :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5개년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실체는 농식품보조사업 시행으로 나타나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농정 비전으로 정착되어야 함.
  - 시·군 농정의 계획적 추진 : 지자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에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계획성 있고 투명한 집행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 농정담당자의 행정 역량 강화
- 시·군 농정담당자의 처우 개선 : 대부분의 시·군에서 농정업무 보직을 회피하는 등 농정담당자의 행정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량 조정 및 특근수당 등의 지원조치가 필요함.
  - 현장농정 우수공무원 포상제 확대 실시 :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식품부장관 포상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함.
  - 농정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 국고보조금 및 농식품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함.
- 농식품보조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지역설명회 개최 : 농식품부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군에는 상담요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사업설명을 담당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선택적 홍보 : 시·군에서는 신청자가 많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함.
- 전방위적인 정책사업 홍보 : 농업인들이 농식품보조사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비롯하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로 홍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농식품사업 정보제공 개선 설문조사 보고서』, 2021)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농식품보조사업 정보 제공, 보조사업 정보전달 주체에 대한 교육 운영, 보조사업 안내책자 제작 및 농가 개별 발송,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정보 제공 등의 홍보 강화를 제안함.

- 신규사업 발굴,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체계 정립
  - 농식품분야 지원사업 전문가풀을 형성하고 상호 교류, 소통 창구 마련
  - 정기적인 모임이나 SNS를 통해 상시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간조직을 설치하여 분과별 모임, 전체 모임, 임시 모임 등을 활성화함.
- \* 사례 : 전북 완주의 경우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현장밀착형 행정지원과 전문가 협력시스템, 주민역량 강화 도모

### 3.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단계별 관리전략과 실천방안

-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단계는 ①사업 설계, ②사업자 선정 및 교부, ③사업 이행 집행관리, ④사업 완료와 회계정산, ⑤사후관리 등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바람직한 관리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의 영역과 관리 전략에 대하여 선행연구(감사연구원 오윤섭, 2015)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단계별 핵심 영역과 관리전략을 요약하면 <표 6-3>과 같음.

<표 6-3>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의 영역과 관리 전략

단계	핵심관리 영역	위험 유형	관리 전략
사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 설계</li> <li>•보조사업 예산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적정 사업 선정</li> <li>•재원확보 실패</li> <li>•예산규모 과다·과소 편성</li> <li>•유사사업 중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침 등 최적의 제도 설계</li> <li>•신청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요구액 검토</li> </ul>
선정 및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자 선정</li> <li>•교부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선정과정 부적정</li> <li>•교부조건 설정 및 교부 결정의 부적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 선정과정의 합리화</li> <li>•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의 최적 설계</li> <li>•기타 필요한 규정 제정</li> <li>•교부조건 이행관리</li> </ul>
사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집행관리</li> <li>•교부자 관리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외 사용</li> <li>•임의변경</li> <li>•사업규정, 교부조건 미 이행</li> <li>•집행관리 업무 태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감독 수행체계 구축</li> <li>•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li> <li>•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보조금 교부관리 등)</li> </ul>
사업 완료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납 및 교부</li> <li>•실적보고서 검토</li> <li>•정산 후 처리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횡령 및 전용</li> <li>•허위 보고</li> <li>•정산 부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보고서 검사</li> <li>•출납 및 교부행위 점검</li> <li>•정산결과 검사 및 적절한 사후 조치</li> </ul>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평가 및 환류</li> <li>•보조사업자산의 점검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부실</li> <li>•평가결과의 환류 부실</li> <li>•자산관리의 부실</li> <li>•보조사업 자산의 용도 외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운영 (방법, 평가단구성, 평가실시)</li> <li>•평가정보 공개 및 차년도 교부결정에 환류</li> <li>•체계적인 보조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 운영</li> </ul>

자료: 오윤섭 외(『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에서 수정 보완.

### 3.1. 사업설계 단계

- 보조사업 설계 단계의 관리영역별 점검항목은 사업계획과 사업규모 확정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계획 분야에서는 목적의 명확성과 구체성, 계획 적정성, 추진 효율성 등이, 사업규모 확정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필요성, 지원규모 적정성 등이 주요 검토항목임.

<표 6-4> 보조사업 설계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항목

관리영역	점검기준	점검사항
사업 계획	목적의 명확성,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의 관리자나 이해자가 이해하기 쉬운가?</li> <li>•사업 목적이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li> </ul>
	계획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내용은 기본계획과 충돌하지 않는가?</li> <li>•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li> <li>•현장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반영하였는가?</li> <li>•지원 시기와 예산 규모는 적정한가?</li> </ul>
	추진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 방식(보조 형태, 방식)은 효율적인가?</li> <li>•추진 체계는 효율적인가?</li> </ul>
	계획 준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관련한 민원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민원 해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li> <li>•사업 추진에 지방비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확보되었는가?</li> <li>•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사업 준비는 적절한가?</li> </ul>
사업 규모 확정	재정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역할이 필요한가?</li> <li>•민간 부문에서 서비스의 공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가?</li> <li>•다른 명목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가?</li> <li>•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가?</li> </ul>
	지원규모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 예산으로 수행 가능한가?</li> <li>•보조사업자(민간보조사업)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부담비율을 설정하였는가?</li> <li>•보조율은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li> </ul>

자료 : 오윤섭 외(2015)에서 수정 보완.

- 보조사업 설계 단계의 주요 관리 위험은 보조사업의 예산과 사업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됨.
  - 중앙정부가 농업·농촌의 여건이나 사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과 지향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통지침을 설계하는 문제가 지적됨.
  - 지자체에서는 농민단체 요구로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사업(지방비보조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유사한 국고보조사업과의 사업방식 차이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음.
  
- 보조사업 설계 단계의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사업신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및 사후의 불용액 발생 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설계함.
  - 농식품보조사업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설계함으로써 법적 뒷받침을 갖는 동시에 농정 방향 및 중장기 비전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부서의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및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 중앙부서에서는 대형사업으로 설계하려는 경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천성 높은 소액사업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려함.
  - 유사사업과 사업시행지침에 표준사업비 및 보조금 상한 등과 같은 기준에 대해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함.
  -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비예산 편성 시에 관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 및 점검을 이행하도록 명시함. 특히 지자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중복 또는 상충성을 점검함.
  - 지자체의 농식품보조사업 관련예산 편성 시에 애그릭스(AgriX)를 기본으로 e나라도움 및 e호조와 연계하여 보조사업의 중복 또는 상충성을 점검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함.

### 3.2. 사업자 선정 · 교부 단계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자금교부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은 사업자 공모·선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교부결정·보조금 지급에서의 적정성과 신뢰성 및 절차 준수 등임.

<표 6-5>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관리 영역	점검사항
사업자 공모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은 적절한가?</li> <li>•보조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안내/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li> <li>•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는 적절한가?</li> <li>•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적절한가?</li> <li>•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li> <li>•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li> <li>•자기자금을 재원으로 사업경영이 가능하여 보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li> <li>•이미 사업을 집행완료한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li> </ul>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지급	<p>&lt;교부 검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없는가?</li> <li>•사업의 목적 및 내용(사업규모, 시행시기, 추진방법 등)은 적정한가?</li> <li>•신청의 시기가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li> <li>•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li> <li>•자기자금 부담 능력은 충분한가?</li> <li>•교부조건 이행점검은 적절한가?</li> <li>•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집행 실적은 적절한가?</li> <li>•보조금 책정 기준이 되는 보조단위 및 수치는 신뢰할 수 있는가?</li> </ul> <p>&lt;보조금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매년 보조한 것은 없는가?</li> <li>•보조금액 계획에 착오는 없는가?</li> <li>•보조금 교부결정을 지연한 것은 없는가?</li> <li>•교부결정 통지를 지연한 것은 없는가?</li> <li>•교부 조건은 합리적인가?</li> </ul>

자료 : 오윤섭 외(2015)에서 수정 보완.

-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단계의 주요 관리위험은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적정 위험, 자금교부조건 설정 미흡, 교부 결정의 부적정 위험 등임.
  - 교부 단계에서 중앙부서(또는 지자체)와 보조사업자 간에 정보 비대칭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교부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수급의 위험요인이 됨.
  
-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단계의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을 합리화하고,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것임.
  - 보조사업의 추진내용을 각종 매체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충분히 안내·홍보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사업자 선정에 앞서 선정 기준이 적절하고 절차는 공정하며 결정은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예: 재해보험 가입)를 이행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 선정 과정의 부정수급 요인, 즉, 선정기준 조작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함.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함.
  - 선정 과정에 농업경영체 DB와 애그릭스(AgriX)를 연계하여 경영정보와 수급이력 조회 등을 점검함으로써 자격 검증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함.
  - 농업경영체 등의 보조사업 신청 시에 필요한 자원마련 계획 및 보조사업 수행 실적 등을 엄밀히 검토함.
  - 보조사업자의 자금 신청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을 수정함.
  - 동일 경영체에 유사자금을 반복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성과 평가 후의 결과를 반영하고 지원 횟수를 제한함.



### 3.3. 사업 이행 · 집행관리 단계

- 보조사업 집행 단계의 관리 영역은 보조금 교부자가 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영역이며, 보조사업자 관리영역은 사업진행, 사업비 분담, 의무이행 영역으로 세분할 수 있음.

<표 6-6> 보조사업 집행관리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관리 영역	점검사항
보조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였는가?</li> <li>• 교부결정 내용대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li> <li>•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가?</li> <li>• 사업계획 변경 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가?</li> <li>• 무단히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 또는 타인에게 인계한 것은 있는가?</li> <li>• 예산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li> </ul>
사업비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없는가?</li> <li>• 자기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li> <li>• 자기 부담액이 없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예치한 것은 없는가?</li> <li>• 융자금 등 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li> </ul>
의무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i> <li>•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전용한 것은 없는가?</li> <li>• 시설보조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것은 없는가?</li> <li>•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li> </ul>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진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li> <li>•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li> <li>•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을 부당히 승인한 것은 없는가?</li> <li>• 사업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li> <li>• 기타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정한가?</li> <li>•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가?</li> </ul>

자료 : 오윤섭 외(2015)에서 수정 보완.

- 보조사업 이행·집행관리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관리위험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서 비롯됨.
  -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내용의 임의변경, 사업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의 미이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 보조금 교부자 차원에서도 교부결정 이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음.
  
- 보조사업 이행·집행관리 단계의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보조금 교부자에 대해 사업 진행사항, 사업비 분담내용, 의무이행 등 보조사업 집행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리감독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보조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사업에 착수하고 교부결정 내용대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함.
  -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과 융자금을 확보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함.
  - 보조금 횡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정된 용도의 사용, 사적 목적 유용, 보조금 무단인출 등의 사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
  - 보조금 편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격 부풀리기, 명의 대여, 과다 계상, 자부담 대납 등의 사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
  - 보조금 부실집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혼용, 보조금과 자부담금 계좌 미구분, 기간후 사용 등의 사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
  - 집행 단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애그릭스(AgriX)에 지원제한 대상, 기계장비 가격정보 등 보조사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등록·조회시스템을 구축함.
  - ※ 지자체 입찰, 농협의 계통구매 등을 통한 기계장비 거래가격 정보를 애그릭스(AgriX)에서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가격 거래를 유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음.

### 3.4. 사업완료·회계정산 단계

- 보조사업 완료·정산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은 출납 및 교부 업무, 실적보고서 검토 업무, 정산 후 처리업무 등임.

<표 6-7> 보조사업 정산처리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관리 영역	점검사항
출납 및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기관에서 보조금 교부 행위는 적절했는가?</li> <li>•교부결정의 취소 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li> </ul>
실적보고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완료 즉시 또는 회계연도말까지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li> <li>•실적보고서의 검사는 적절했는가?</li> <li>•정산금액의 산정은 적정한가?(재원별 경비계산, 보조금 사용내역, 과부족액 계산)</li> <li>•보조금 금액의 확정 조치는 명확한가?</li> </ul>
정산 후 처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정산잔액은 모두 회수되었는가?</li> <li>•보조금의 반환조치 태만으로 회수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없는가?</li> <li>•상계조치가 가능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없는가?</li> <li>•강제징수 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li> </ul>

자료 : 오윤섭 외(2015)에서 수정 보완.

- 보조사업 완료·정산 단계의 관리 위험은 대부분 집행관리 단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실적(정산)보고에 그 경로가 드러나며, 보조금 교부자(중앙부서 또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
  - 보조금의 정산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관리위험은 교부자의 보조금 횡령 및 전용위험,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허위보고 위험이나 정산부실 위험 등이 해당됨.

- 보조사업 완료·정산 단계의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교부자의 출납 및 교부행위의 적절성 점검, 실적보고서 점검, 그리고 점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임.
  -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즉시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정산을 실시함.
  - 비효율적 운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임의 변경, 계약 부적정, 성과검증 소홀, 사업관리 기준, 성과관리 불철저 등의 사례를 점검함.
  - 정산관리 부적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증빙서류 미비, 정산보고서 작성 소홀, 정산보고서 부실 검증, 정산 지연 등의 사례를 점검함.
  - 보조금 정산 후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하여 회수하고 차년도 집행 또는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함.

### 3.5. 사후관리 단계

-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은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환류, 그리고 보조사업 자산관리 등임.

<표 6-8>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의 핵심관리 영역별 점검사항

관리 영역	점검사항
사업평가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완료 후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li> <li>•사업운영의 불합리로 인한 사업 부진은 없는가?</li> <li>•필요한 행정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li> <li>•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없는가?</li> <li>•부당하게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것은 없는가?</li> <li>•사업성과가 없음에도 행정지원을 계속한 것은 없는가?</li> </ul>
보조사업 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자산은 파악(현황 및 관리실태)되고 있는가?</li> <li>•보조사업자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적정한가?</li> <li>•처분제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담보, 임대, 매각 등)한 사항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가?</li> </ul>

자료 : 오윤섭 외(2015)에서 수정 보완.

-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의 주요 위험요인은 평가 부실, 평가결과의 환류 미흡, 자산관리의 부실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방식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감사원의 감사사례 분석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됨.
  - 따라서 사업평가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역량 정보를 축적하여 차년도 역선택의 위험을 경감하고,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위험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보조사업 완료·정산 단계의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단계의 통제 목적은 평가와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그리고 보조사업 자산 운영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임.
  - 보조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운영과 아울러 평가결과가 차기 예산편성에 환류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립함.
  - 보조사업의 부적정한 운영이나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엄격하게 관리함.
  - 보조사업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도화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 중요재산 정보를 애그릭스(AgriX)에 등록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동 상황을 명확히 입력하여 관리함.
  - 보조사업 취득재산에 대한 안내표지판(건축물) 및 스티커(기계, 장비)에 국고보조재산임을 철저히 명시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함.
  - 보조사업 취득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부기등기함으로써 매매·담보 제공시에 거래 상대방에게 등기사항을 공개함.



## 부록 1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안 관련 참고자료<sup>10</sup>

차 례	
1. 프랑스의 예산 지원 체계	5. 농업분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2.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연구	6. 영국의 농촌발전정책 추진방식과 농촌 역량발전과 관련한 시사점
3.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7.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4.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 및 등록정보 활용 조사 결과	

### 1. 프랑스의 예산 지원 체계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2021.6)

#### □ 개요

- 프랑스의 국내 농정은 지방행정 체계에 따라 수행함.
  - 농정체계는 EU(공동농업정책)-국가(중앙정부, 농림부)-레지옹의 농림부 지방사무국(DRAAF) - 데파르트망의 부처공동 지방사무국(DDTM)
  - \* 지방사무국은 국가사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다름. 대부분 농정은 국가사무임.
- 농업발전계획은 데파르트망에 설치된 농업지도위원회가 수립하는데, 위원회는 다양한 농업 및 농촌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참여함.
  - \* 농업지도위원회는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배정된 정책자금

<sup>10</sup> 부록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담당: 박유천 사무관, 김문석 주무관)에서 정리한 결과를 연구책임자가 편집하였음.

배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농업지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농촌법전에 근거해 농림부령을 통해 정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데파르트망 의회의 조례를 따름. 농업지도위원회는 프레페(데파르트망의 행정수반)가 의장을 맡으며, 지역 내 농업·농촌 관련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 범 농업계를 망라해 구성됨.

- 농업지도위원회가 수립한 지역농업발전계획(PDA)를 토대로 DDTM은 농업정책 자금의 분배와 계획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협의함.
- 농업지도위원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 및 구조분과 위원회는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각종 농업정책자금의 수혜대상자들을 심의·선정하는 기구로서 후보 농가들이 제출한 각종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함.
- 농업지도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 제출한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데, 지역농업발전계획은 정책자금의 지역 간 배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정책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 농정예산 취급 기관

- 유럽공동농업정책의 1, 2축과 관련된 보조금은 지불청이 담당하며, 시장관련 정책은 통합 공동시장 조직이 담당함.
  - 농업구조정책과 관련된 정책(청년영농정착, 농업경영이양 및 승계, 투자계획 등)은 농업경영구조개선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영농후계자 정착지원, 농기계근대화 지원, 경영체 이양, 직업전환, 토지정비 등 농업 경영구조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금은 서류작성과 등록, 신청에서 각 데파르트망에 설치된 농업경영구조개선협회(ADSEA)가 역할을 담당함.
  - ADSEA는 1962년 농업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민간조직으로서 농업경영구조개선과 관련한 청년영농 정착, 농업경영 이양 및 승계, 투자계획 등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농업경영개선위원회(ADSEA)는 2011년부터 농민들은 물론 지자체와 농



업관련기관들을 상대로 컨설팅과 연구·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활동 분야도 국토정비, 농촌공간관리, 환경 및 지역개발분야로 확대됨, 한편 농민들은 ADSEA 외에도 농업회의소(기술컨설팅), 일반회계법인 또는 컨설팅회사(경영회계 부분), 농업은행에서 서류작성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농업경영구조개선위원회(ADSEA)는 농정담당 부서(DDTM)에 접수된 서류들은 농업지도위원회로 넘겨져 매달 1회씩 열리는 농업지도위원회의 ‘경제 및 구조분과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함.
  - 크레디 아그리폴 등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은 제출서류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농업지도위원회에 제출함.
  - 보조금 성격의 지원자금의 경우 농업지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프레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ADSEA를 통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함.
  - 저리융자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취급은행이 DDTM에 금융지원 승낙을 요청하면 승낙서를 토대로 신청자에게 저리자금을 융자함.

## 2.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외, 2014년)

### □ 보조금 집행관리 체계 개편

- 보조금 집행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 첫째, 보조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 부실.
  - 둘째,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사업신청기관의 검토 미흡.
  - 셋째,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미흡.
  - 넷째,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조사업 집행을 전담할 수 있는 중

양정부 산하의 지방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 문제점

- 소비자 부담형 농정에서 납세자 부담형 농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배분을 위한 행정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 정책으로의 변화는 정책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할 일선기관의 확대·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조직은 종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보조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부실함.
  - 선진국의 집행인력과 비교 시, 현행 인력으로는 직불제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 및 인원의 확대가 필요함. 일본의 농가 수는 우리나라의 1.4배, 집행인력 수는 10배 수준임.

<외국과의 집행기관 인력 규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농가 수(만호)		120	170	221	53	23
집행인력	보조사업	1,454	14,000	12,700	2,300	3,500
	융자사업		8,000	2,300	-	-
집행인력 1인당 농가수(호)		825	121	147	230	66

\* 주 :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원임. (자료: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격요건,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사업신청기관의 검토가 미흡함.
  - 시·군의 '농림수산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형식적인 검증으로 중복 선정 또는 기존 사업자만 계속 선정하여 특혜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
  - 현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서식 표준화 및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기능으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즉, 농협의 금융정보 연계, 타부처의 신규시스템 연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한계가 있음.
-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함.
  -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부정행위 근절노력에 대한 유인이 부족함..

#### □ 개편방안

- Agrix 기능 확대 및 개선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부당 수령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사업별 등록정보 및 경영체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실경작자 확인 등 검증기능을 확대하고, 범정부사업복지통합망(행안부), e-유치원시스템(교육과학부) 등과 추가적으로 연계할 필요.
- 타부처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신규 보조금 사업의 정보화 추진 시 소관 법률에 타 정보활용 근거조항을 명시(병행추진)하여 행안부(주민정보), 국토해양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농협(영농기록정보), 농어촌공사(농지정보)를 연계 활용할 필요.
-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및 지자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유사·동일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함.
-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조사업 집행을 전담할 수 있는 중앙정부 산하의 지방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단기적으로 기관 신설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우선 현행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3.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외, 2015년)

#### □ 요약

- 농업경영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농가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구축 및 확보의 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대상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의 대상과 경영체 관리방안이 확립되어야 함.
- 신지식인은 농업경영체 DB구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나, 농가경영정보 DB는 통계적으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 상대방과 비교하여 비교가능한 경영지표를 제공받고 싶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으며,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이나 특용작물의 정보 비교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체정보 DB를 활용하여 농림사업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경영체 DB의 상시 관리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정보의 정확성을 재점검하고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신지식농업인 대상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은 11%에 불과했는데, 이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농업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공급업체와 컨설턴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농업컨설팅산업은 지식산업이므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향후 시장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국내 컨설팅업계는 아직 전문성이 낮으며 대부분 영세·소규모 형태이므로 이들 국내 컨설팅업계의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농업경영체 관리체계의 핵심과제는 농가(농업인)와 농업법인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향후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임.
  - 정부가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어서 이를 확장하여 2008년부터 농가등록 DB 구축에 착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
- 농업경영체정보 DB 구축의 목적은 농업경영체의 현황을 토대로 그에 알맞은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2008년부터 농가 유형별 차별화하는 ‘맞춤형 농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장래의 중요한 지역농업경영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건실한 농업법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농업경영체 유형별 경정지원제도의 방향

- 2007년에 농림부는 “농업의 주업 여부와 경제력 정도에 따라 농가를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맞춤형 농정을 통하여 전업농과 중소농에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면서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고령농에게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조기은퇴직불이나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취미·부업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함.

#### < 농가 유형별 지원 방향 >

유형	분류기준	지원방향
고 소득 전업농	소득이 도시근로자 상위 50%가구 평균소득 이상 농가로 정책 졸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규모 확대와 소득보전 정책 등의 직접적인 소득 지원은 제외</li> <li>- 민간자금 자체 확보를 위한 신용 지원, 경영기술 전문교육, 컨설팅 및 사업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등 지속 지원</li> </ul>

<p>전업농</p>	<p>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상을 실현하는 영농규모를 갖춘 농가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농가 전업농의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75%로 설정함 (우수경영체, 신지식농업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적 산업정책 대상으로 품목 개념을 방영하여 품목별 전업농을 설정할 수 있음.</li> <li>- 쌀전업농, 과수전업농, 화훼전업농, 채소·특작 전업농, 일반 밭작물전업농, 축산 전업농, 기타 전업농으로 구분</li> <li>- 재해, 수급변동 등 각종 경영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장 정보제공, 경영안정장치 보강 프로그램 지원</li> </ul>
<p>준전업농</p>	<p>정책지원과 자구노력 유도를 통해 전업농으로 성장가능한 유형,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 등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농가 기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농규모 기준 이용, 농업소득 비중, 품목군별 설정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함</li> <li>- 구체적인 정책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연령, 지역, 교육기술수준, 영농능력 등 보조지표 활용</li> <li>- 준전업농은 정책 육성대상자로 성장 가능한 농가이며, 따라서 농업경영주의 요청에 부응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경영규모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중소농</p>	<p>중소농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 - 준전업농으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경영기반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농가로, 전문경영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춘 성장가능 중소농(성장가능 중소농) * 젊은 후계농 등 전업농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층을 성장가능 중소농으로 구분 - 농업경영 이외의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거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성장한계 중소농(성장한계 중소농)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성장이 어려운 고령농 등 - 연령·교육이수 실적 등의 지표활용을 통해 성장형과 성장한계형 중소농으로 구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농업, 농외소득원 확충, 복지지원 등의 소득 안정망 구축의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명목의 직불제 확대 추진</li> <li>- 농외취업이 가능한 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향토산업육성을 통한 취업기회 및 농외소득 증대</li> <li>- 취업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공적 부조 설계의 농촌형 복지정책 확대</li> </ul>
<p>부업농 (취미농)</p>	<p>- 부업농은 증명가능한 농외소득이 전업농 소득 이상인 농가로</p>	<p>- 부업농은 농업경영의 수준에 따라 산업정책을 적용하되 필요시</p>

	<p>설정할 수 있다.</p> <p>* 농촌에 살면서 일정 영농규모를 가지고 종사하면서 주 직업은 농협직원, 교사, 공무원 등은 취미농은 대표적인 사례임</p>	<p>정책대상 그룹 중 차순위 적용을 받을 것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지원성 복지정책(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추가지원 분)과 소득정책(소득보전직불 단가 차등 또는 체감방식 적용)에 있어 차별화 필요</li> <li>- 농촌발전 측면에서 재촌주민 대상 복지정책 대상은 될 수 있음</li> </ul>
고령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고령자)으로 규정</li> <li>* 65세 이상은 고령연령을 판정하는 국제적 기준이며 각종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고령농 기준임</li> <li>- 농업의 특성상 영농가능 연령은 더 높아질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며, 농업정책적으로 다양한 고령자 소득지원 강구</li> <li>* 농가소득 및 영농종사능력 등을 부가적으로 감안하여 농촌형 특별소득 보조대상자로 선정 가능</li> </ul>
창업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사업실시요령의 창업농 기준을 적용하여 영농경력 5년 미만이고 35세 미만인 농업인으로, 영농계획 수립 등 영농종사자를 희망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에 의욕있는 청장년 적극 발굴·지도,</li> <li>-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li> </ul> <p>⇒ 자립영농정착 촉진,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 체계적 확보</p>

#### □ 농가경영정보 DB의 관리 개선 방안

- 농업경영체정보 DB구축 요지는, 첫째, 경영주·농지·재배작물 등 93개 정보를 담은 농업경영체정보 DB를 구축하여 보조금 관리부터 농가의 경영 실적까지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측면에서 낭비를 줄이고, 둘째,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의 협조를 강조하여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촉진하는 것임.
- 농업경영체정보 DB 활용방안으로는,
  - 첫째, 농업인 등이 사업관련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및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DB와 연계시키고, 개별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하여 각 경영체에게 적합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조·융자 사업의 내용, 자격요

- 건, 신청절차 등 농업인별 수혜 가능한 사업 및 자격 여부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 둘째, 농업경영체정보 DB를 기초로 농지이용·품목별 재배면적·농산물생산량 등 각종 행정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고(지역 농업통계 제공, 특화품목 명확화, 농림지원사업 계획수립시 활용 등),
  - 셋째, 각종 직불지불금 이행점검에 농업경영체정보 DB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정책지원 대상자 중에서 고위험군 추출해 이행점검함으로써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DB의 상시 관리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재점검하는데, 이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음.

#### □ 농가경영체등록제의 대상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의 추진이 필요한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하여,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괄 등록기간을 가진 후, 2010년 1월부터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됨.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용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였기에 사실상 정책대상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DB라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에 정책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경위는,
  - ① 2004년 2월에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가등록제’ 및 ‘소득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함.
  - ② 2006년 12월에 농림부가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을 확정함(고소득



-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
- ③ 2007년 8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8~11월(4개월) 동안 농업경영체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상농가 5591농가 중 4506농가가 등록을 완료함(등록률 81%).
  - ④ 2008년 6월에 농업경영체등록의 본 사업이 추진되어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함.
  - ⑤ 2009년 10월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의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상시관리 체계가 구축됨.
- 농업경영체 등록내용은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대상은 농업경영체이며 모든 농산물 및 축산물이며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등록정보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이며, 등록신청기관은 주민등록지 농관원사무소임.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등록된 자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농업소득이나 경지면적 등의 주요 자료가 결측치이거나 0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책 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법인대표자가 농업인과 이중등록될 수 있으므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가등록과 다른 별도의 관리체계가 요구됨.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정책 기초자료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입력정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정리를 통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특히 조수입이나 소득과 같은 핵심변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필요함.
    - ② 2016년부터 농업법인이 '조세특제한법' 시행령 제63조, 65조에 의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농업경영컨설팅의 대상과 경영체 관리 방안

-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 의존을 탈피,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전반에 대해 실시되는 전문컨설팅 제도임.
- 농업경영체 컨설팅 제도의 추진 경과를 보면, 1999년부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를 선정하여 컨설팅 비용 중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해오고 있음.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999년에 시작한 이후 2009년까지 10년 동안은 컨설팅 공급업체 수나 지원 농가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4년에는 1999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음.
- 최근 농업경영컨설팅이 부진한 배경으로는 종합컨설팅의 한계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특히 농업은 R&D·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 경영의 전 분야뿐만 아니라 IT, 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농업컨설팅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 실적 >

(단위 : 개소 수, %, 백만원)

구분	농업경영체 (A)	공급업체수 (B)	업체당 컨설팅 수 (A/B)	총사업비 (C)	경영체당 평균 컨설팅금액 (C/A)
2000	379	101	3.8	3,388	8.9
2003	704	78	9.0	5,696	8.1
2005	1,509	95	11.1	8,000	7.6
2008	1,200	37	32.4	9,600	8.0
2010	994	44	22.6	9,257	9.3
2012	653	66	9.8	9,720	14.9
2014	265	64	4.1	1,200	4.5

- 농업경영컨설팅의 지원목적은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컨설팅 서비스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RPC,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임.
- 컨설팅 서비스 내용은 자문비, 브랜드개발, 운영비, 홍보, 정보화,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6차산업화 등임.
- 농업경영컨설팅업체의 공모와 인증에 관해서는 6인 이상 전문인력(업체전속기준, 다른 컨설팅업체 겸직 금지 원칙)을 보유한 업체이며, 일정규모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학·연구소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한 업체를 우대함.
- 인증 절차는 컨설팅업체인증위원회(농식품부, 기관단체, 품목단체, 학계, 컨설팅전문가 등 10여명, 민간 50%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실적, 외부인력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인증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 교부, 인증업체명단 홈페이지 공지 등을 실시함.
- 신지식농업인 대상의 컨설팅 관련 의견조사 결과, 농가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기술이나 농업경영 분야에 대하여 만족 수준이 낮은편(41%)로 조사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65%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음.
-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도사업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통·마케팅이라는 의견이 49%로 가장 높았음.
- 앞으로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역시 유통·마케팅 분야가 높게 나타났음.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이

생산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앞으로는 유통·마케팅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임.

#### □ 농업경영컨설팅제도의 개선 방안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도 경영·마케팅·유통·금융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경영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이에 필요한 통찰력 있는 농업경영 컨설턴트를 작목별 및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협업체계를 갖춰야 함.
- 농촌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과 농업컨설팅(Agricultural Consulting)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농업컨설팅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도 아직은 민간컨설팅보다는 정부 차원의 상담·지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대체로 영농지도나 경영상담을 정부의 공공서비스로 수행하고 있음.
  - 상업적인 농업컨설팅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함. 일례로 영국과 네덜란드가 일찍이 1980년대부터 지도사업의 민영화를 시도하여 컨설팅조직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채산제를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촌지도사업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찍이 농촌지도사업을 도입한 미국에서도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민간컨설팅을 도입하여 상호보완해 나가는 경향임.
  - 미국은 정부의 지도사업과 민간부문의 컨설팅이 공존하면서 적정히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음. 미국은 주립대학이 교육과 연구·지도를 담당하며, 지도사업이란 용어도 대학교육의 연장활동(Extension service)에서 연유됨. 특히 주정부는 현장 연구와 지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농업인에게 기초적인 농업기술과 지식을 전파하는 공공적인 활동을 지도사업이 담당하고 있음
  -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농업컨설팅은 농업인의 요청을 받아 문제해결을 해주는 활동으로 특수기술이나 경영분야에 전문화되는 경향임.

- 농업생산 분야에서는 병충해 방제나 수의 처방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식물 생리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진 컨설턴트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한 물관리시스템이나 환경보전 문제도 최근의 이슈이며, 생명공학과 원격탐사는 미래농업의 컨설팅 영역으로 주목되고 있음.
- 농장경영문제는 농업컨설턴트의 중요한 사업 영역이며, 미국에서는 광활한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항상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적인 농장에서는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조언해야 하는 경영컨설턴트의 능력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수준임.
- 농업컨설팅 공급주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농업컨설팅이 ‘종합컨설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공급주체의 각자의 전문성에 맞추어 특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컨설팅은 일반농가를 주된 대상으로 기초적인 기술과 경영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도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책자금 관리 등을 정책적 목적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고, 민간컨설팅은 전업농과 농업법인을 주된 대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함.
- 대학은 민간컨설팅업체와는 달리 분야별 전문가가 결집되어 종합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본연의 교육 및 연구활동으로 컨설팅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작목반 중심으로 교육을 겸한 그룹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전문가 합동의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고도의 진단·처방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시설원예분야에서 시설(장치)·양액·재배·병해충·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종합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방문지도하는 경우에 정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임.
- 민간 컨설팅업체는 상업적으로 전문화된 분야별로 농업인의 요구에 의한 컨설팅을 수행하며, 종합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최소한 문제점 진단에 대

해서라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농업경영의 종합적인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 진단표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임.
- 농업경영컨설팅산업의 정책적 육성이 필요함. 농업경영컨설팅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원칙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정부의 보조정책으로 시작되어 자립가능한 산업규모나 시장형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 보조가 감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취약 구조임.
  - 따라서 농업컨설팅이 산업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컨설팅 시장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면서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컨설팅 회사)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컨설턴트의 자질과 성실도를 향상시키면서 컨설팅업계의 전문화·국제화를 유도해야 함.
- 농업컨설팅산업은 지식산업이므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향후 시장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국내 컨설팅 업계는 아직 전문성이 낮으며 대부분 영세·소규모 형태이므로 이들 국내 컨설팅업계의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농업컨설팅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로, 산업적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요의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이 확보될 때까지 금융·조세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ICT를 통한 스마트팜 확산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과거의 평균·일률적으로 지원되던 방식을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변경하고 개별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음.

#### 4.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 및 등록정보 활용 조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국외연수결과보고서, 2019.7.)

##### □ 솔라노-나파 농업지원청(FSA) 사무소 운영 현황

농업지원청은 미농무부 산하기관으로 2개(솔라노, 나파)의 카운티가 통합사무소로 운영되며, 농장정보의 DB 등록 업무 수행

- 솔라노-나파 카운티 농업지원청은 직원 2명, 매니저 1명이 업무를 수행, 업무량 증가 시에 임시 직원을 고용함.
  - FSA 사무소간에 상호 책임자가 있고 상위직급자부터는 정치적 임명으로 선출, 직원인 Laura는 37년 재직 중이며 다음해에 은퇴할 예정
  -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재직후 연금제도에 따라 원할 경우 은퇴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음. 한국은 60세의 의무적으로 퇴직해야 하므로 다년간 축적된 전문지식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 솔라노-나파 카운티 농업정보 관리 체계

- 농장정보 관리시스템(CARS, Crop Acreage Repor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지별 재배작물을 항공사진에 작성하여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솔라노 지역에 약 300개의 농장이 CARS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 등록방법은 임의 등록이며, 카운티 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 면적 및 소득 제한은 없고 농산물 재배정보만 등록함(축산물 제외).
- 임의 조사 및 의심 농장 타겟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수가 적고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오랜 근무경력의 FSA 직원이 이상 징후를 쉽게 파악 가능함. 위원회도 의심사항을 신고함
- GIS 및 휴대용 컴퓨터 활용, 농지면적  $\pm 5\%$  범위에서 허용함. 정보 활용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으며, 카운티 내 여러 지

#### 원 프로그램에만 활용

- 등록된 농장에 대한 대표적 혜택은 병해충 보상이며, 24개 품목은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그 외 품목은 카운티에서 지원함. 잘못된 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비용을 회수조치함.

#### □ 그노스 브로스 농장(Gnos Bros Inc)

- 농장 규모는 약 5천 에이커(약 2,000ha), 토마토, 아몬드, 수박, 오이, 등 약 100개 품목 재배. 고용인은 모두 34명(풀타임 6, 시즌제 28), 필요 시 단기 채용함.
  - 농지의 1/3은 자경, 2/3는 임차로 운영 중. 본인 소유 농지 없이 신규 진입 시 농업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젊은 연령층 농업 유입 감소
  - 농지는 zoning 규제에 따라 한정된 농지이용으로 임대 활발. 농업지역은 농업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고, CARS 등록시 농지별 규정에 따른 용도 확인 후 등록. 농지가 있는 카운티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농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농장이 카운티 선택 가능
- 농지면적 오류 등록 방지를 위해 농장에서 CARS 가입 전 카운티에 요청시 GIS를 활용하여 농지면적 측정 후 농장에 정보 제공.
  - 등록시 가장 큰 혜택은 농업환경에 따른 자연재해보험 지원. CARS에 기 등록된 정보를 연방정부에서 통계조사를 이유로 중복 요구하여 불만 있음.
- 카운티 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고 정년 없이 근무. 농가가 위원 선출, 3년에 1번, 총 3회(9년) 연임 가능함.
  - 지역 농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농장에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고 허가 여부 결정 권한 보유. 위원들을 인근 농민들에게 최고의 농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

#### □ 온타리오주 농업부(OMAFRA)

온타리오주 농업부는 온타리오주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행하며, 농장사업 등록(FBR: Farm Business Registration) 업무를 수행하는 Agricorp를 관리 감독



- 캐나다 최고의 농지(1등급)의 절반 이상이 온타리오주에 위치.
  - 약 5만개의 농장은 소득이 138억 달러를 초과하며 캐나다 전체농장 수입의 약 22%를 차지
- 농업인 평균 연령이 점차 증가('16년 기준 55세)하고 농장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농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자동화되는 추세
- 소비자의 관심이 농장 내 환경 및 토양 관리에 집중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 및 세계작물 등 틈새농업이 증가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강력한 농업분야 정부 지원

#### □ 온타리오주 농업부와 아그리코프와의 관계



준 정부기관으로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농장사업 등록(FBR)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

- 농업정책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준 정부기관으로, 1996년 아그리코프법에 따라 1997년 아그리코프(Agricorp)를 설립함.
  - 국가 및 주정부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예산 운영
- 아그리코프는 전국적인 조직은 아니고 온타리오주에만 있고 다른 주에는 정확한 명칭은 다르나 아그리코프와 유사한 조직이 있을 것임.
  - 아그리코프는 주정부와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협약에 따라 정부 프로그램을 제공
  - 아그리코프는 생산자와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농업위험관리를 지원하고 농업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
- 정부 농업관련 부서와 각 주 조직간 회의 시에 각 주의 농업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농업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

## □ 아그리코프(Agricorp) 및 농가

- 농장사업등록(FBR) 제도란 (목적) 농장조직의 안정적 자금지원 제공을 위해 1993년 「농장 등록 및 농장조직 자금조달법」에 따라 시행됨.
  - 매년 총 농장 소득이 7천달러 이상인 모든 농장은 농장조직가입 수수료 225달러를 납부하고 등록함.
  - 등록된 농장에 대한 혜택은 세금 감면 및 정부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장 재산세 75%까지 감면(가장 큰 혜택), 야생동물 피해 프로그램 등 각종 정부프로그램 지원, 3개의 공인농장조직(AFO) 중 한 곳의 회원 자격 취득

### < 공인농장조직(AFO)의 종류 >

- ① Christian Farmers 온타리오 연맹(CFFO)
  - 식량 자원 보호와 기술 개발을 공유하여 삶의 질 향상이 목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가족농장을 장려, 21개 지구
- ② 전국농민연합 온타리오(NFU-O)
  -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고 여성 농장 평등 및 공정가격을 위해 일하고, 회원에게 무제한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 22개 지구
- ③ 온타리오 농업연합회(OFA)
  - 온타리오주 최대 농장조직, 온타리오 농업 식품 분야와 농촌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 회원 38천명, 52개 지구

-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농업인이나 종교적 이유가 있는 농업인은 농장사업 등록 면제. 다만 미등록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거의 대부분 등록함.
- 농장조직 가입시 세금감면 및 농장조직별 혜택이 있어 이익이 크므로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부분 가입함.
  - 농장사업등록(FBR) 가입 후 농장조직 미가입 농가는 2016년 기준 약 44,000명 가입자 중 1,600명 정도(약 3%)로 적은 비율
- 농장사업등록(FBR) 신청방법은 신규신청의 경우 아그리코프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할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인 변경사항 신고 기간에 신청(전화로 가능)

- 등록정보는 농장 이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소유토지, 생산 농산물, 선택 농장조직, 수입 및 지출양식을 제출(농장소득 확인용)
- 가입 비용은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 우편 송부 방법으로 지불하며, 매년 1월 아그리코프에서 송장 발송(3월 1일까지 납부)
- 농장사업등록 정보관리는 제출된 보고서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인된 경우 프로그램 지원시 일부 제한 조치
- 정보 활용은 국세청(세금), 교통부(농장차량) 등 타 부처에서 확인된 정보에 한하여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 □ 공인농장조직(AFO) 승인 절차

- 온타리오주 위원회에 공인농장조직 설립 신청
- 이사회 최소 12개 지사, 최소 250명 위원 및 감사 재무 제표(O.Reg 723/93, s.5(2)) 기준을 충족하여야 설립
- 농장 조직은 매년 위원회 승인을 받아 자격 유지
- 농업인들이 농장조직에 중복 가입할 순 없지만 다른 조직에 지원금을 납부하면 해당 조직의 지원프로그램 이용 가능



#### □ 농가 면담 결과

- Don Mills 농가는 농작물 재배 및 젓소, 돼지 사육, NFU-O 가입
- David Hargaty 농가는 밀 등 농작물 재배, OFA 가입
-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75% 세금 감면 혜택이며, 가입한 공인조직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철학·가치관과 부합하는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함. David는 농장조직에서 혜택은 받지 않는다고 있으나, 계속 가입하여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함.

- 가입 비용은 농장규모, 수입액이 다르면 수수료도 다르게 받는 주도 있음
- 매니토바 주는 축종, 사스카추완 주는 경작면적에 따라 수수료 납부

#### □ 출장 결과 및 시사점

- 미국, 캐나다의 농장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방식은 우리와 유사. 다만, 농장 규모가 크고, 농장수가 적어서 사후관리 부분이 우리에게 비해 어렵지 않음.
- 우리는 등록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접수, 등록정보 현행화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 소요
- 미국, 캐나다 농장정보 관리제도 운영 시 정부, 농업인 외에 농업인 위원회 또는 공인농업조직이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
- 우리도 선진 농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농업인이 아닌 농업조직을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활용할 필요
-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우리가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등록하는 측면이 있어, 활용 관련 핵심 정보 중심으로 축소 검토할 필요
- 정확한 정보 관리가 가능한 정보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신청정보 축소, 농업인 신청 간소화 및 등록정보 신뢰도 제고 기여
- 캐나다는 세무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정보에 한해서 등록정보를 제공 및 활용
- 우리도 다른 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항목에 대해 활용분야 확대 검토

## 5. 농업분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식품부 정책연구보고서, 2014.11.)

### □ 농정추진 체계 개편

-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을 통해 패키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시·도-시·군 협력체계 뿐만 아니라 각 기관 내에서 ‘농정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 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창의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상향식 농정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1995년에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을 제정하고 2010년에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농정 여건 반영의 한계, 신규사업 신청 제약, 지자체 자율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통해 메뉴식으로 분야별 농림사업을 제시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창의성·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획일화된 기준 때문에 국비 지원 신청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많다.

#### <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기존 논의 동향 >

지역재단, 2007, 「새로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 관련 조직의 혁신 합리화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농식품부 국별 조직체계를 기능별로 전문화하여 농정 효율성 제고
- 농식품부 본청은 정책의 기획·평가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 집행은 농식품부의 지방조직을 구축(신설)하거나 지자체 역할 강화
- 농업 생산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소비자 및 원료 소비자 시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조직체계로 재편
- 쌀 생산 중심 농정조직을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및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농식품 생산 조직으로 재편
- 국토·환경보전,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재편
-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재편
- 식품의 생산과 소비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 분리

<input type="checkbox"/>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심의 농촌개발정책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재편
이동필, 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nput type="checkbox"/> 통합지침이나 협의체 설치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관련사업 연계를 위한 지역 계획제도 도입 <input type="checkbox"/> 관련 사업의 특정 부처 이관 및 통폐합
송미령외, 2013, 「농업·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농정 관련 계획의 단순화 : 농식품부 내부의 주요 계획 통합 및 단순화 <input type="checkbox"/> 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활용 <input type="checkbox"/> 각급 위원회 조직의 실질적 구성과 활용, 정책 총괄기구 설립·운영 <input type="checkbox"/> 실국과 팀 단위의 사업 안정성 확보, 지방농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농정 전담 조직 확보 <input type="checkbox"/> 농정 비전과 목표, 시대적 어젠다로서 의미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회계 적용 <input type="checkbox"/> 맞춤형 보조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편 <input type="checkbox"/> 농정 전반의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사업 단위 성과평가 및 환류 강화

- 농림사업시행지침 체계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에 기획기능, 예산편성기능, 사업대상 선정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는 모순적 구조 때문에 당초 취지와 달라 하향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농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현행 농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전담부서가 중심이 되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패키지 지원에 적합한 농림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조정 및 통합을 추진하는 컨크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재 수평적 구조의 실·국 체계가 아닌 기획실 산하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부서 및 국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토록하고, 중장기적

으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전담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지방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방조직은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전담부서의 정책파트너로서 기존 농업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 품질관리원 등)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권역별 농정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지방조직 설치의 현재 도청 농정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 논의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지역맞춤형 농정체계 구축을 위한 농정기획 조직의 역할과 위상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조직 내 농정 TFT 및 정보공유 기반 구축, 농정기획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관리·평가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며, 지역농정 주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농정수요 반영, 사업 실행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농업회의소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시·군 농정 추진 우수 사례(임실군, 거창군) >

임실군	TFT형태의 농정 기획·실행 조직 운영, 지역맞춤형 농정 추진
	<input type="checkbox"/> 임실군 중장기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농정조직 내에 TFT 형태로 농정 기획·실행 조직을 설치 - 농정체계 : 지역농업특화사업단 > 114프로젝트 팀 > 부자농촌만들기 프로젝트 - 114프로젝트 : 1억 이상 소득농가, 1천명을 4년 이내에 육성한다 <input type="checkbox"/> 2013년에 '농업·농촌 활력화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중간 지원조직 설치 추진 <input type="checkbox"/> 임실군 내에서 추진되는 농업 관련 사업 90개 중 국비사업은 30개에 불과 <input type="checkbox"/> 2-Track 농정 전략을 구사하는 지자체
거창군	민관 농정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지역맞춤형 농정 추진
	<input type="checkbox"/> 2011년에 미래거창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212~2016) <input type="checkbox"/> 2013년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치 - 1,000명의 회원 참여,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 중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곳 -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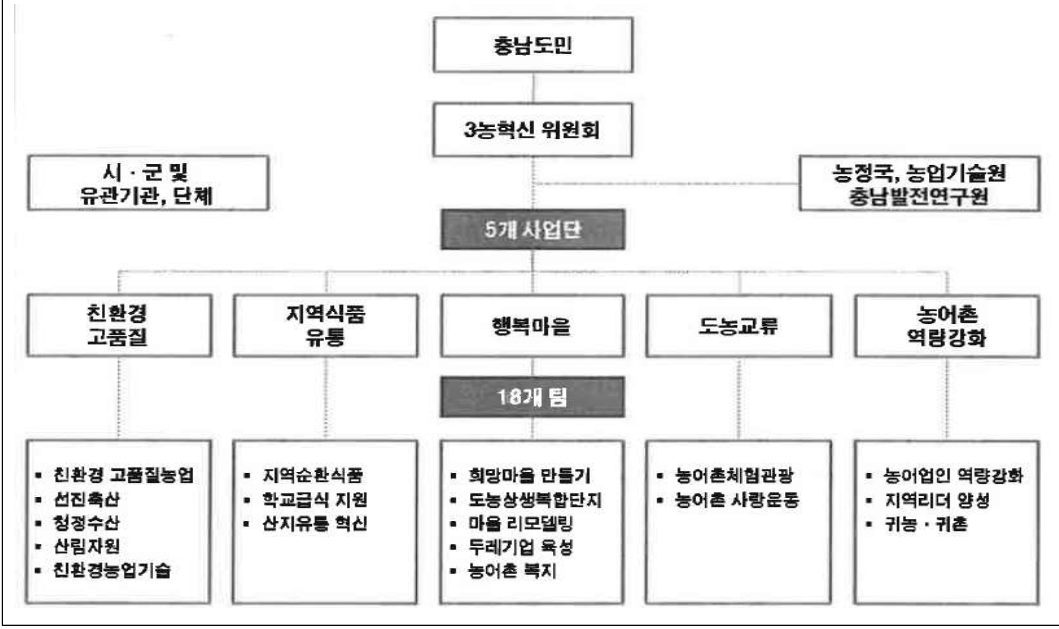
농업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발전 모델을 실천하는 지역  
 - 예: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유휴농지를 활용한 공동 농업경영 모델), 거창푸드 종합센터(소규모 농가 생산 농산물에 대한 수집·선별·판매·조직)

**전라북도** | 지역 내 전문가 그룹, 농업인,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 및 실행 역량 제고

- 부분별로 농정 파트너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
  - ① 향토산업마을 : 전북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② 산지유통 : 전북농협지역본부
  - ③ 6차산업과 : 개별 사업지구에 전문 PM 연계
  - ④ 쌀산업 경쟁력 제고 : 쌀산업경쟁력위원회 운영
  - ⑤ 슬로시티 조성사업 : 전북도 슬로시티 위원회(공모사업 형태로 진행)

**충청남도** | 도단위 농정 기획 기능 강화를 통해 시·군 농정 견인

- 2011년 6월 3농혁신위원 운영 :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시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등 추진
    - 5개 사업단 18개 분과로 구성
    - 민간 팀장과 행정팀장 지정하여 운영(논의 결과 정리, 이슈 도출 등)
  -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위원을 통해 제안된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심의
  - 시·군의 역량과 농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광특예산을 활용해서 도단위 농정기능 강화
  - 충남도 역점 사업 : 6차산업화, 학교급식,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 내부 인트라넷에 '농정포털'을 통해 관련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 충청남도 3농혁신 위원회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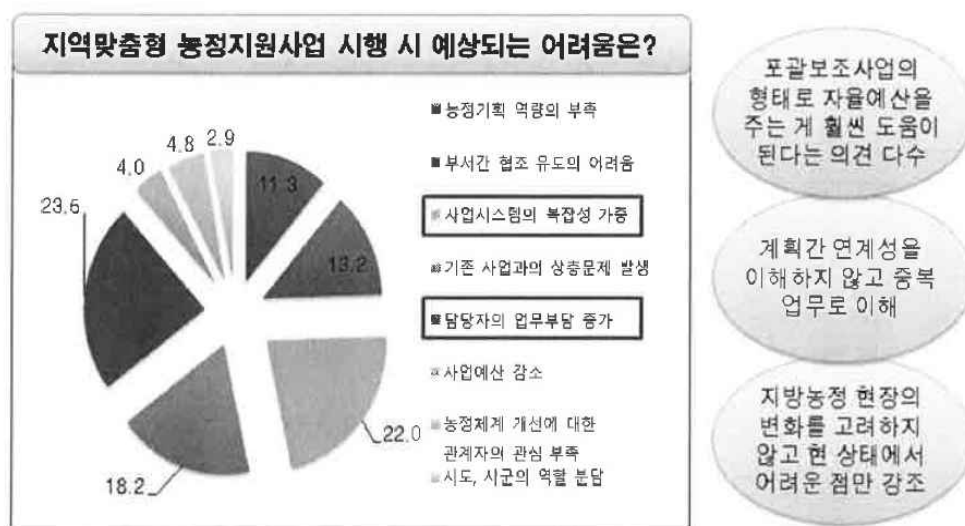




##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닌 농정추진체계 개편이라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실무적으로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 세부사업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지자체 담당 실무자들은 중복업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농림사업 체계 안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포괄보조사업 형태로 자율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 심정적으로는 지방농정 현장의 변화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참여 유인방안이 필요하다.

<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센티브 형태의 참여유인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만 농정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는 바꾸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우선, 품목 및 분야별 패키지 정책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 유통국, 축산국 등 국 내에서 부서간 사업 및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서별로 품목, 분야 등을 기준으로 사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사업의 중복, 선정 및 평가 이원화, 사업간 연계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이에 ‘기획·평가’와 ‘실행·관리’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 부서간 업무를 분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기획·평가 부서는 기존의 각 과별로 추진하던 사업의 선정과 평가, 제도적 기반 구축, 사업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실행·관리부서는 품목(또는 분야) 관련 생산-가공/상품화-유통-마케팅 등 밸류체인(value chain) 상 본원적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이다

< 산지유통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예시) >



- 둘째, 농림사업에 대한 근본적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농림사업 현황을 보면 지침서 상에서는 사업이 통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존 세부사업이 2~3단계 내역사업으로 위치를 옮긴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품목 및 분야별 농림사업에 대한 정책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중복지원 영역, 지원이 미흡한 영역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통합 및 조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산지유통 분야 정책 지도(예시) >

구분	1.종자/자재/정보	2.생산/조직화	3.상품화	4.시장대응
시·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수꽃가루채취단지</li> <li>중요삼생산시설 현대화</li> <li>마늘중구생산시설</li> <li>딸기원묘증식시설</li> <li>우량묘증식시설</li> <li>종근배양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li> <li>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li> <li>고추비가림재배시설</li> <li>첨단온실신축지원</li> <li>에너지이용효율화(3)</li> <li>원예시설현대화(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li> <li>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li> <li>무배추출하조절</li> <li>원예브랜드육성사업</li> <li>화훼류습식유통</li> <li>산지유통시설지원</li> <li>산지저온시설지원</li> <li>저온수송차량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참여형 직거래 사업 (직매장)</li> </ul>
운영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원매매사업</li> <li>과원입대차사업</li> <li>직거래매취사업</li> <li>친환경유통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직거래지원</li> <li>학교급식센터운영</li> </ul>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마케팅지원</li> <li>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장터)</li> </ul>
시·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씨감자생산기반구축</li> <li>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li> <li>딸기원원묘증식시설</li> <li>화훼묘보급센터</li> </ul>			
전국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축기지현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매시장시설현대화</li> </ul>
운영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약용작물계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유통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축지원</li> <li>화훼유통개선지원</li> <li>도매시장출하촉진</li> <li>공판장출하촉진</li> </ul>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정보실용화</li> <li>유통교육훈련</li> <li>저탄소기반구축</li> <li>농업관측</li> </ul>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재해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수우량묘목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통천별뽕풍원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실브랜드육성</li> <li>비축지원</li> <li>화훼유통개선지원</li> </ul>

- 셋째, 패키지 지원을 위한 국별 세부사업 지침 개편이 필요하다. 식량국, 축산국, 유통국 등 국별 통합지침과 세부사업 지침을 분리하고,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를 고려한 선정, 평가, 제도적 지원, 사업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지침으로 개발해야 한다. 세부사업 지침에는 사업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실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형태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패키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업적 경영조직 중심의 지원원칙이 확립이 필요하다. 즉, FTA 지원 대책 등의 핵심 원칙으로 패키지 지원, 협업적 경영체 중심 지원을 명기하고, 협업적 경영체가 지방농정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상기 과제가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시·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자체 농정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인센티브 자금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포괄보조예산,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 패키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체 육성

- 패키지 방식의 농정지원 체계는 부문간 연계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정책을 연계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패키지 방식의 농정지원 체계가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연계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필요하다.
- 정책은 패키지화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패키지 정책의 지원대상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통합적

주체여야 한다.

- 일례로 유통국의 경우 유통정책과는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원예산업과의 수급정책은 개별 농협 단위로 지원되면서 산지에서의 정책집중도 저하, 경쟁력 정책과 수급정책 이원화에 따른 정책 효과 반감, 정책 시그널(signal)의 일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패키지 정책 지원 대상 통합의 필요성 >



- 이에 농정의 대상과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패키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패키지 정책 실행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실행, 성과에 대한 통합적 보상 체계 강화 등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패키지 정책 실행주체 육성 사례(남원시) >



## 6. 영국의 농촌발전정책 추진방식과 농촌 역량발전과 관련한 시사점

(비부처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09~2012.7, 국외훈련보고서, 송남근 서기관)

- ▶ 영국의 정부 정책 실행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비부처공공기관(NDPBs)은 전문성을 요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며, 정부 일선기관이나 민간조직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제3영역의 서비스를 공급한다.
- ▶ 주요 기능은 특정 정책의 집행, 자문, 권리의 심판, 의무부과 및 징수 등으로 다양하며,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사회는 공개모집하여 주 부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 ▶ 독자적으로 직원(공무원 아님)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공동체 영역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활발하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 관주도의 문제점과 지역의 역량 부족 문제를 보완할수 있는 조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 영국의 공공기관은 크게 중앙부처(Departments), 비각료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s),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 비부처공공기관(NDPBs), 자문기관(Advisory Bodies), 공기업(Public Corporations), 기타로 구분된다.
  - 이 중에서 중앙부처와 비각료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정책집행과 관련되는 기관들이며, 비부처공공기관은 조직의 수, 예산 사용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비부처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정부정책의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나, 정부부서이거나 그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장관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서 운영 된다”
  - 영국정부가 공공기능을 좀 더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전문성을 요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되고, 정부부처의 일선기관이나 민간 조직에서 공급하는 것이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비부처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공급한다.

- 과거에는 Quango(준자치비정부조직)라는 용어로 분류되었으나, 1980년 이후부터 Quango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비부처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NDPB라는 용어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였다. 비부처공공기관이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준자치적이지 않으며,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조직도 아니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비부처공공기관의 기능(또는 분류)은 중앙부처의 특정한 정책의 집행, 자문, 권리의 심판, 의무의 부과 및 징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2009년 3월 기준으로 영국전역에 1,100여개의 비부처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신정부(2010.5.) 출범 이후 긴축재정정책에 의해서 일부 비부처공공기관들이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
  - 2011년 12월 기준으로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37개의 비부처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절반 이하로 감축된 결과이다.
- 일반적으로 비부처공공기관의 설립을 원하는 주무부처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회사법(Companies Act)에 의해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등도 있다.
  - 근거법령에는 필요성과 함께, 주무부처 장관이 비부처공공기관의 대표, 이사회 등에 대한 지명 및 해임권한 등 통제와 관련된 조항들이 규정된다.
  - 설립과정에서 비부처공공기관의 업무의 범위, 자율성, 재정지원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이는 주무부처와 해당 비부처공공기관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 주무부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비부처공공기관의 실적, 운영상태 등을 평가를 하며, 당해 연도에 평가 예정인 비부처공공기관의 범위를 제시한다. 평가를 거쳐 존속되거나, 기능조정, 통합 또는 폐지된다.
- 비부처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사회(Board)에 의해서 운영이 되며, 이사회는 그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의 집행을 담당하는 CEO를 임명한다. 이사회는 공식적인 모집 및 선임절차를 거쳐서 주무부처의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아니다.
  - 예산 및 재원의 경우, 주무부처의 교부금(Grant-in-aid)에 의해 조달되며, 예외적으로 독자적인 수입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 \* 교부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무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이며, 별도로 다른 정책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정책의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다.
  - 비부처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과정에서 자발적 및 공동체 (Voluntary and Community)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일을 추진하며, 이는 좀 더 반응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 농촌발전정책분야에서 비부처공공기관이 관여한 사례로서는 크게 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와, ② 다른 정책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 번째로 고유한 기능의 예로는, 비부처공공기관인 Natural England가 영국의 농촌의 고유의 경관 또는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해서 농촌의 특정한 구역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 \* 참고로, 영국은 광범위한 목축과 농업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Wilderness)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전원적인 모습(Countryside)이 가치 있는 고유의 경관 및 환경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축(양 등), 초원(가축사육을 위한),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 두 번째로 다른 프로그램을 대행하거나 관여하는 경우로는 Natural England가 EU의 다양한 농업환경보조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비부처공공기관을 통한 정책의 집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촌의 역량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국의 정치 및 행정체제 및 역사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
- 영국에서 정책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특

정한 이익집단이 정부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공적인 수요를 발굴하여 요청함으로써 이것이 비부처공공기관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책집행의 과정에서는 비부처공공기관이 여러 이해집단 및 자발적조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련조직들이 발전하고, 농촌주민들이 정책과정에 긴밀히 관여함으로써 관련 정보·지식·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 또한, 파트너십을 통한 업무처리는 구성원간의 민주적인 합의에 익숙하게 만들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정착하는데 기여한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 비부처공공기관들의 직원의 채용, 주민들의 정책집행과정에 참여 및 파트너십을 통한 업무처리 등은 지역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육성되고 상주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발전정책의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되고(일부는 공기업을 통해 집행)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비부처공공기관의 사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나치게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한되는 문제(특히, 상향식 농촌발전정책의 경우에 더욱 심각)가 있으며, 이는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을 주변자(Outsider)로 전락시켜 이들의 역량향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부서가 농업을 배경으로 한 기술관료들이 담당하고 있어, 기술관료주의에 의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이런 관주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외부’의 지식이나 기술이며, 해당 농촌지역에 내재되어 있거나 발전하고 있는 역량이 아니며, 이런 외부지식을 강조하고 의존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역량 발전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 대안으로, 특정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설립과 폐지가 상대적으로 신축적이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지역단위에서 파트너십을 토대로 활동을 하는 비부처공공기관의 도입은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NDPB가 형성되어 운영됨으로써 독점되지 않으며,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고 발전될 수 있다.
    - \* 농촌에서 역량발전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형성되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더욱 발전될 수 있다.
  - 또한, 비공무원인 민간으로 구성되고,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농촌의 주체들의 지식 및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NDPB의 적용을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좀 더 명확히 구분을 하여 국가 차원의 특정분야의 정책은 NDPB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무조건 지자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NDPB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여러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기보다는 업무의 성격 및 전국적인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비부처공공기관(NDPB)로 전환해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7.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2013년 11월, (사)한국지방정부학회)

###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개선 방안

- 우리나라 농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농정사업을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을 광역자치단체의 농정국과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로 순차적으로 위임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과정을 통제하는 대리인 모형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농정담당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단기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장기적인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 농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구로 보는 대리인 모형에서 벗어나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상호의존모형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보고 상호 동등한 관계 하에서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동반자모형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런 관계는 곧 상호의존성, 자원의 공동 활용, 자율성,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정부간 관계와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함.
- 그러나 우리나라 농정이 짧은 시간 내에 동반자관계로 전환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각 수준별 정부 간의 상호협력적인 의존관계로의 변환과 이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국가전체 차원의 기획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농정사업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

### 1.1. 지방농정청(가칭) 같은 중앙농정 전담 기구 설치

- 상당수 중앙정부의 농림축산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분담하고 자체의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 하에서 중앙정부는 사업의 입안단계와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현지 적합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추진(집행)단계와 관리 단계(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사업대상, 사업내용, 지원방식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된 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하고, 집행과정의 감독과 함께 집행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정책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여 자체의 인력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농정을 집행하는 체제하에서 재정 상황까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사업의 시행에 치중하고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된 효율적인 자체농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체계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일본의 지방농정국과 같은 지방농정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전담하여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에 지방농정국을 전국 7개 권역별로 설치하여 장관의 위임업무를 수행. 지방농정국이 설치되지 않는 전국 39개 현에는 지방사무소 설치·운영중. 지방농정국은 정원이 13210명(2010년 4월 현재)으로 약 4천명에 이르는 농림수산성 정원의 4배 이상이며, 지방사무소 39개, 지역과 132개, 통계정보센터 176개소 등 347개소에 이르는 지역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임.

-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행정기관의 폐지 움직임 등에 비추어 지방농정청(가칭)을 바로 설치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임.
- 지방농정청이 설치되어 중앙사무적 성격이 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위임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을 자체사업을 기획·시행하는데 쏟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방농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2013년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농림축산사업 97개를 분석한 결과, 중앙사무적인 성격이 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의 수는 28개로,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사무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사무의 집행에 많은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여유가 거의 없는 실정임.
  - 농정추진체계의 개편과 함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해 중앙사무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은 농림축산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직접 시행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중앙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농정을 실현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방농정청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현실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정책국과 농업정책국의 기능 중에서 지방농정 기능을 통폐합하여 지방농정국의 신설을 검토해볼 수 있음

## 1.2.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연계 및 자율성 제고

- 현행 농림축산사업은 크게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뉘며, 그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농정 관련 정책자금이 다양한 방법과 절차로 투입되기 때문에 전모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동일한 사업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함.

-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자원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보조사업의 주관기관과 융자사업 주관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며, 유사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농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이 나은 사업은 계획과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며, 현재 세부지침까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야 통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해야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농정추진 체계 구축

### 2.1. 종합기획능력의 제고

- 지역 실정에 맞는 장단기적인 농정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요구됨.
- 광역자치단체의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산업 예산 및 국비 업무, 농림투자사업 관련 사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관리, 농정심의회 운영,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교육 등으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중장기 발전 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인 1~2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임.
  - 경상남도의 경우 농정국 산하에 4개 과(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가 있으며, 농업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농업정책담당에는 7명의 공무원이 있음. 이 중에서 농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주무관은 1명이며, 과의 인사 및 복무, 정부 및 도 합동평가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임.
  - 전라남도의 경우, 농림식품국 산하에 5개 과(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산림산업과)가 있으며, 농업정책 업무를 총괄하

는 농업정책과에는 8명의 공무원이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열악하며 농정인력의 대부분이 세부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합기획이나 계획수립, 평가사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함.
  - 거창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농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직원 수는 차량관리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9명이며, 이들이 농림사업의 계획수립 외에 예산, 인사, 농지관리업무, FTA총괄, 지역축제, 자산 및 물품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발전 증장기 계획수립 시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편이라고 함.
  - 남해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차량관리 직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이 서무, 회계, 재산관리, 기금 조성관리, 신활력사업 등 25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기획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의 예산총괄 업무 외에 인사 등 다른 서무업무와 농정기획과 관계없는 업무를 타부서로 이전시키고, 기획 및 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농정기획 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자등의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인적 교류, 시군의 계획수립과정에 도와 중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과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정기획전문가 풀을 형성하여 이들과의 정책네트워크를 만들어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획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2.2.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강화

-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있어서의 기획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조언·자문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의 자문·교육에 그치고 마는 전문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획에서부터 실행과 평



가에까지 조언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전문가 체계의 수립과 함께 전문가 집단, 농정 담당 공무원, 농민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러한 네트워킹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완주군의 경우, 행정과 지역주민을 잇는 부문별 중간지원조직으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현장밀착형 행정지원과 전문가 협력시스템, 주민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가 활발하게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농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지역개발 지원 및 총괄계획가, 실무기획가, 현장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 포괄적보조금제의 확대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

- 포괄보조금제도는 2010년도부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전국 117개 시·군이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활기반확충 관련사업 등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 포괄보조사업제는 중앙정부가 총액과 활동범위만 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운영에 재량권을 가지면서 포괄적인 영역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원배분방식이며,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사업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주어짐.
- 포괄보조금제하에서는 사업의 기획 및 집행이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부처간 칸막이식, 중복적 사업지원이 지양되며,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과 책임성을 유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지방농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포괄보조제를 확대하고 그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광특회계로 추진되는 지역개발 관련 사업 이외에도 농림축산 분야 사업들 중에서 지자체에 연계 추진하는데 적합한 사업들을 포괄보조금화하여 지원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융자사업을 제외하고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 가능한 농업생산 관련 사업 중 일부가 포괄보조금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시·군 단위의 자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하여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속한 사업 일부 중 일부를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야 함.
  - 도 차원에서 입지 배분 및 사업량 조정을 하고 시·군간 연계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야 함.
  -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광역발전계정 사업 중 지역개발계정 이관이 적합한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지방의 필요에 따라 내역 사업간 예산의 융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내역사업 이외에 '특정사업' 내지는 '기타 사업을 설정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방의 필요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 한도의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내역사업 간에 상호 융통성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4. 상향식 사무 재배분의 지속적 추진

- 중앙과 지방간의 농림축산사무의 재배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농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국적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적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종전처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여야 함. 단,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행에 필요한 행정비용까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함.
-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거나,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함. 즉, 사업량, 사업기간이나 시행방식의 결정과 같은 기획기능과 함께 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조건, 감독 및 평가 등의 사업의 집행기능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는 사업의 기본방향 제시나 기술개발 지원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함.
- 농정사무의 배분이나 재배분시에는 종래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순으로 하향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명시한 대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주의(보충성의 원칙)를 적용하여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 순으로 상향적 배분을 지향하여야 함.

## 제2절 수평적(기초단위)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 개관

- 관료주도적 농정에서 지역주민, 농민단체, 재야활동가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지방농정의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농정체계가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 거듭 발전되고 있음.

- 수평적 거버넌스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농업인단체 및 시민단체, 정부, 농업관련 산업, 학계, 농어민 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농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조정하고 협의 또는 합의하는 다층적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농정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주도하고 소위 전문가들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농민단체의 대표들과 농어민은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 지방농정의 필요에 따라 참여해온 농민단체의 대표들도 대안 마련을 위한 깊은 고민이나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농민단체 지도자들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어느 단체의 주장이 농민의 뜻인지 확인하기 힘들어 체계적이고 대표성 있는 정책투입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우리나라 농업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농정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농업·농촌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조사분석과 농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평적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러한 구축방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임.

## 2. 지역 농민들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

- 농정 거버넌스에 농민들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농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농정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의 선행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참여의식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님.
-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된 지역은 농민들의 참여의식과 참여의 적극성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지향해야 할 지방농정은 지역농민들이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농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지역농민들이 책임있는 참여를 통해 상호 협력과 상호 신뢰가 확보되는 지방농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 지역농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의식이 고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농민들의 스스로의 자각과 함께 농민들이 지방농정에 책임 있는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민들이 소속한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인 토론과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농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참여활동을 마련해주어야 함

### 3. 지방정부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

- 전문가 조사에서 지방농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지방정부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이었음. 지방정부의 역량과 태도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체장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성 순이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집행에 있어서 단체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임.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역 공무원과 농민 면담에서도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단체장의 역할과 지원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강조됨.
- 지방농정에서 단체장의 리더십과 기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단위의 지방농정 거버넌스 정책을 시행할 때, 리더십과 기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장과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바탕으로 단체장과 협치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직적 거버넌스

와 수평적 거버넌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행정 및 농정 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장들을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위한 롤 모델로 선정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단체장 포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4.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신뢰 구축

- 전문가 조사에서 지방농정 구축을 위한 세 번째 중요 과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었음.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요인으로는 농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의사소통 기회의 확대와 농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였음.
-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 농민간의 상호 신뢰, 상호교류, 상호협력 등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줌.
- 신뢰, 네트워크, 집단적 협력, 사회적 포용력, 제도적 규범 등의 사회자본을 조사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AHP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이는 것이 신뢰였음.
-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신뢰는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직결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속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행정집행과 정책집행 등 제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신뢰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지자체, 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 농민(농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상호 교류를 통해 가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남과 의사교환 기회를 가져야 함.
- 상호신뢰 형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장을 통해 의견 수렴되어진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참여자들과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 주민의 뜻이 공익을 위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함.

- 지방농정 정책과정에서 상호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별 실질적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입안 과정에서 농민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형식적이며, 정책 집행단계에서 농민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전문성이 부족한 농민들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농민들의 시각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열린 행정으로 방향을 선호할 때, 농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수 있음.
-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단계에서 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들 기구에 농민대표 혹은 농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읍면리 단위의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농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5. 수평적 거버넌스 기구로서 농정심의회 활성화 방안

- 농정심의회는 법적 기구이지만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 운영으로 제도 개선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농정심의회의 대표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였음.
- 본 연구의 농민 응답자의 30%가 농정심의회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농정심의회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응답자는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업회의소를 알고 있는 농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심의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기구의 대표성, 투명성, 공개성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임.
- 본 연구의 조사에서 농정심의회가 지방농정 현안 문제의 제안, 결정, 집행, 평가, 농민 의사 반영 등에 매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농

민은 전체 응답자의 15%에 지나지 않음. 이러한 결과는 농민의 시각에서는 농정심의회가 지방농정 정책 단계별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함. 연중 농정심의회의 회의 개최 건 수도 소수에 불과하여 실질적 기능을 못하고 있음.

- 농정심의회가 수평적 거버넌스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민간위원 수의 확대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농정심의회의 위원으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전문가와 농민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구성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농정심의회 위원의 공개모집 방법은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하여 대 농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이는 또 다양한 계통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되어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방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분과위원회별 심의 결과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경우,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로 분류됨. 경남의 경우 6곳 시군에서 운영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7곳 시군에서는 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고 있음. 전체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는 4곳임.
- 해당 분야별 관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 결과를 전체 운영회의에서 재심의할 경우 조정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음. 따라서 분과위원회 심의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함(농림사업실시규정 제25조)
- 농정심의회 제도 개선은 전국단위와 기초단위에서 모두 필요하지만 기초단위에서 농정심의회 개선방안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됨. 개선 방안에서는 위원, 기능, 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안전 심의 내용 등 운영 전반에 걸



친 현황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개선방안 연구과제 공모도 고려할 수 있음.

#### 6. 수평적 거버넌스 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7개의 농어업회의소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①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어민의 인식과 이해 부족, ② 설립 과정상의 비민주성, ③ 행·재정적 지원 미비, ④ 운영상의 회원 및 분야별 갈등, ⑤ 회원 확보 어려움, ⑥ 대의기구 역할 한계, ⑦ 사무국의 전문인력 부족, ⑧ 법제화 및 전국조직 설립 등을 꼽을 수 있음.
-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어업회의소가 농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편이지만 개선방향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초기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우수 농어업회의소 지도자 발굴 양성 등의 순이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농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8%가 농어업회의소가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함.
- 시범사업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수준 조사에서 제도화 수준(규칙의 구체성,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높은 편이며, 자원보유 수준(재원의 적절성, 인력의 적절성)은 낮고, 목표몰입 수준인 구성원의 자발성은 높게 나오며, 인력의 적절성은 보통 이하였음. 또한 회원 간 협력 빈도는 잘되고 있으며, 쌍방향적 협력도 잘 되고 있다고 함.
- 위 결과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범사업 시군은 나주시와 봉화군임. 나주시와 봉화군은 거버넌스 수준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특히 거버넌스 자원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재원의 적절성과 인력의 적절성이 높게 나타남.

- 나주시와 봉화군의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것은 거버넌스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이 두 지역은 정책과정 상의 상호협력, 중앙부처 정책 인지 정도, 행·재정적 지원, 단체장의 리더십,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신뢰, 농민 참여 의식 등이 타 시군보다 높게 나옴. 즉, 이러한 거버넌스 요인이 높을 수록 농어업회의소 거버넌스 수준 또한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각각의 거버넌스 요인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 거버넌스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음.
-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범사업 대부분이 동일한 사업(예: 귀농귀촌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이는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실시와 다양한 사업개발이 필요함.
- 농어업회의소는 예산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의 및 협의하는 것이 주요업무 중의 하나임이 시범사업 지역의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농정에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시, 농어업회의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운영되고 있음. 농어업회의소는 읍·면·리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의견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농어업회의소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음. 농어업회의소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이장협의회 등을 통한 농어업회의소 홍보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함.
- 농어업회의소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과 국고보조 형식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중앙정부의 공

모사업에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농어업회의소에 가산점을 부가하여 농어업회의소가 공모사업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에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함.

## 7. 수평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안

### 7.1. 기초단위 농민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의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 (1) 지방농정 연계 활성화와 현행 제도상의 한계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농정 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농민단체, 협의회, 유관기관 연계 구축이 필요함.
- 농민단체는 5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농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하는 주요 농업협의체는 농정심의회, 양곡정책심의회,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등이며, 유관기관은 농어촌공사,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임.
- 각종 협의체와 유관기관은 개별법에 의해 구성 운영되어,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연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농민단체, 협의회, 유관기관 등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함.

#### (2) 지방농정 연계 확보를 위한 가칭 '지방농정협의체' 구축 방안

- 가칭 '지방농정협의체' 구축을 위해서는 농정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정심의회와 함께 지방농정 관련 기관·단체·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간의 연계·협력·조정을 명문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방농정 관련 각종 기관별 중복 업무 해소와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여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농정협의체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

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구성 등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 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지방농정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농정시책 등의 주요 사항에 관해서 정부-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각종 농민단체-농민이 참여하는 수평적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계망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농정협의체에 농어업회의소를 포함시킬 수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지방농정협의체' 구성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농정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 7.2. 지방농정 거버넌스 연계망 구축을 위한 공간적 기반 구축

### (1) 지방농정통합센터 설치의 배경

- 지방농정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 기관, 농민이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적인 기반의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함. 이는 앞서 제기한 '지방농정협의체'의 연계망을 위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요양시설들을 사회복지단지를 구성하여 하나의 지역복지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정한 건물 또는 택지를 조성하여 행정복합단지(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제주지방합동청사 등)를 형성하여 기관간 협조와 민원인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경기도는 시도 일자리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합동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시범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남양주고용센터에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임.

- 남양주고용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운영주체와 운영기능이 융합되어 있으며,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시군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자활센터 등 4개의 공공기관이 공간적으로 통합되며, 기관별 중복 업무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공간적인 연계기반이 마련될 경우, 수요자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방농정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통합공간을 활용하여 one-stop으로 필요한 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간적인 연계기반이 구축된 다양한 지방농정 관련 기관 및 단체들 간에 물리적인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럴 경우 연계 가능한 사업의 개발, 시설 공동활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방농정 관련 자문과 조언 등을 받을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안전행정부는 각 기관과의 공간적 통합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근무를 종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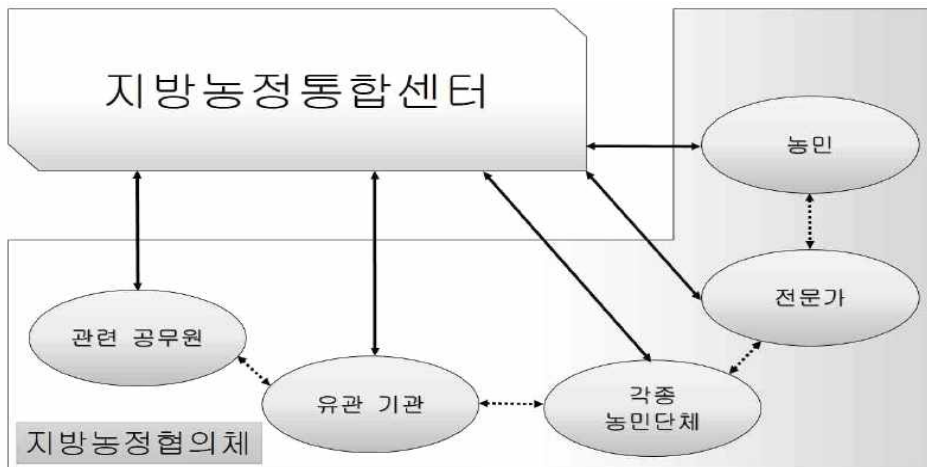
## (2) 지방농정통합센터 설치 구축 방안

- 기초단위에서 지방농정 관련 각종 단체, 기관, 심의회 및 위원회, 농민을 위한 농정통합센터를 구축할 경우 지방농정 관련 각종 현안, 발전 계획, 농민 의견 수렴, 각 기관과 단체 간의 업무 중복 해소, 연계사업을 통한 지방농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지방농정통합센터 설치의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실무를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파견, 유관기관, 각종 단체, 농어업회의소, 농정 관련 전문가 등이 일상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수

평적 공간이 될 수 있음.

- 지방농정통합센터 구축은 현재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에 지방농정통합센터를 구축할 경우, 이 통합센터에는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이 상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농정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개최 이전에 통합센터에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방농정통합센터 구축안 >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지방농정 소셜허브 구축

- 지방농정통합센터가 오프라인 공간이라면 '지방농정 소셜허브'는 온라인 공간임. 지방농정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종 농민단체, 유관기관, 각종 위원회의 정책, 홍보, 의견, 사업, 일정, 여론, 유통 등을 수평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경기도의 경우 2011년 6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주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 관련 소셜미디어를 한 곳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소셜허브'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구축하였음.

- 경기소셜허브를 클릭하면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와 블로그가 나오며, 이들 통해 주민들은 도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과 도내 31개의 기초지방정부인 시군의 소셜미디어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주민들은 경기소셜허브에 있는 소셜지도를 통해 경기도청의 각 부서, 공공기관, 유관기관, 도내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한 SNS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지방농정 소셜허브' 구축은 농정 관련 부서, 유관기관, 각종 농민단체, 심의회 및 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의 SNS를 통합하여 이해당사자들과 농민들이 쉽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실시간 온라인 지방농정 공론장이 될 수 있음.
- 지방농정 소셜 허브 구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농어업회의소 혹은 각종 농민단체에 위탁으로 운영을 맡길 수도 있음. 지방농정 소셜 허브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도 상향식 방식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부록 2 : 농식품보조사업에 관한 의견조사표

## 농업인 의견조사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여러 특용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에서 생각하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설문 문의 :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박유천 (☎244-201-1384), 김문석 (☎044-201-1386)
- 설문 기간 : 2021년 12월 8일(수) ~ 12월 14일(화)까지
- 제출방법 : 설문조사표에 답변을 입력하셔서 답장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e메일 회신이 어려울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발송  
(우)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문석
- ※ 이 조사표(한글 파일)에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 I. 일반사항

해당 문항의 답변항 번호를 ( )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농업경영체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① 농업인    ② 영농조합법인    ③ 농업회사법인    ④ 기타 ( )

2. 귀하의 주된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① 식량작물 생산    ② 원예작물 생산    ③ 농산물가공판매    ④ 농촌관광  
⑤ 기타 ( )



3. 귀하의 영농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

- ① 5년 미만    ② 5~9년    ③ 10~14년    ④ 15~19년    ⑤ 20년 이상

## II. 농식품보조사업 지원 실적과 만족도

4. 귀하가 최근 5년 동안에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명과 금액을 대략 적어 주십시오. 지원받은 실적이 없으면 ☞ 8번으로 이동하세요.

사업명	지원금액	자부담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5. 지원받은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6. 보조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금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7.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절차(자금 교부, 정산 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8. 최근 5년 동안에 농업보조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알지 못해서    ② 신청하지 않아서    ③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해서  
④ 구비서류 복잡해서    ⑤ 담보 물건이 없어서    ⑥ 기타( )

**Ⅲ.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 지원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 주세요.

농식품보조사업의 추진 체계는 ‘농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자(농업경영체, 기타)’의 단계로 시행되며, 또한 사업 절차는 ‘계획 수립 - 교부 결정 - 사업 집행 - 사후 관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을 확보한다고 보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귀하의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의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하의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의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나 농기자재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IV.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14. 귀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자부담 포함한 총액 기준) 100이 투입 될 경우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95% 이상      ② 90% 이상 ~ 95% 미만      ③ 85% 이상 ~ 90% 미만  
 ④ 80% 이상 ~ 85% 미만      ⑤ 80% 미만
15.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원인에 대하여 그 영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비효율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 한편	보통	영향 적음	영향 없음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 효과가 저하			✓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대행 또는 중개 등의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함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 저하 (획일적 기준, 융통성 부족)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자 선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					

16.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V.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 지원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 주세요.

17. 현재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귀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자부담 포함한 총액 기준) 100이 교부될 경우에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적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상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① 1% 미만      ② 1% 이상 ~ 5% 미만      ③ 5% 이상 ~ 10% 미만  
④ 10% 이상 ~ 20% 미만      ⑤ 20% 이상
19.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부 패	공모 :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모			√		
	임의 처리 : 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					
	허위 :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					
오 류	증빙 미비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 처리 :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업무 착오 :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관리 미흡 : 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					
	집행 오류 :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21.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정수급의 여러 유형 중에서 아래의 주요 유형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 한편	보통	영향 적음	영향 없음
농업인이 단독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			√		
보조사업 관련 업체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상호 배분					
보조사업 관련 업체가 단독으로 주도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업체가 챙김					
사업대상자 기본요건(농업경영체, 직접경작, 소득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요건 서류를 조작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세부요건(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기준에 미흡한데,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허위 정					

산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외 사용한 경우					
구입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기자재를 허위 사진·서류 등으로 속여서 청구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2.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VI. 농식품보조사업 정책에 대한 의견 ☞ 지원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집행관리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제도가 농촌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요성에 따라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업추진 단계 및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선정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운영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해야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해야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					
관리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25.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를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②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③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의 투명성    ④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  
 ⑤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⑥ 보조금 사용실적 점검  
 ⑦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⑧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

26.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농식품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 지원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 주세요.

농식품보조사업의 추진 체계는 ‘농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자(농업경영체, 기타)’의 단계로 시행되며, 또한 사업 절차는 ‘계획 수립 - 교부 결정 - 사업 집행 - 사후 관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식품보조사업을 확보한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귀하의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의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하의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의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나 농기자재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현재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부 패	공모 :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모	⑤	④	③	②	①
	임의 처리 : 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	⑤	④	③	②	①
	허위 :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	⑤	④	③	②	①
오 류	증빙 미비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⑤	④	③	②	①
	중복 처리 :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⑤	④	③	②	①
	업무 착오 :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⑤	④	③	②	①
	관리 미흡 : 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	⑤	④	③	②	①
	집행 오류 :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⑤	④	③	②	①

**IV. 농식품보조사업 정책에 대한 의견** ☞ 지원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집행관리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식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제도가 농촌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요성에 따라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업추진 단계 및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⑤	④	③	②	①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⑤	④	③	②	①
선정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⑤	④	③	②	①
운영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해야	⑤	④	③	②	①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	⑤	④	③	②	①
관리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⑤	④	③	②	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⑤	④	③	②	①

19.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②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③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의 투명성    ④ 보조금 교부 조건 (담보 등)을 간소화    ⑤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⑥ 보조금 사용 실적 점검    ⑦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⑧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

20.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조사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여러 특용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사)환경농업연구원에서 추진중인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생각하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환경농업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비영리법인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과 교육·컨설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설문 문의 : (사)환경농업연구원 이경해 연구원 ☎ 02-3472-8830

조사표 다운로드 : <http://www.sari.re.kr>

○ 설문 기간(발송일 기준) : 2021년 10월 5일(화) ~ 10월 15일(토)까지

### 1.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견

해당 문항의 번호에 체크(✓)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귀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귀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등이 적절하게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귀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나 농기자재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현재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부 패	공모 :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모	⑤	④	③	②	①
	임의 처리 : 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	⑤	④	③	②	①
	허위 :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	⑤	④	③	②	①
오 류	증빙 미비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⑤	④	③	②	①
	중복 처리 :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⑤	④	③	②	①
	업무 착오 :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⑤	④	③	②	①

관리 미흡 : 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	⑤	④	③	②	①
집행 오류 :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⑤	④	③	②	①

8.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불용액 발생 사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민원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	⑤	④	③	②	①
중앙부처의 관리지침이 애매하고 혼란스러움	⑤	④	③	②	①
재량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까봐	⑤	④	③	②	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할당되어서	⑤	④	③	②	①
중앙정부로부터 자금배정 시기가 불안정하므로	⑤	④	③	②	①
국고보조금은 받았지만 도비가 적기에 배정되지 않아서	⑤	④	③	②	①
기타( )	⑤	④	③	②	①

9.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②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 ③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의 투명성    ④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
- ⑤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⑥ 보조금 사용실적 점검
- ⑦ 보조금 회계관리 점검    ⑧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

## II. 농식품보조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10. 귀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자부담 포함한 총액 기준) 100이 투입될 경우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상승, 농협, 조달청 등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과다 지급,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과잉 투자, 보조사업 수행능력 부족한 자 선정, 보조사업 추진시 기술지도 미흡, 보조사업 종료후 사후지도 미흡,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 활용도 저하

- ① 95% 이상      ② 90% 이상 ~ 95% 미만      ③ 85% 이상 ~ 90% 미만  
④ 80% 이상 ~ 85% 미만      ⑤ 80% 미만

11.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원인 중 아래의 원인이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비효율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한편	보통	영향적음	영향없음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b>단가가 높게 책정</b> 되어 보조 효과가 저하	⑤	④	③	②	①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b>업무대행 또는 중개 등의 수수료 과다지급</b> 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함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필요하거나 <b>원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b> 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의 효과 저하 (확실적 기준, 융통성 부족)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b>부적합자 선정</b> 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후에 <b>사업관련 정보 제공이나 기술지도</b>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b>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b>	⑤	④	③	②	①

12.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보조금 비효율 요인	발생 원인	예방(경감) 대책
------------	-------	-----------

보조금으로 인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보조 효과가 저하	○ -	○ -
농협, 조달청 등 사업추진 과정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대행 또는 중개 등의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함	○ -	○ -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농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른 제품·시설이나 초과 물량을 구입하게 되어 보조금 효과 저하 (획일적 기준, 융통성 부족)	○ -	○ -
보조사업 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부적합자가 선정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효과가 떨어짐	○ -	○ -
보조사업 추진 중이나 추진 완료 후에 사업관련 정보제공이나 기술지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 -	○ -
보조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컨설팅 인프라 지원·관리가 미흡	○ -	○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의 활용도 저하	○ -	○ -

13. 농식품보조사업이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그밖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Ⅲ.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14. 귀 시·군에서는 농식품보조사업 예산(자부담 포함한 총액 기준) 100이 교 부될 경우에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상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① 1% 미만      ② 1% 이상 ~ 5% 미만      ③ 5% 이상 ~ 10% 미만  
 ④ 10% 이상 ~ 20% 미만      ⑤ 20% 이상

15.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을 허위·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정수급의 여러 유형 중에서 아래의 주요 유형별로 심각한 정도를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 원인	심각한 정도				
	매우 심각	심각한편	보통	영향적음	영향없음
<u>농업인이 단독</u> 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 관련 <u>업체와 농업인이 공모</u> 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상호 배분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 관련 <u>업체가 단독으로 주도</u> 하여 신청, 자부담 대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	⑤	④	③	②	①

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업체가 챙김					
사업대상자 <b>기본요건</b> (농업경영체, 직접경작, 소득기준 등)을 <b>갖추지 못한 자가</b> 요건 서류를 조작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⑤	④	③	②	①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b>세부요건</b> (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b>기준에 미흡한데</b> ,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⑤	④	③	②	①
<b>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b>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외 사용한 경우	⑤	④	③	②	①
구입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기자재를 허위 사진·서류 등으로 속여서 청구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⑤	④	③	②	①

16.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	발생 원인	예방(경감) 대책
<b>농업인이 단독</b> 으로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	○ -	○ -
보조사업 관련 <b>업체와 농업인이 공모</b> 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상호 배분	○ -	○ -
보조사업 관련 <b>업체가 단독으로 주도</b> 하여 신청, 자부담 대	○ -	○ -

납, 정산업무를 대행하여 농기계와 시설장비, 농자재 등의 가격이나 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고, 과다 수령한 보조금을 업체가 챙김		
사업대상자 <b>기본요건</b> (농업경영체, 직접경작, 소득기준 등)을 <b>갖추지 못한 자가</b>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 -	○ -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은 되지만 신청자격 <b>세부요건</b> (면적, 영농경력, 법인요건)의 <b>기준에 미흡</b> 한데, 요건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 -	○ -
특정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자 또는 후순위 사업자를 <b>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허위 정산 서류를 인정하도록 하여</b> 사업 부실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	○ -
구입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기자재를 허위 사진 등으로 속여서 청구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 -	○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시설·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 -

17. 농식품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그밖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18.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연구자 의견조사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여러 특용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사)환경농업연구원에서 추진중인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 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환경농업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비영리법인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과 교육·컨설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설문 문의 : (사)환경농업연구원 이경해 연구원 ☎ 02-3472-8830

조사표 다운로드 : <http://www.sari.re.kr>

○ 설문 기간(발송일 기준) : 2021년 10월 5일(화) ~ 10월 15일(토)까지

농식품보조사업 보조금은 지원내용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으로 구분되며, 본 설문조사는 자본보조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경상보조금: 물건비성 경비를 보조. 운영비, 용역비, 직불금 등이 해당

○ 자본보조금: 자본적 경비를 보조. 토지매입, 시설건축, 농자재구입 등이 해당  
농식품보조사업의 추진 체계는 ‘농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자(농업경영체, 기타)’의 단계로 시행되며, 아울러 사업 절차는 ‘계획 수립 - 교부 결정 - 사업 집행 - 사후 관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농식품보조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

해당 문항의 번호에 체크(✓)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1. 현재 농식품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계획과 감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부처의 역할이 크다    ② 서로 비슷    ③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

3. 농식품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관리감독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관리감독권을 늘려야 한다    ② 현행 유지    ③ 관리감독권을 줄여야 한다

4. 농식품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    ② 현행 유지    ③ 재량권을 줄여야 한다

5.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역할을 중요도에 따라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덜 중요	전혀 아님
중앙 정부	계획수립: 예산 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구체화	⑤	④	③	②	①
	집행감독: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른 점검	⑤	④	③	②	①
	사후관리: 사업평가 및 부적정 보조금 환수	⑤	④	③	②	①
지방 자치 단체	계획수립: 농식품부와 교감하며 사업계획 수립	⑤	④	③	②	①
	집행감독: 사업자 선정심사 및 집행관리에 철저	⑤	④	③	②	①
	사후관리: 보조사업 시설장비 등 수시 점검	⑤	④	③	②	①

6. 농식품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 II. 농식품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7. 현재 농식품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농식품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농식품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점검 등은 적절하게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농식품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나 농기자재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농식품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경영체에 요구되는 역할을 중요도에 따라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않음	전혀 아님
지방 자치 단체	사업신청: 투명한 공모 절차, 자격 심사 등	⑤	④	③	②	①
	자금집행: 사업 단계별 자금 교부, 실적 점검	⑤	④	③	②	①
	사후관리: 보조금 정산, 시설장비 등 수시 점검	⑤	④	③	②	①
농업 경영 체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⑤	④	③	②	①
	자금집행: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 회계관리 철저	⑤	④	③	②	①
	사후관리: 보조사업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⑤	④	③	②	①

12. 농식품보조사업을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III.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의견

13. 현재 농식품보조사업 분야에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 대책이 적절히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5단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부패	공모 : 내부(가족 등) 공모, 외부 공모	⑤	④	③	②	①
	임의 처리 : 무단 사용, 무단 담보·임대·인출	⑤	④	③	②	①
	허위 :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허위 처리	⑤	④	③	②	①
오류	증빙 미비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⑤	④	③	②	①
	중복 처리 : 중복 신청, 중복 등록, 중복 지급	⑤	④	③	②	①
	업무 착오 :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⑤	④	③	②	①
	관리 미흡 : 자격·신청·평가 관리 미흡	⑤	④	③	②	①
	집행 오류 :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⑤	④	③	②	①

16. 농식품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IV. 농식품보조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17. 농식품보조사업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요성에 따라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업추진 단계 및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 요	전혀 불필요
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⑤	④	③	②	①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⑤	④	③	②	①

선정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⑤	④	③	②	①
운영	보조금 교부 조건(담보 등)을 간소화해야	⑤	④	③	②	①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금 사용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금 회계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⑤	④	③	②	①
	보조금 정산 및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	⑤	④	③	②	①
관리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⑤	④	③	②	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⑤	④	③	②	①

18. 농식품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문 헌

- 감사원, 2020, 『감사보고서 -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I(보조금 분야)』 .
- 감사원, 2015,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
- 국민권익위원회, 2019, 『부패·공익 침해 신고 사례집』 .
- 권오성 외, 2020,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 체계 효율화방안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
- 김미복 외, 2013,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외, 2009, 『농어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택 외, 2003, 『농림투융자 성과분석 및 향후 투융자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17,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용절감 효과 분석』 , 환경농업연구원.
- 김정호 외, 2016, 『농식품분야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 환경농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0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박성재 외, 2011,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쟁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민선 외, 2014,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사회학회.
- 박준기 외, 2015, 『농업보조금 집행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 - 자본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외, 2014,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1), 발농업경쟁력강화사업군 심층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류민정, 2018,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연

- 구』, 감사연구원.
- 서대석 외, 2016, 『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윤섭 외, 2015,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감사원 감사연구원.
- 우병준 외, 20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융자규모 산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재린 외, 2021, 『국고보조금사업 건전성 제고방안 연구』(서울보증보험 연구용역보고서), 보험연구원.
- 원종학 외, 2019, 『보조금(정부지출사업) 부정수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윤희, 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지역재단, 2021. 『농식품사업 정보제공 개선 설문조사 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 최순영, 2014,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황의식 외, 2014,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웹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s://www.gosims.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애그릭스) <https://uni.agrix.go.k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 농식품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

---

인 쇄 2021. 12. 25  
발 행 2021. 12. 31  
발행인 강 정 일  
발행처 (사)환경농업연구원  
06707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길 6  
제중빌딩  
02-3472-8830~1 <http://www.sari.re.kr>  
인 쇄 유하인쇄 (02-533-7481)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사)환경농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